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행정복지위원회)

김 포 시

목 차

■ 기획조정실

1. 정책기획과	3
2. 예산법무과	11
3. 스마트도시과	17

■ 자치행정국

4. 총무과	29
5. 자치행정과	45
6. 자산관리과	59
7. 세정과	73
8. 취득재산세과	77
9. 징수과	81

■ 경제국

10. 일자리정책과	89
11. 지역경제과	103
12. 기업지원과	111
13. 투자유치과	117

■ 교육문화국

14. 교육청소년과	127
15. 문화예술과	141
16. 관광진흥과	153
17. 체육과	163
18. 도서관과	191

목 차

■ 복지국

19. 복지정책과	201
20. 생활보장과	233
21. 노인장애인과	253
22. 가족문화과	317
23. 아동보육과	331

■ 보건소

24. 보건행정과	407
25. 감염병관리과	437
26. 보건사업과	443
27. 북부보건센터	447

■ 읍면동

27. 통진읍	455
28. 고촌읍	459
29. 양촌읍	465
30. 대곶면	471
31. 월곶면	475
32. 하성면	485
33. 풍무동	493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정책기획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리 24-8번지 일원
사업규모	김포 비행장 G-107 주변 100km 이내 소음대책지역		
사업목적	군비행장·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상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제16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 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591	30,744	0	0	0	30,744	-9,847	
국비	40,591	30,744				30,744	-9,847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744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301-14 기타보상금	·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 보상대상자 137명 보상금 30,743,040원 =	30,744	

□ 예산요구 사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방부 환경소음팀-3017(2025.6.27.)호에 따른 군소음 피해 보상금 교부
※ 법정기한(매년 8월31일까지) 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2. : 사업 신청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5. 04. ~ 2025. 05. :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 통지
- 2025. 06. ~ 2025. 07. : 예산 교부(국방부 → 김포시) 및 성립전예산 편성
- 2025. 08. 01. : 군소음보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급대상자 149명, 지급액 39,697,850원
2024	· 지급대상자 147명, 지급액 40,590,990원
2025	· 지급대상자 139명, 지급액 30,131,04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698	39,698	-	-	
2024	40,591	40,591	-	-	
2025	30,744	30,131	-	61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군관협력팀장 나태웅	담당자	행정7급 임성민	전화	5038
-----	-------	------------	-----	----------	----	------

군 · 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실무회의(수시), 실무협의체(분기 1회), 대표협의체(연1~2회)		
사업목적	김포시와 군부대 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과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만·관·군 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900	1,800	0	0	-900	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00	1,800			-900	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현수막 구입 : 경정(0원) - 기정(40,000원*8회) = · 회의 자료 제본 : 경정(0원) - 기정(40,000원*1회) =	-320 -40	
	201-03 행사운영비	·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비 : 경정(540,000원) - 기정(1,440,000원) =	-9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관계자 급식비 : 9,000원*40명 =	360	

□ 예산요구 사유

- 군 협의회가 필요한 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실무협의체 운영 횟수 감소(분기별 1회 → 연 2회)에 따른 운영비 일부 감액
- 군부대와 협의체 운영 시 필요한 민간인(군인) 급식비 추가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2. : 김포시-해병대제2사단 상생발전 대표협의체 개최(시장-사단장)
 - 2025. 6. 11. : 김포시-해병대제2사단 상생발전 실무협의체 개최(부시장-부사단장)
 - 2025. 7. 8. : 김포시-해병대제2사단 상생발전 실무협의체 개최 (부시장-부사단장)
 - 2025. 4분기 : 김포시-해병대제2사단 상생발전 대표협의체 개최 예정(시장-사단장)
- ※ 실무분과(팀장, 과장-참모급) 수시 진행 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예산미편성)
2024	· 해당없음(예산미편성)
2025	· 2025. 6월 군·관 상생발전 협의체 행사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급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800	268	-	1,53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군관협력팀장 나태웅	담당자	행정7급 임성민	전화	5038
-----	-------	------------	-----	----------	----	------

기관공통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부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편성		
사업목적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대규모 행사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10,000	194,000	155,000	0	0	39,000	-21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10,000	194,000	155,000			39,000	-21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9,000	
기관공통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 경정(100,000,000원) - 기정(64,000,000원) =	36,000	
	202-01 국내여비	· 기관공통 여비 : 경정(6,000,000원) - 기정(3,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 8. 기준 사무관리비 83%, 여비 82% 집행하여 하반기 현안사항 발생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추가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시 현안사항 적극 대응을 위한 부서지원금액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시정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정운영을 위한 행사, 여비 및 용역 등 지원 · 사무관리비 : 68,640천원 · 여비 : 8,208천원 · 연구용역비 : 136,000천원
2024	○ 시정운영을 위한 행사, 여비 및 용역 등 지원 · 사무관리비 : 111,344천원 · 여비 : 7,718천원 · 연구용역비 : 212,780천원
2025	○ 시정운영을 위한 행사, 여비 및 용역 등 지원 · 사무관리비 : 53,341원 · 여비 : 2,470천원 · 연구용역비 : 35,72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7,000	212,848	19,800	34,352	
2024	429,800	331,843	32,382	65,575	
2025	187,382	91,532	-	95,8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이민호	담당자	행정8급 김혜린	전화	2088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예산법무과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무료법률상담수당,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배상금 등		
사업목적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 제4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기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각 지급기준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행정심판 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72,500	416,037	357,531	1,100	7,406	50,000	-56,46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72,500	416,037	357,531	1,100	7,406	50,000	-56,4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 50,000,000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금) 지출 증가에 따른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2023년~2024년 변호사 선임 소송사건 종결 도래 등에 따른 수임료(성공보수금) 지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민사·행정 소송 변호사 수임료 지출
 - 고문 변호사 소송사건 위임 시 : 착수금 지급
 - 고문 변호사 선임사건 승소 시 : 성공보수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변호사 소송위임 62건(민사41, 행정21) ※ 2023년 신규 접수사건 중 변호사 수임건 : 22건
2024	- 변호사 소송위임 64건(민사44, 행정20) ※ 2024년 신규 접수사건 중 변호사 수임건 : 19건
2025	- 변호사 소송위임 48건(민사26, 행정22) ※ 2025년 신규 접수사건 중 변호사 수임건 : 1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4,000	303,135	-	90,865	
2024	472,500	406,560	-	65,940	
2025	366,037	317,489	-	48,54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장 장은길	담당자	행정8급 김지운	전화	2044
-----	-------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사업목적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계간 여유자금 통합 운영·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①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결산 후 해마다 한차례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80,000	418,653	200,000	0	0	218,653	-61,34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0,000	418,653	200,000			218,653	-61,3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8,653	
내부거래지출 (예산과)	705-02 예수금이자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 (경정) 418,653,000원 - (기정) 200,000,000원	218,653	

□ 예산요구 사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수금 620억에 대한 이자 지급

- (1차) '21.9. 220억 / '21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보전 및 2회 추경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추진 목적

* 기존 예수금 400억에서 '24.11월 100억원, '25.5월 80억원 조기 상환

- (2차) '23.12. 400억 / '23년 일반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세입 보전 목적

□ 예산증감 사유

- 25.5월 80억원 상환에 따른 1차 예수금 이자 감소 및 2차 예수금 이자 반영(이자율 0.6%)
 - 1차 예수금에 대한 이자 : 기존 2억 → 변경 178,653천원
 - 2차 예수금에 대한 이자 : 24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9. : 1차 예수(400억) (통합기금 → 일반회계)
 - 2022. 9., 2023. 9. : 예수금 이자 상환 (일반회계 → 통합기금)
 - 2023.12. : 2차 예수(400억) (통합기금 → 일반회계)
 - 2024. 9. : 예수금 이자 상환 (일반회계 → 통합기금)
 - 2024.11. : 예수금 원금(100억) 상환 (일반회계 → 통합기금)
 - 2025. 5. : 예수금 원금(80억) 상환 (일반회계 → 통합기금)
 - 2025. 9. : 1차 예수금 이자 상환 예정(1.8억) (일반회계 → 통합기금)
 - 2025.12. : 2차 예수금 이자 상환 예정(2.4억) (일반회계 → 통합기금)
 - 2026. ~ 2028. : 매년 결산 종료 후 1회 추경에 상환계획 반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2023. 9. 1차 예수금에 대한 이자 240,000천원 상환
2024	- 2024. 9. 1차 예수금에 대한 이자 240,000천원 상환 - 2024.12. 2차 예수금에 대한 이자 240,000천원 상환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0	240,000	-	-	
2024	480,000	480,000	-	-	
2025	200,000	-	-	20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예산법무과	예산1팀장 강민정	담당자	행정7급 송남희	전화	2047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0. ~ 12.	사업위치	도시안전정보센터(김포한강3로 326)
사업규모	출입관리시스템(키오스크) 1식		
사업목적	민원인, 경찰관 등의 방문자 출입에 대한 출입관리를 데이터(DB)화하여 체계적인 청사 보안 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6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93,977	317,642	297,642	0	0	20,000	23,66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3,977	317,642	297,642			20,000	23,665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도시안전 정보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출입관리시스템 구매 : 20,000,000원*1식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가 보안시설인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출입 보안강화를 위한 출입관리시스템(키오스크) 도입
 - 민원인, 경찰관 등의 청사 방문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는 문서형태의 출입대장을 보완하여 신분 확인(네이버, 카카오, PASS 모바일 앱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 청사 출입 보안강화
 - 신분 확인 등으로 청사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24시간 출입통제 가능 체계 구축
- ※ 기존 청사 출입관리장비(인터폰 방식) : 2014. 10. 도입

□ 예산증감 사유

- 출입자 기록 등 청사 출입 보안강화를 위한 출입관리시스템 구매 예산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2025.08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물품 구매
 - 2025. 12. : 물품 납품 및 검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센터 내 시설 소규모 수리
2024	- 청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센터 내 시설 소규모 수리
2025	- 청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센터 내 시설 소규모 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7,869	268,022	-	19,847	
2024	293,977	272,398	-	21,579	
2025	297,642	161,196	-	136,44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박영서	담당자	방송통신6급 문원중	전화	4952
-----	--------	-------------	-----	------------	----	------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및 조성

사업기간	2025. 11. ~ 2026. 1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목적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에 따라 시 여건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402,000	0	0	0	402,000	40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2,000				402,000	40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2,000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및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250,000원*8명	= 2,000	
	207-01 연구용역비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 400,000,000원*1식	=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조성 시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선행 필요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필요
 -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2011~2015)' 수립 이후 계획 목표연도가 경과됨에 따라 우리 시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수립 필요
-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시 여건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제안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시 여건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내용이 담긴 5년 단위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신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추진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2025.08	-	-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 10. : 집행 및 입찰공고(사업자 선정)
 - 2025. 11.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026. 11.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팀장 박영서	담당자	시설7급 이명아	전화	4953
-----	--------	-------------	-----	----------	----	------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도시안전정보센터(김포한강3로 326)
사업규모	향온향습기 2대		
사업목적	전산실 노후 향온향습기 교체로 안정적인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6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1,500	360,000	228,000	0	50,000	82,000	288,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1,500	360,000	228,000		50,000	82,000	288,50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2,000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전산실 향온향습기 교체 : 41,000,000원*2대 =	82,000	

□ 예산요구 사유

- 2014년 도시안전정보센터 건립 시 도입한 전산실 내 내구연한(9년) 초과한 향온향습기 성능이 저하되어 교체 필요(장비중단 시 CCTV통합관제, 버스정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중단)

□ 예산증감 사유

- 전산실 노후 향온향습기 2대 교체를 위한 예산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2025.08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구매)집행
 - 2025. 11. : 항온항습기 납품 및 검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2024. 4. : 유관기관 연계망 노후 방화벽 교체 완료(2대), 상황실 관제용 모니터 교체 완료(24대) - 2024. 5. : 도로방범CCTV 서버 교체 완료(7대)
2025	- 2025. 6. : 백본스위치 교체 구매 완료 - 2025. 8. : UPS 배터리 교체 사업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1,500	71,466	-	34	
2025	278,000	226,882	-	51,11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팀장 곽수진	담당자	전산7급 이상운	전화	4958
-----	--------	----------------	-----	----------	----	------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사업규모	소프트웨어 5식, 서버 및 보안장비 9대		
사업목적	CCTV 영상 유관기관 신속 제공 및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영상 연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제4항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00,000	0	0	0	300,000	300,000	
국비		0					0	
도비		300,000				300,000	30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 경찰청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 30,000,000원	= 30,000	
		· Web GIS 엔진 : 32,000,000원	= 32,000	
		· 영상중계용 스트리밍 SW : 30,000,000원* 2식	= 60,000	
		· 스마트도시안전망 라이선스 : 75,000,000원	= 75,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버 : 16,000,000원	= 16,000	
		· Web GIS 서버 : 15,000,000원	= 15,000	
		· 외부연계 서버 : 8,200,000원	= 8,200	
		· 영상중계용 서버 : 18,600,000원 * 2대	= 37,200	
		· 방화벽 : 20,000,000원	= 20,000	
		· L3스위치 : 2,200,000원 * 3대	= 6,6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중인 방법, 주정차, 재난 등 CCTV영상을 통합하여 유관기관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현재 김포시, 연천군(2025년 구축 예정)만 경기도 연계 구축이 안되어있는 상황임
-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관내 CCTV영상을 실시간 연계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통해 범죄, 사고, 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유기적인 협업으로 신속한 대처

□ 예산증감 사유

-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및 김포시 통합관제센터와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를 위해 300,000천원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추진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2025.8.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2025. 09. ~ 12. :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팀장 곽수진	담당자	전산7급 이상운	전화	4958
-----	--------	----------------	-----	----------	----	------

자치행정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총무과



기록물 관리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2로 42
사업규모	제3서고 내 중요기록물		
사업목적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7조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8조 ①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540	26,060	46,300	0	0	-20,240	6,5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540	26,060	46,300			-20,240	6,5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240	
기록물 관리 운영	401-01 시설비	· 제3서고 칸막이 및 소방공사 : (경정) 4,760,000원 - (기정) 25,000,000원	= -20,240	

□ 예산증감 사유

- 제3서고 신설(장기도서관 내) 관련 시설비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정과 자재(경량 칸막이) 투입 및 기존 소화 설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적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예산 절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년 김포시 기록물관리 운영계획 수립
- 2025. 6. : 제3서고 신설 및 기록물 이관 추진계획 수립
- 2025. 7. : 제3서고 기록물 이관 완료, 분리격벽 설치 준공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준공 : 41,185천원 · 김포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소독사업 : 7,600천원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사위원 수당 지급 : 180천원 · 기록관 유지관리 : 7,126천원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14회(서면), 1,650천원
2024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사위원 수당 지급 : 2회, 320천원 · 기록물 폐기 위탁 비용 : 180천원 · 김포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소독사업 : 7,990천원 · 기록물관리 교육 현수막 구입 : 110천원 · 기록물관리 교육 강사료 지급 : 389천원 · 기록관 소모품(보존용 지관, 보존상자 등) : 4,746천원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19회(서면), 1,710천원
2025	· 기록물 이관 운송비용 지급 : 1회, 2,250천원 · 기록관 소모품(이관용 마대, 행정박물 인장함 등) : 2,389천원 · 제3서고 분리격벽 설치 : 4,760천원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15회(서면), 2,0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625	57,741	-	884	
2024	19,540	15,445	-	4,095	
2025	46,300	11,449	-	34,85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총무팀장 정덕헌	담당자	사서7급 박상엽	전화	2040
-----	-----	----------	-----	----------	----	------

직원 복지제도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휴양소,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등		
사업목적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5.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6.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7. 모범공무원 및 소속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496,908	5,891,766	5,985,252	0	0	-93,486	394,85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496,908	5,891,766	5,985,252			-93,486	394,858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3,486	
직원 복지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직원 건강검진 지원 : 경정(720,000,000원)-기정(800,000,000원) =	-80,000	
	201-02 공공운영비	· 행정종합배상 공제회 가입 : 경정(65,514,000원)-기정(79,000,000원) =	-13,486	

예산증감 사유

- 건강검진 3개년 평균 청구율 고려하여 예상 불용액(10%) 사전 감액
- 25년 행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사전 고지액 대비 실 고지액 감소(13,486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총 1,987명 / 487,159천원 - 직원 휴양소 지원 : 총 1,898명 / 396,212천원 (전직원 대상) - 심리상담 지원 : 총 47명 / 16,449천원 - 보건소장 숙소 임차료 : 8,040천원 - 공무수행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 2명 / 74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2,440명 배정 / 3,370,641천원 - 단체보험 가입 : KB손해보험 / 659,931천원 -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70,355천원 - 장기재직 산업시찰 : 31명 실시 / 112,362천원 - 경기도 파견·지정근무자 숙소 임차료, 관리비, 보증금 : 17,141천원
2024	- 건강검진비 지원 : 총 1,798명 / 447,681천원 - 직원 휴양소 지원 : 총 2,001명 / 395,210천원 (전직원 대상) - 심리상담 지원 : 총103명 / 37,699천원 - 공무수행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 2명 / 766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2,407명 배정 / 3,386,860천원 - 단체보험 가입 : KB손해보험 / 736,827천원 -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73,707천원 - 장기재직 산업시찰 : 30명 실시 / 117,197천원 - 경기도 파견·지정근무자 숙소 임차료, 관리비, 보증금 : 13,231천원
2025	- 건강검진비 지원 : 총 460명 / 137,553천원 - 직원 휴양소 지원 : 총 702명 / 209,270천원 - 심리상담 지원 : 107명 / 17,709천원 - 공무수행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 1명 / 200천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2,323명 배정 / 2,976,804천원 - 단체보험 가입 : KB손해보험 / 755,302천원 -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65,513천원 - 장기재직 산업시찰 : 19명 실시 / 68,315천원 - 경기도 파견·지정근무자 숙소 임차료, 관리비, 보증금 : 5,269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92,039	5,139,030	-	153,009	
2024	5,496,908	5,209,178	-	287,730	
2025	5,985,252	4,235,935	-	1,749,31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후생노무팀장 이영하	담당자	간호8급 박세련 행정8급 김선희	전화	2794 2037
-----	-----	------------	-----	----------------------	----	--------------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면적 726㎡(지상3층). 정원 99명		
사업목적	김포시청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3.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95,177	494,027	583,027	0	0	-89,000	-1,1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95,177	494,027	583,027			-89,000	-1,1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9,000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 보육 교직원 기본급 : 경정(300,879,500원)-기정(357,059,500원) ·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 경정(86,120,000원)-기정(104,420,000원) · 퇴직적립금 등 : 경정(91,026,497원)-기정(105,546,497원)	= -56,180 -18,300 -14,520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아모집 결과 정원미달에 따른 보육교사 정수(2명) 조정 및 조리원·미화원 계약시간 축소(9시간→6시간)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10 반영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6. : 2025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교부
 - 2025. 4. :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 11. : 2026년도 원아모집 및 신입원아 확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민간위탁금 지급 : 421,789천원 · 직장어린이집 외벽 방수공사 : 6,300천원
2024	· 민간위탁금 지급 : 415,299천원
2025	· 민간위탁금 지급 : 477,739천원 ·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 14,36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99,589	428,089	-	71,500	
2024	495,177	415,299	-	79,878	
2025	583,027	492,101	-	90,92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후생노무팀장 이영하	담당자	행정7급 전예란	전화	2035
-----	-----	------------	-----	----------	----	------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569천원		
사업목적	공무원 본인과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에 대한 운영 경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 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27	569	800	0	0	-231	4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7	569	800			-231	4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1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운영부담금 : (경정) 569,000원 - (기정) 800,000원 ※ (2025년 고지) 744,000원 - (2024년 정산) 175,000원	= -231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고지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삭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고지 및 납부
 - 2025. 7. : 2025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고지 및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계: 572천원 · 1학기: 205천원 납부 -2학기: 367천원 납부
2024	계: 527천원 · 1학기: 148천원 납부 -2학기: 379천원 납부
2025	계: 569천원 · 1학기: 197천원 납부 -2학기: 372천원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2	572	-	-	
2024	527	527	-	-	
2025	800	569	-	23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인사팀장 현계자	담당자	행정8급 전영재	전화	2106
-----	-----	----------	-----	----------	----	------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본청 당직실)
사업규모	당직근무수당 및 인건비 지급(매월) 및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사업목적	본청 당직 운영 및 당직실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4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6,664	170,200	304,200	0	0	-134,000	43,5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6,664	170,200	304,200			-134,000	43,53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4,000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당직 인력 인건비 : 경정(96,000,000원)-기정(240,000,000원)	= -144,000	
	201-01 사무관리비	· 당직 수당 : 경정(68,200,000원)-기정(58,200,000원)	= 10,000	

□ 예산증감 사유

- 효율적 당직 체계 전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당직 전담인력 채용 인원 축소(10명 → 4명)
- 당직 전담인력제 본격 시행('25.3.1.) 이전 근무한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당직수당 지급(매월), 당직실 침구류 세탁 및 소모품 구입
 - 2025. 1. ~ 2. : 당직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5. 3. ~ 12. : 당직 전담인력제 운영(일반당직 기간제근로자 1명, 재난전담인력(안전기획관) 1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당직수당 지급 : 115,920천원 · 당직실 운영 (당직실 침구류 세탁, 소모품 구입 등) : 8,100천원
2024	· 당직수당 : 116,640천원 · 당직실 운영 (당직실 침구류 세탁, 소모품 구입 등) : 7,260천원
2025	· 당직수당 : 43,500천원 · 당직실 운영 (당직실 침구류 세탁, 소모품 구입 등) : 1,602천원 · 당직전담인력 급여 : 40,79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6,664	124,020	-	2,644	
2024	126,664	123,900	-	2,764	
2025	304,200	85,898	-	218,30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총무팀장 정덕헌	담당자	행정7급 김소연	전화	2192
-----	-----	----------	-----	----------	----	------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사망조위금 지급 65명 내외		
사업목적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본인, 가족에 대하여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보상금 지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법령 위임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76,800	241,248	179,400	0	0	61,848	64,44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6,800	241,248	179,400			61,848	64,44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1,848	
공무원 재해보상	307-07 연금지급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경정(3,711,500원*65명)-기정(3,588,000원*50명)	= 61,848	

□ 예산증감 사유

- 상반기 사망조위금 신청건수가 2023년, 2024년도 상반기 평균 신청건수 대비 30% 증가
- 2025. 5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상승에 따른 사망조위금 상승
 - 사망조위금 : 3,588,000원 → 3,711,500원 (123,500원 증가)
-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매년 5월 고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재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에 따른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망조위금 154,947,000원 지급(상반기 18명, 하반기 26명 : 총 44명)
2024	· 사망조위금 175,570,780원 지급(상반기 21명, 하반기 26명 : 총 47명)
2025	· 사망조위금 178,152,970원 지급(상반기 34명, 하반기 9명 : 총 43명) (집행률 99.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5,175	154,947	-	20,228	
2024	176,800	175,571	-	1,229	
2025	179,400	178,153	-	1,24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인사팀장 현계자	담당자	행정8급 전영재	전화	2106
-----	-----	----------	-----	----------	----	------

인력운영비(총괄)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인력운영비 138,373,080천원		
사업목적	인력운영(일반직·임기제·청원경찰)에 따른 보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2,673,592	137,868,193	138,073,080	300,000	0	-504,887	5,194,60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2,673,592	137,868,193	138,073,080	300,000		-504,887	5,194,60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4,887	
인력운영비 (총괄)	101-01 보수	. 성과상여금 : 경정(5,643,000,000원)-기정(5,700,000,000원) =	-57,000	
	101-02 기타직보수	. 기타직 보수 및 수당(실무수습) : 경정(0원)-기정(447,887,000원) =	-447,887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 조직개편 및 정원증가(1,639명→1,701명)로 2024년도 공채시험 합격자 전원 신규임용됨에 따른
관련 예산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보수 및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 포함)
2024	-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 포함)
2025	-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 포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5,711,211	118,231,825	-	7,479,386	
2024	132,673,592	124,876,839	-	7,796,753	
2025	138,373,080	95,159,880	-	43,213,2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총무과	인사팀장 현재자	담당자	행정7급 이명원	전화	2104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5. 하반기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접경지역 10개 시·군		
사업목적	휴전선 인접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협의 및 처리를 위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000	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10,000	1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행사 용역 (음향, 테이블, 현수막 등)	= 6,50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운영	= 3,500	

□ 예산요구 사유

- 휴전선 인접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협의 및 처리를 위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의 김포시 개최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의 김포시 개최 확정에 따라 회의 개최 소요되는 회의 개최 및 운영비, 참가자 급식비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예산 편성
 - 2025. 10.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장 박지연	담당자	행정7급 김재상	전화	2057
-----	-------	------------	-----	----------	----	------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해외
사업규모	상급기관 주관 출장, 벤치마킹, 업무 관련 출장 등		
사업목적	해외 주요 선진 국가의 선진 행정 경험을 통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 선진 정책사례를 시정에 접목하여 업무추진의 효과성 향상 및 시정 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의 여비는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별표 1 : 여비지급 구분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2,000	277,000	152,000	0	0	125,000	2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2,000	277,000	152,000			125,000	2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5,000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출장 운영비 : 경정(17,000,000원)-기정(2,000,000원)	= 15,000	
	202-04 국제화여비	.공무국외출장 국제화여비 : 경정(5,000,000원*52명)-기정(5,000,000원*30명)	= 11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주요 현안 접목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
- 상급기관 주관 국외출장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등

□ 예산증감 사유

- 공무원 해외 시찰을 통한 견문 확대, 아이디어 습득을 통해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접목 방안 마련 등
- 공무원 개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원들이 해외우수사례를 경험함으로써 김포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 2025. 1. ~ 12. : 공무국외출장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벤치마킹 : 1건 / 5명 / 4,994천원 · 상급기관 주관 국외출장 : 11건 / 12명 / 35,623천원 · 업무관련 국외출장 : 10건 / 19명 / 44,437천원 · 공무원 해외연수(배낭연수) : 13건 / 67명 / 183,000천원
2024	· 벤치마킹 : 1건 / 3명 / 5,177천원 · 상급기관 주관 국외출장 : 2건 / 2명 / 7,848천원 · 업무관련 국외출장 : 9건 / 16명 / 55,978천원 · 공무원 해외연수(배낭연수) : 11건 / 61명 / 81,000천원 · 그룹연수(모범공무원) : 1건 / 22명 / 84,657천원
2025	· 벤치마킹 : 1건 / 2명 / 4,283천원 · 상급기관 주관 국외출장 : 3건 / 5명 / 19,548천원 · 업무 관련 국외출장 : 4건 / 12명 / 33,272천원 · 공무원 해외연수(9월 중 예정) : 1건 / 15명 / 65,000천원 · 기타 : 국외 출장 통역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0	268,054	-	31,946	
2024	252,000	234,883	-	17,117	
2025	152,000	42,874	-	109,12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장 박지연	담당자	행정7급 김재상	전화	2057
-----	-------	------------	-----	----------	----	------

고향사랑기부제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목적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6,547	59,907	36,907	0	0	23,000	13,3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6,547	59,907	36,907			23,000	13,3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000	
고향사랑기부제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 경정(41,000,000원) - 기정(18,000,000원)	= 23,000	

□ 예산요구 사유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라 우리 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공급업체 답례품비 정산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 정산 금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 편성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계획 수립
 - 2025. 1. ~ 12.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및 지속 홍보 추진
 - ※ '25년 8월 말 기준 28개 업체 79개 품목 답례품 공급 중
 - 2025. 1. ~ 12. :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지속 발굴·추진(일반기부·지정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기부 모금액: 55,133,700원(기부건수: 656건) ·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업무 협약 체결: 관내 16개 업체(32개 품목) · 김포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 홍보 부스 운영(답례품 전시 및 홍보물 배부, 현장 이벤트 등):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고양시) · 광역 단위 교통수단 홍보: 서울역, 강남 회차 노선 광역버스 외면 홍보물 부착, 김포공항역사 환승지 광고판 홍보 · 홍보영상 제작: 광역버스(G버스), 정류장 전광판, 골드라인 내 홍보영상 송출 · 김포FC 구장 내 홍보 현수막 게시: 관객 출입구 및 코너 관중석 내 홍보 현수막 게시(시즌 내) · 카카오톡 비즈보드 홍보: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배너 송출
2024	· 2024년 기부 모금액: 124,397,000원(기부건수: 1,282건) ·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업무 협약 체결: 관내 15개 업체(40개 품목) · 홍보 부스 운영(답례품 전시 및 홍보물 배부, 현장 이벤트 등):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경주시), 아라마린 페스티벌 등 · 광역 단위 교통수단 홍보: 김포공항 역사 환승지 광고판 홍보 · 기부 독려 이벤트(답례품 1+1 이벤트 등) 실시: 가정의 달, 추석, 연말정산 시기 등
2025	· 2025년 기부 모금액: 13,149,900원(기부건수: 165건) ※ 2025. 8. 22. 기준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업무 협약 체결: 15개 업체(39개 품목) · 홍보영상 송출: 광역버스(G버스 TV), 골드라인(행선안내기, 빔프로젝터) · 홍보 부스 운영(답례품 전시 및 홍보물 배부, 현장 이벤트 등): 김포시민의 날, 아라마린 페스티벌 ·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감사서한 업서 발송 · 네이버 포털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배너 송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664	29,511	-	5,153	
2024	46,547	44,773	-	1,774	
2025	36,907	29,977	-	6,930	8.22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8급 고병완	전화	2743
-----	-------	------------	-----	----------	----	------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우수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0.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업목적	내실 있는 자치사업 발굴·실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등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000	0	0	0	3,000	3,00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우수사업비 지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수상 시군 상사업비(도비 100%) 교부에 따른 장기본동 주민자치회(장려상 수상) 우수사업비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보조금 내시 3,000천원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05. :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서면심사
 - 2025. 07. 08. : 경연대회 참가 및 발표심사(장려상 수상)
 - 2025. 07. 14. : 도 우수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및 상사업비 교부 신청
 - 2025. 09.: 사업비 재배정(장기본동)
 - 2025. 10. ~ 11. : 사업추진
 - 2025. 12. :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2024	-
2025	·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 참가 : 장려상 수상(장기본동 주민자치회/우수사업비 3,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박지나	전화	2742
-----	-------	------------	-----	----------	----	------

김포시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사업기간	2025. 9. ~ 12.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자율방범대	대표자	신용철
사업목적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을 통해 우범지역 순찰 등 야간 방법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แท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해당조례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4,756	0	0	0	34,756	34,756	
시비		31,280				31,280	31,280	
자부담		3,476				3,476	3,476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4,756	31,280	3,476	
김포시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차량 구입비 : 33,158,000원*1대 =	33,158	31,280	1,878	
		· 차량 등록비 : 1,598,000원*1대 =	1,598	-	1,598	

예산요구 사유

-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을 통해 단체의 안전한 활동 여건 마련 및 방법활동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자율방범대 풍무지대 보유 차량(2008년식 스타렉스) 노후화로 대원 안전 확보 및 순찰활동 수행에 차질이 있어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해당없음

□ 현장사진

부서

자치행정과

사업규모

김포시

3회추경
요구액
(천원)

31,28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시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현장사진

Page 1 of 2

견적서

김포시연합대 님

담당

이용재차장 사우

2025-06-24 15:28

연락처

☎ 010-4023-6553 ☎ 031-984-8204 ☎ 031-982-6063 ✉ j21j0@naver.com

자기소개

고객에 의한,고객을 위한,고객의 선택

차량 선택사항

USJTBDST3 T03 YAC/NNB

기본 품목

스타레아 루머러 24MY 자가용 디젤 2WD 오토 11인승 스마트 .

선택 품목
파츠

멀티미디어내비플러스1(230만)

색상

크리미 화이트 블랙원톤

가격사항

차량기본가격	30,510,000 원
선택사양가격	2,300,000 원
파츠/색상	0 / 0 원
① 순수차량가격	과세 32,810,000 원
② 탁송료	경기/김포시(시흥) 345,000 원
③ 할인	0 원
포인트	0 원
세금증감	0 원
↳ (세금)계산서 반영금액 33,155,000	
총 판매금액 계 (①+ ②+③)	33,155,000 원

↳ 탁송료를 포함한 차량가격에 할인, 포인트 차감, 세금증감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지불조건

계약금	100,000 원
인도금	33,055,000 원
의무보험료	3,100 원
*전동차 지원금	0 원
I 출고전 납입하실 금액	33,158,100 원

* 할부원금과 전동차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지불방법

할부원금	0 원
이자총액	0 원
월 납입금	- 원
금리/기간	0 % / - 개월
* 유예이자전가보장형 할부등의 자세한 사항은 2P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동금리 할부는 최초 대출시점의 금리가 이용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주기로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할부부대비용	
인자대	0 원
공증/설정료	0 / 0 원
할부이자부가세	0 원
할부부대비용계	0 원

등록비용

취득세	1,507,040 원
공제대입/법인	경기도 905,000 / 21,720 원
번호판/영구차대/세금공제	37,000 / 2,000 / 30,000 원
등록비용 계	1,597,760 원
II 등록비용 포함 납입하실금액	34,755,860 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허지인	전화	2268
-----	-------	------------	-----	----------	----	------

김포시자율방범대 사무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연중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자율방범대		대표자	신용철	
사업목적	자율방범대 사무운영 지원을 통한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활동 기반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통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해당조례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4,300	0	0	0	4,300	4,300	
시비		3,870				3,870	3,870	
자부담		430				430	43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4,300	3,870	430	
김포시자율방범대 사무운영 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무실 임차료 : 223,157원*3개월 = 669,473원 · 기자재구입 비용 - 일체형컴퓨터 : 1,000,000원*1대 = 1,000,000원 - 냉난방기 : 700,000원*1대 = 700,000원 - 냉장고 : 500,000원*1대 = 500,000원 - 프린터 : 200,000원*1대 = 200,000원 - 책상 및 의자 : 1,230,000원	670 3,630	670 3,200	- 430	

□ 예산요구 사유

- 자율방범연합대 사무공간 확보 지원을 통한 조직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활동 기반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연합대 사무실 임차료·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를 소요 예산에 반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허지인	전화	2268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산관리과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사업목적		투명한 회계처리 및 체계적인 결산업무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5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1,898	67,350	77,100	0	0	-9,750	5,45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1,898	67,350	77,100			-9,750	5,45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750	
지출 및 결산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결산검사위원 수당 - 경정(150,000원*10명*14.5일)-기정(150,000원*10명*20일)	= -8,250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 경정(150,000원*0명)-기정(150,000원*10명)	= -1,5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이 2025. 6. 2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당 집행잔액과 교육비 전액 삭감

□ 예산증감 사유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삭감
- 결산검사위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집합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비 전액 삭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01. ~ 03. 19. : 결산(안)작성 및 결산보고
 - 2025. 04. 18. ~ 05. 02. : 결산검사 실시
 - 2025. 05. 15. : 결산서 의회 제출
 - 2025. 06. 02. ~ 06. 20. : 제2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승인
 - 2025. 06. 20.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 2025. 06. 23. : 2024회계연도 결산 고시
 - 2025. 10월 중 : 회계실무 교육 및 교재 배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2023. 3. 17. : 2022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 2023. 4. 24. ~ 5. 8. : 결산검사 실시 / 2023. 5. 15. : 결산서 의회 제출 / 2023. 6. 15. ~ 6. 22. : 결산승인(안) 심사 및 승인 · 2023.10. 25. : 회계실무 교육 실시
2024	· 2024. 3. 20. : 2023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 2024. 4. 19. ~ 5. 3. : 결산검사 실시 / 2024. 5. 09. : 결산서 의회 제출 / 2024. 6. 17. ~ 6. 25. : 결산승인(안) 심사 및 승인 · 2024.10. 23. : 회계실무 교육 실시
2025	· 2025. 3. 19. :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 2025. 4. 18. ~ 5. 2. : 결산검사 실시 / 2025. 5. 15. : 결산서 의회 제출 / 2025. 6. 2. ~ 6. 20. : 결산승인(안) 심사 및 승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152	68,899	-	253	
2024	61,898	61,854	-	44	
2025	77,100	63,800	-	13,3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경영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박민아	전화	2720
-----	-------	----------	-----	----------	----	------

공용차량 유지보수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공용차량 종합보험 일괄가입(총 353대)		
사업목적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원활한 현장 행정지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7조 제1항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90,000	292,560	432,560	0	0	-140,000	2,5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0,000	292,560	432,560			-140,000	2,5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0	
공용차량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보험료 : 경정(185,000,000원) - 기정(325,000,000원) =	-14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공용차량 종합보험 용역 낙찰 차액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공용차량 종합보험 일괄 가입 용역 입찰로 예산 절감하여 낙찰 차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05. : 2025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용역 계획보고
 - 2025. 03. 06. : 2025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용역 집행
 - 2025. 04. 02. ~ 2026. 04. 01. : 보험 가입 유지 기간
 - 2026. 01. : 2026년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용역 계획 수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험료(341대) 279,244,320원
2024	· 보험료(346대) 176,646,290원
2025	· 보험료(353대) 159,304,01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8,748	389,122	-	9,626	
2024	290,000	277,111	-	12,889	
2025	432,560	222,460	-	210,1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경리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8급 이윤규	전화	2733
-----	-------	----------	-----	----------	----	------

계약추진 및 관리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제안서평가위원회,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관리 필요 경비		
사업목적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6,940	58,070	44,970	0	0	13,100	11,130	
국비								
도비								
시비	46,940	58,070	44,970			13,100	11,13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100	
계약추진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경정(250,000원*8명*13회)-기정(250,000원*8명*10회)	= 6,000	
		·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 경정(20,000원*850건)-기정(20,000원*600건)	= 5,000	
		· 공탁대행 법무사 수수료 : 경정(3,000,000원)-기정(900,000원)	= 2,100	

□ 예산요구 사유

- 협상에 의한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입찰 공고, 채권 확보 등 계약 업무 관련 대행 수수료

□ 예산증감 사유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필요경비 부족분 증액
- 계약 채권 확보 절차 수행에 필요한 대행수수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지급
 -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매월)
 - 계약의무 지체 등에 따라 발생한 계약 채권 확보 절차 이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제안서 평가수당 : 11회, 19,250천원 ·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입찰) : 279건, 6,060천원 · 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등 : 4,543천원
2024	· 제안서 평가수당 : 11회, 21,000천원 · 나라장터이용수수료(입찰) : 476건, 10,440천원 · 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등 : 10,700천원
2025	· 제안서 평가수당 : 7회, 12,750천원 · 나라장터이용수수료(입찰) : 410건, 8,840천원 · 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등 : 6,289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9,853	-	147	
2024	46,940	42,140	-	4,800	
2025	44,970	27,879	-	17,09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계약1팀장 김준세 계약2팀장 이은화	담당자	행정7급 김정호 시설7급 양정우 녹지7급 조민우	전화	2725 2727 2734
-----	-------	------------------------	-----	----------------------------------	----	----------------------

도유재산 관리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유재산
사업규모	토지 : 4,241필지(2,842천㎡), 건물 : 7동(5천㎡)		
사업목적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유재산의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0,000	17,500	10,000	0	0	7,500	-2,500	
국비		0					0	
도비	20,000	17,500	10,000			7,500	-2,5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00	
도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측량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경정(500,000원*31필지) - 기정(500,000원*16필지)	= 7,500	

□ 예산요구 사유

- 도유재산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지적(경계·현황)측량비 및 도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 예산증감 사유

-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측량비 16필지→31필지)
[경기도 자산관리과-12701(2025.06.2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도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5. 04. ~ 10. : 도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무단점유 대상지 경계 및 현황 측량 실시
 -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처분
 - 2025. 11.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유재산(도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3. 04. ~ 2023. 10. (대상 : 토지 4,183필지, 건물 7동)
2024	- 공유재산(도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4. 04. ~ 2024. 10. (대상 : 토지 4,238필지, 건물 7동)
2025	- 공유재산(도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25. 04. ~ 2025. 10. (대상 : 토지 4,241필지, 건물 7동)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	591	-	909	
2024	20,000	16,349	-	3,651	
2025	10,000	7,674	-	2,32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 최미영	담당자	행정7급 이연지	전화	2730
-----	-------	------------	-----	----------	----	------

시 청사 유지관리비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시 청사 건물 및 부지			
사업목적		노후된 시청사 시설물에 대해 수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청사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실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05,000	1,370,000	1,120,000	0	0	250,000	76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5,000	1,370,000	1,120,000			250,000	76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시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	401-01 시설비	· 시 청사 유지관리비 - 시청사 노후 및 파손 건축/급수배관/전력/기계설비 보수 : (경정) 1,370,000,000원 - (기정) 1,120,000,000원	= 25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제3별관 대강당 및 사무실 노후 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시청사 노후 시설 보수 공사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5. 01. ~ 12. : 노후 및 파손 시설 개보수 공사 수시집행
- '25. 04. : 민원동 지하주차장 구조보강 공사
- '25. 06. ~ 10. : 제3별관 창호 교체공사
- '25. 07. ~ 09. : 제3별관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
- '25. 10. : 제3별관 전력 수배전반 주요부품 교체 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후생동 서고 및 행정자료실 조성 공사(70,681천원) · 운양환승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48,711천원) · 정보관동 전력간선 증설 전기공사(17,315천원) · 그 외 청사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 공사(21,923천원)
2024	· 김포시청 후생동 냉난방기 환경개선 공사(53,885천원) · 후생동 노후 덤웨이터 교체공사(48,559천원) · 별관동 주차장 관차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43,431천원) · 김포시청 점자블록 등 시설물 보수 공사(16,902천원) · 민원동 창호 개선공사(32,945천원) · 시청사 부서 재배치 전열공사(19,265천원) ·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조도개선 전기공사(14,319천원) · 청사 내 블록 담장 철거 공사(13,149천원) · 그 외 청사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 공사(355,559천원)
2025	· 제3별관 미사용 팬코일유닛 철거공사(19,574천원) · 민원동 지하주차장 구조보강 공사(99,350천원) · 제1별관 접지보강 전기공사(22,132천원) · 제3별관 창호 교체공사(594,973천원) · 제3별관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326,492천원) ·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36,494천원) · 그 외 청사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 공사(11,62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2,847	158,630	-	4,217	
2024	605,000	598,014	-	6,986	
2025	1,120,000	1,110,636	-	9,36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7급 노태원 공업7급 김지운 공업8급 송기열 시설8급 정한울 시설8급 박세용 공업8급 김경환 공업9급 김민섭	전화	2735 2914 2972 2736 5237 2968 5238
-----	-------	------------	-----	--	----	--

시 청사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김포시청)
사업규모	시 청사 전체		
사업목적	효율적인 청사청소 관리를 통한 쾌적한 시청사 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49,957	521,763	654,763	0	0	-133,000	171,80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9,957	521,763	654,763			-133,000	171,80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3,000	
시 청사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청사청소 용역(제3별관) : 경정(10,375,000원*8월) - 기정(18,000,000원*12월)	= -133,000	

□ 예산요구 사유

- 시청사 건물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청사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청사청소 용역 전환일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제3별관 청사청소 용역기간 (1월~12월) → (5월~12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12. : 2025년 김포시청사 청소 용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청사 청소업무 수행
2024	- 시청사 청소업무 수행
2025	- 시청사 청소업무 수행 - 시청사 청소용역 (334,96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9,986	274,136	-	5,850	
2024	349,957	341,549	-	8,408	
2025	654,763	464,119		190,64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황원범	담당자	시설8급 정한울	전화	273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세정과



지방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운영(성립전)

사업기간	2025. 6. 1. ~ 2025.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세무업무 담당직원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 및 상사업비 지원(2024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 대한 시·군평가)		
사업목적	지방세정 운영 성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20,000				20,000	2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지방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2025년 지방세정연찬회 운영 : 523,333원 * 15명 * 2회 =	15,700	
	202-04 국제화여비	·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성립전) : 4,300,000원 * 1명 =	4,300	

□ 예산요구 사유

- 2024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성과평가 1그룹 우수 시·군(도약상)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에는 해당 상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으나, 2024년 도약상 수상에 따라 상사업비(20,000천원) 교부로 예산 신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28. :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4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1그룹/도약상)
 - 2025. 4. 10. :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 교부
 - 2025. 6. 12. ~ 6. 27. :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 ※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참석(6. 25. ~ 7. 4.)
 - 2025. 10. ~ 12. :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2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1그룹/우수상) ※ 세무1과 : 35,440천원, 세무2과 : 44,560천원(부서 정원에 따른 안분 편성) · 2023년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2회)
2024	-
2025	·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4회계연도) 결과 우수 시·군 선정(1그룹/도약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440	35,440	-	-	
2024	-	-	-	-	
2025	4,300	4,3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세정과	세정팀장 최은정	담당자	전산7급 이승환	전화	268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취득재산세과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운영

사업기간		2025. 9.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취득재산세과 세수증대활동				
사업목적		경기도 지방 세수증대활동 재정지원을 통한 세입 징수 목표액 달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903	17,993	0	0	0	17,993	8,090	
국비		0					0	
도비	9,903	17,993				17,993	8,09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993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2025년 지방세정연찬회 운영 : 599,760원 * 30명	= 17,993	

□ 예산요구 사유

○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추진

- 추진목적 : 지방 세정 연찬회를 통해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직원 상호간 소통 및 조직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연구
 - 세수추계 전문가 육성 및 발굴 연구 모임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 방안 연구

□ 예산증감 사유

- 세수증대활동비 일원화에 따른 예산 증액
 - 2024년에는 세정과와 취득재산세과의 정원 기준에 따라 예산을 안분하여 편성
 - 2025년에는 부서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예산을 분리 편성
- ※ 취득재산세과는 세수증대활동비, 세정과는 상사업비를 각각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20. : 2025년도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교부
 - 2025. 7. :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보조금 사용계획 수립
 - 2025. 9. ~ 12. : 추진계획에 따른 연찬회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
2024	· 2024년 지방세정 업무연찬회 추진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960	10,960	-	-	
2024	9,903	9,903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장 함혁	담당자	행정7급 원선아	전화	264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징수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기본경비		
사업목적	도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3,089	32,693	11,290	0	0	21,403	-10,396	
국비		0					0	
도비	43,089	32,693	11,290			21,403	-10,396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403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	201-01 사무관리비	·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 (경정) 32,693,000원 - (기정) 11,290,000원	= 21,403	

□ 예산요구 사유

- 도세 체납액 징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편성
(체납 징수 활동 지원 및 체납 징수업무 연찬회 운영 등)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25년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 우수 시·군에 징수활동비 확대 지원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02. :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확정내시(1~2차) 및 자금교부
 - 2025. 07. : '25년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 수상(최우수) 및 확정내시(3차)
 - 2025. 09. ~ 11. :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교육비, 홍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23,073천원 ·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 27,703천원 · 동절기 체납 징수 피복비 : 7,176천원
2024	·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 21,258천원 · 체납징수 업무 연찬회 : 16,962천원 · 징수활동 사무용품 구입 : 4,869천원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173	57,952	-	3,749	
2024	43,089	43,089	-	-	
2025	11,290	-	-	11,29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징수과	징수기획팀장 이준영	담당자	행정7급 김수경	전화	2547
-----	-----	------------	-----	----------	----	------

세외수입 평가 시상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1
사업규모		업무 연찬회 추진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 부서 포상		
사업목적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6,800	0	0	0	16,800	16,800	
국비		0					0	
도비		16,800				16,800	16,8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800	
세 외 수 입 평가시상금	201-01 사무관리비	· 업무 연찬회 및 역량강화 연구발표 워크숍	= 10,000	
	303-01 포상금	·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 6,800	

□ 예산요구 사유

-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공유를 위한 연찬회 등 추진
- 징수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동기 부여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25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 시상금)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25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수상(최우수)
 - 2025. 07. : '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수상(우수)
 - 2025. 09. : 업무 연찬회 및 포상 계획수립
 - 2025. 11. : 업무 연찬회 추진
 - 2025. 12. :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 부서 포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장 김정모	담당자	행정7급 김광진	전화	2566
-----	-----	--------------	-----	----------	----	------

경제국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일자리정책과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배달노동자 100명		
사업목적	배달 플랫폼 이용 확대로 증가한 배달노동자의 중대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3항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7,000	0	0	0	17,000	17,000	
국비		8,500				8,500	8,500	
도비		0					0	
시비		8,500				8,500	8,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안전교육 홍보비 : 1,560,000원	1,56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보호장구 구입비 지원 : 150,000원*100명 = 15,000,000원	15,000	
	301-14 기타보상금	- 안전교육 강사비 : 220,000원*2회 = 440,000원	440	

□ 예산요구 사유

-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보호장구 구입비(1인 최대 15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자 모집
 - 2025. 9. ~ 10. :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2회 실시
 - 2025. 9. ~ 12. : 배달노동자 보호장구 구입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홍보 실시 - 안전교육 2회 실시(예정), 보호장구 구입비 100명 지원(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5,950	165	-	5,78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영옥	담당자	행정8급 장희원	전화	2277
-----	--------	-------------	-----	----------	----	------

새일센터 지정운영(운영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3,390	43,167	39,628	0	-4,936	8,475	9,777	
국비	16,695	21,583	19,814		-2,468	4,237	4,888	
도비	8,347	10,792	9,907		-1,234	2,119	2,445	
시비	8,348	10,792	9,907		-1,234	2,119	2,44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75	
새일센터 지정운영 (운영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 본 급 : 2,415,000원*3개월 = 7,245,000원 · 활동경비 : 100,000원*3개월 = 300,000원 · 4대보험료 : 310,000원*3개월 = 930,000원 =	8,475	

□ 예산요구 사유

- 공무원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본급, 활동경비, 보험료 3개월분 편성
※ '25년 새일센터 기본급 기준 준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12. : 기간제근로자 채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취업자수 861명, 기업체 환경개선 3개 업체,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등 운영
2024	- 취업자수 781명, 기업체 환경개선 2개 업체,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등 운영
2025	- 취업자수 511명, 기업체 환경개선 2개 업체,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등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500	31,821	-	1,679	
2024	33,390	33,199	-	191	
2025	34,692	9,141	-	25,55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전화	5549
-----	--------	-------------	-----	----------	----	------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7,946	72,157	95,440	0	-25,783	2,500	24,211	
국비	47,946	72,157	95,440		-25,783	2,500	24,211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	·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 경정(21,097,000원)-기정(20,247,000원) = 850,000원	85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직업교육훈련 다과 구입 : 경정(1,450,000원)-기정(1,150,000원) = 300,000원	300	
	301-14 기타보상금	· 직업교육훈련 강사비 : 경정(32,500,000원)-기정(31,150,000원) = 1,350,000원	1,350	

□ 예산요구 사유

- '25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직업교육훈련) 변경에 따른 국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직업교육훈련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신규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육훈련 운영비 등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직업교육훈련 추진계획 수립
 - 2025. 9. ~ 10. : 사업 집행
 - 2025. 10. ~ 11. :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 도	과 정 명	교육시간(시간)	교육인원(명)	수료인원(명)	취업인원(명)
2023	의류엠디(MD) 스타일전문가 양성과정	104	20	20	8
	AI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	136	20	20	18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152	20	20	15
	실무역량강화 Excel 스킬 업	40	17	17	5
	산모 영유아 돌봄 전문가 양성과정	160	20	20	15
2024	치매예방전문가 양성과정	104	20	20	13
	AI데이터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	144	20	20	15
	세무회계 실무 과정	108	20	20	14
2025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자 과정	104	20	20	6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152	20	운영중	운영중
	온라인 실무 사무원 과정	148	20	운영중	운영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904	74,316	-	2,588	
2024	47,946	47,170	-	776	
2025	69,657	32,175	-	37,48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전화	5549
-----	--------	-------------	-----	----------	----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자체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3,530	74,075	63,500	0	0	10,575	-49,4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3,530	74,075	63,500			10,575	-49,4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575	
김포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자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새일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 12,150,000원	= 12,15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 경정(1,925,000원)-기정(3,500,000원)	= -1,575	

□ 예산요구 사유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미수료자 자부담금을 활용하여 새일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새일센터 사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 직업교육훈련 교육장 노후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후 집행잔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2024.6. 반영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새일센터 운영물품 구입
2024	- 새일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교육장 확장 이전 설치
2025	- 새일센터 운영물품 구입 및 교육장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671	41,091	-	1,580	
2024	123,530	121,371	-	2,159	
2025	63,500	41,275	-	22,22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전화	5549
-----	--------	-------------	-----	----------	----	------

인력운영비(새일센터 지정운영(운영지원))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취업상담사 4명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0,312	191,863	189,640	0	10,698	-8,475	1,551	
국비	95,156	95,932	94,820		5,349	-4,237	776	
도비	47,578	47,966	47,410		2,675	-2,119	388	
시비	47,578	47,965	47,410		2,674	-2,119	38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75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지정운영 (운영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취업상담사 인건비 : 경정(150,933,000원)-기정(159,408,000원) =	-8,475	

□ 예산요구 사유

- 취업상담사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취업상담사 퇴직에 따른 소요 인건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취업자수 861명, 기업체 환경개선 3개 업체,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등 운영
2024	- 취업자수 781명, 기업체 환경개선 2개 업체,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등 운영
2025	- 취업자수 511명, 기업체 환경개선 2개 업체, 찾아가는 새일센터(이동상담) 등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3,976	177,528	-	6,448	
2024	190,312	181,807	-	8,505	
2025	200,338	118,250	-	82,08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전화	5549
-----	--------	-------------	-----	----------	----	------

인력운영비(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집단상담))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125(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사업규모	직업상담사 2명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9,620	67,776	66,960	0	816	0	18,156	
국비	49,620	67,776	66,960		816		18,156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인력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직업상담사(2명) 인건비 : 경정(56,326,000원) - 기정(61,326,000원)	= -5,000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직업상담사(2명)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 : 경정(11,450,000원) - 기정(6,45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직업상담사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직업상담사 육아시간 인건비(고용노동부 지급) 감액 후,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단상담 프로그램(15기, 203명 수료) 및 사후관리 특강(2회, 30명 참여) 운영
2024	- 집단상담 프로그램(12기, 203명 수료) 및 사후관리 특강(2회, 32명 참여) 운영
2025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10기, 175명 수료) 및 사후관리 특강(1회, 20명 참여)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1,088	68,819	-	2,269	
2024	49,620	47,851	-	1,769	
2025	67,776	43,150	-	24,62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황명주	담당자	행정6급 박선영	전화	5549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균특지원, 7%)(성립전)

사업기간	2025. 5. ~ 2025. 8.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상자 268,081명		
사업목적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1,000	4,728,000	0	0	0	4,728,000	3,727,000	
국비	286,000	1,351,000				1,351,000	1,065,000	
도비	286,000	1,351,000				1,351,000	1,065,000	
시비	429,000	2,026,000				2,026,000	1,59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28,000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료(67,540,000,000원 × 7%)	= 4,728,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할인율 7%) 확정 통보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균특지원) 예산 통보(국비확정내시)[경기도 지역금융과-5756(2025.6.1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16. : 20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균특지원) 예산 통보(국비확정내시)
- 2025. 6. 26. : 2025년 지역화폐 발행지원(균특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 2025. 6. ~ 8. : 2025년 지역화폐 발행지원(균특지원) 보조금 교부
- 2025. 8.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6. 1. : 발행지원사업(균특지원)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 - 회원수 : 208,118명 - 가맹점 : 14,884개소 - 발행액 : 153,277,733천원(일반발행 136,158,718천원 / 정책발행 17,119,015천원) - 결제액 : 164,717,008천원(발행액 대비 107%)
2024	○ 김포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 - 회원수 : 243,738명 - 가맹점 : 14,649개소 - 발행액 : 143,525,121천원(일반발행 129,063,132천원 / 정책발행 14,461,989천원) - 결제액 : 146,591,484천원(발행액 대비 102%)
2025	○ 김포페이 발행 및 운영 실적 - 회원수 : 268,081명 - 가맹점 : 15,147개소 - 발행액 : 75,156,170천원(일반발행 66,110,866천원 / 정책발행 9,045,304천원) - 결제액 : 78,888,442천원(발행액 대비 10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45,000	945,000	-	-	
2024	1,001,000	1,001,000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화숙	담당자	행정7급 장현영	전화	5217
-----	-------	------------	-----	----------	----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0개소(2025년 지정목표 수)		
사업목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창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소모품 지급 등 3. 종량제봉투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592	59,500	49,300	0	0	10,200	47,908	
국비	3,478	17,850	14,790			3,060	14,372	
도비	2,434	12,495	10,353			2,142	10,061	
시비	5,680	29,155	24,157			4,998	23,4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0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 증가(12개소 / 58개소=>70개소) (12개소 × 850천원)	= 10,200	

□ 예산요구 사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025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알림[경기도 공정경제과-11398(2025.7.29.)]

□ 예산증감 사유

-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 증가(12개소 / 58개소=> 70개소)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5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조정 수요조사 제출
 - 2025. 7. : '25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알림
 - 2025. 9. : '25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 2025. 9. ~ 12. : '25년 3~4분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집행
 - 2026. 1.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물품지원(종량제봉투) : 9,792천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 1,161천원
2024	○ 물품지원(종량제봉투) : 10,723천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 862천원
2025	○ 활성화 지원(1~2분기 / '전기요금 및 맞춤형물품구입비' 일부지원) : 23,780천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 1,03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51	10,953	-	98	
2024	11,592	11,585		7	
2025	49,300	24,814	-	24,48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화숙	담당자	행정7급 장현영	전화	5217
-----	-------	------------	-----	----------	----	------

지역화폐 발행지원(군특지원, 10%)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상자 268,081명		
사업목적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652,000	0	0	0	3,652,000	3,652,000	
국비		1,826,000				1,826,000	1,826,000	
도비		730,400				730,400	730,400	
시비		1,095,600				1,095,600	1,095,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52,000	
지역화폐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료(36,520,000,000원 × 10%)	= 3,652,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할인율 10%) 내시 예정에 따른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할인율 10%)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국비사업(10%지원) 수요 조사 및 결과 제출
 - 2025. 9. : 국비사업(10%지원) 확정내시 통보
 - 2025. 9. ~ 12. : 국비사업(10%지원) 집행
 - 2026. 1. : 발행지원사업(균특지원)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페이 가입 현황 - 회원수 : 208,118명 - 가맹점 : 14,884개소
2024	○ 김포페이 가입 현황 - 회원수 : 243,738명 - 가맹점 : 14,649개소
2025	○ 김포페이 가입 현황 - 회원수 : 268,081명 - 가맹점 : 15,147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화숙	담당자	행정7급 장헌영	전화	5217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업지원과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기간	2025. 05. ~ 12.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122(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업규모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1대)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원거리 등기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내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 -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 내 기업의 편의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5,000	0	0	0	25,000	2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				25,000	2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김포제조융합 혁신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조달수수료 포함) : 25,000,000원 * 1대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편의 제공 확대(시간적·경제적 불편함 해소)

※ 1,340여 개의 입주기업은 법인서류 필요 시 사우동 소재 '김포등기소'(15km 거리, 상습정체구간으로 편도 40분 이상 소요)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이용 접근성 문제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인한 예산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2025.08.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설치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김포시→법원행정처)
 - 2025.08. :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반영)
 - 2025.11. : 대법원 법원행정처 최종 설치승인
 - 2025.12. :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기업지원과	사업규모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1대)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5,000
부기명 (세부사업)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위치	양촌읍 항금1로122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김지연	담당자	행정7급 이우철	전화	2894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투자유치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황금로127번길 217, 황금산단3로 119
사업규모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6,800m ³ /일,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3,000m ³ /일		
사업목적	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물환경 보전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3조
		①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76,084	1,486,429	1,680,429	0	0	-194,000	10,34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76,084	1,486,429	1,680,429			-194,000	10,34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4,000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301-14 기타보상금	·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보전금(주거지역) : 3,333,000원*12월 = 40,000,000원	= 40,000	
	307-05 민간위탁금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 (경정)830,000,000원 - (기정)1,000,000,000원	= -170,000	
		·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용역 : (경정)91,000,000원 - (기정)155,000,000원	= -64,000	

□ 예산요구 사유

-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은 공공하수도 단가를 적용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차액분에 대해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단가 상승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함.

□ 예산증감 사유

-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단가 상승에 따라 운영 보전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월평균 예상 22,500천원 → 25,800천원)을 요청함.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 처리량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하고자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낙찰률 54.8%)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1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5.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용역 계약
 - 2023. 7. ~ 2025. 12.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 483,140천원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 325,882천원(1차년도) ○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 : 58,400천원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 : 33,246천원
2024	○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주거지역 사용료) 지원금 : 259,526천원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 713,644천원(2차년도) ○ 양촌 및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 : 96,681천원
2025	○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주거지역 사용료) 지원금 : 177,412천원 ○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 418,249천원(3차년도) ○ 양촌 및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 : 72,80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71,662	900,668	-	170,994	
2024	1,184,581	1,069,851	-	114,730	
2025	1,425,000	668,463	-	756,53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지연	담당자	환경7급 김성령	전화	2814
-----	-------	--------------	-----	----------	----	------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기간	2022. 1. ~ 2027.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벽리 ~ 양촌읍 학운리
사업규모	2.38km, 양방향 2차로(폭 16.5m) [2km구간 : 국가지원, 0.38km: 시부담] ※ 기본설계기준		
사업목적	김포골드밸리와 광역도로(거침도~약암리) 간 연계성 구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해당조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제1항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 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3,000	0	0	0	103,000	10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3,000				103,000	103,000	
기타		0					0	

※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는 d-brain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 (세출예산요구서 미포함)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3,000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	401-01 시설비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103,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지원범위:2km)하고 있는 「학운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법정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비부담분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3. 7.부터 실시중인 「학운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법정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안전진단, 설계VE)에 대하여 국비를 선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용역은 '25. 8 ~ 10. 용역완료 예정임에 따라 시비부담분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신규산단 진입도로 지원 신청
 - 2022. 2. : 타당성 확보 및 사업선정
 - 2023.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4. :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25. 12. : 실시계획인가
 - 2026. 1.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협의(국토부)
 - 2026. 3. : 보상 착수
 - 2027. 1. : 착공
 - 2027. 12. :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2,660,000	0	103,000	0	0	0	103,000	2,557,000
공 정 별	설계비	103,000		103,000				103,000	
	보상비	180,000		0					180,000
	공사비	2,097,000		0					2,097,000
	감리비	280,000		0					280,000

※ 기본설계 기준으로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 변동가능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투자유치과	사업규모	L=2.38km, B=16.5m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03,000
부기명 (세부사업)	학운5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위치	대곶면 대벽리(거침약암도로) ~ 양촌읍 학운리(학운5산단)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이지연	담당자	시설7급 이지선	전화	2813
-----	-------	--------------	-----	----------	----	------

교육문화국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11세 ~ 18세 여성청소년		
사업목적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 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97,872	2,745,288	2,342,088	0	0	403,200	247,416	
국비		0					0	
도비	749,362	823,587	702,627			120,960	74,225	
시비	1,748,510	1,921,701	1,639,461			282,240	173,19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3,2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생리용품 구입 지역화폐 지원 : 경정(2,745,288천원)-기정(2,342,088천원) =	403,200	

□ 예산요구 사유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본예산 경기도 내시 인원보다 우리 시 신청 인원 초과에 따른 예산 부족
- 부족 인원 2,400명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 신청 접수(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 2025.05. ~ : 대상자 검증 및 지역화폐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 2025.1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여성청소년 16,159명 지원(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2024	여성청소년 15,545명 지원(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2025	여성청소년 12,588명 지원 완료, 향후 총 16,341명 지원 예정(월 14,000원, 최대 연 168,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40,592	2,600,000	-	540,592	
2024	2,497,872	2,420,000	-	77,872	
2025	2,342,088	2,300,000	-	42,08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8급 황수현	전화	2989
-----	--------	-----------	-----	----------	----	------

(재)청소년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사업규모		중봉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5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사업목적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685,546	10,121,376	10,427,447	0	13,920	-319,991	1,435,83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685,546	10,121,376	10,427,447		13,920	-319,991	1,435,8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9,991	
(재)청소년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사무국 경정(7,137,903,000원)-기정(7,439,634,000원)	=	-301,731
		· 중봉청소년수련관 경정(752,814,000원)-기정(772,194,000원)	=	-19,380
		·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경정(182,389,000원)-기정(190,669,000원)	=	-8,280
		· 사우청소년문화의집 경정(110,763,000원)-기정(111,763,000원)	=	-1,000
		·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경정(311,609,000원)-기정(301,209,000원)	=	10,40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재단 목적사업 수행
-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시민·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사무국 :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됨(2024. 12.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 주요 청소년시설 내 노후화 사인물 교체로 인한 증액, 육아휴직 9명 및 대체인력 미채용 7명 6개월분 인건비 감액
- 풍무청소년문화의집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의 결과, 인증기준에 따른 시설개선 필수 조치사항 반영을 위한 공사비 편성(미조치 시 본인증 취득불가)
- 기타 : 건물 청소용역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하원 차량 임차용역 낙찰차액 감액

※ 사업장별 주요 증감내역 별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12. :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4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5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554,493	9,248,744	-	305,749	
2024	8,685,546	8,220,292	-	465,254	
2025	10,441,367	10,441,367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7급 전지현	전화	2595
-----	--------	-----------	-----	----------	----	------

[별첨]

○ 청소년재단 출연금 사업장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주요 증감 내역
	2025년 3회추경(A)	2025년 2회추경(B)	증감(A-B)	
합 계	8,495,478	8,815,469	-319,991	
사무국	7,137,903	7,439,634	-301,731	(증액) 통상임금 기준 변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2,147천원 (증액) 재단 주요시설 노후화 사인물 교체 10,000천원 (감액) 육아휴직 9명, 대체인력 미채용 7명 6개월분 -323,878천원
중봉청소년 수련관	752,814	772,194	-19,380	(감액) 건물 청소용역비 -19,380천원
통진청소년 문화의집	182,389	190,669	-8,280	(감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하원차량 임차비 -8,280천원
사우청소년 문화의집	110,763	111,763	-1,000	(감액) 건물 청소용역비 -1,000천원
풍무청소년 문화의집	311,609	301,209	10,400	(증액) BF본인증 시설개선 공사비 23,000천원 (감액) 건물 청소용역비 -12,600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규모	종사자 14명		
사업목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상담 서비스 질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600	8,200	7,800		0	400	-1,400	
국비		0					0	
도비	9,600	8,200	7,800			400	-1,4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 경정(50,000원*12명*2월+50,000원*14명*10월)-기정(50,000원*13명*12월) =	4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12. : 매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3명 지원
2024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2명 지원
2025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4명 지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600	7,200	-	2,400	
2024	9,600	7,700	-	1,900	
2025	7,800	5,400	-	2,4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8급 황수현	전화	2989
-----	--------	-----------	-----	----------	----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개소(릭스쿨 등)		
사업목적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8,424	130,456	127,890	0	0	2,566	-27,968	
국비		0					0	
도비	47,527	36,586	38,367			-1,781	-10,941	
시비	110,897	93,870	89,523			4,347	-17,02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 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66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릭스쿨 · 초등 : 경정(5,290원*16명*101일)-기정(4,961원*20명*184일) = -9,708 · 중등 : 경정(6,750원*8명*101일)-기정(6,408원*6명*184일) = -1,620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 · 초등 : 경정(5,290원*10명*185일)-기정(4,961원*10명*185일) = 609 · 중등 : 경정(6,750원*10명*185일)-기정(6,408원*10명*185일) = 633 · 고등 : 경정(7,200원*9명*185일)-기정(6,972원*9명*185일) = 380 하나로스쿨 · 초등 : 경정(5,290원*35명*190일)-기정(4,961원*35명*190일) = 2,188 · 중등 : 경정(6,750원*15명*185일)-기정(6,408원*15명*190일) = 468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 초등 : 경정(5,290원*10명*185일)-기정(4,961원*10명*185일) = 609 · 중등 : 경정(6,750원*8명*185일)-기정(6,408원*8명*185일) = 506		
		◎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릭스쿨 · 초등 : 5,290원*20명*83일*70% = 6,147 · 중등 : 6,750원*6명*83일*70% = 2,354		

□ 예산요구 사유

- 대안 교육기관 4개소에 대하여 2025년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를 적용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며, 본 예산 편성 시 적용된 평균 단가와 실제 지원 단가 간 차이로 인한 부족분 반영
- 2025학년도 하반기 등록 대안교육기관 1개소(릭스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30% 직접 교부에 따라 부기명 분리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5년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반영에 따른 예산 증가(초등 5,290원, 중등 6,750원, 고등 7,200원)
- 25년 하반기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릭스쿨) 급식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직접지원에 따라 시비 70%만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 : 2025년 1분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신청 및 지원
 - 2025.03. ~ 2025.05. : 1, 2분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집행
 - 2025.08. : 2025년 3분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신청 및 지원
 - 2025.09. ~ 2026.02.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집행
 - 2026.02. : 2026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안교육기관 4개소 104명 지원
2024	○ 대안교육기관 4개소 121명 지원
2025	○ 대안교육기관 4개소 126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7,017	95,050	-	11,967	
2024	158,424	121,252	-	37,172	
2025	127,890	69,678	-	58,21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8급 황수현	전화	2989
-----	--------	-----------	-----	----------	----	------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기간	2020. ~ 2027.	사업위치	장기동 1888-9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2개동 / 연면적 9,181.63㎡		
사업목적	신도시 권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000	0	0	0	2,000,000	2,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00				2,000,000	2,0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0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	401-01 시설비	· 공사비	= 1,500,0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445,000	
	401-03 시설부대비	· 조달수수료	= 55,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청소년 인구의 48%가 거주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는 신도시 지역에 청소년수련 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24.9.12.)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 필요
-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5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조건부추진	-	-	-	-	적정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2021.10.	-	-	-	-	2018.0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1. :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0.02. ~ 2020.08.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0.08. ~ 2021.08. : 리맥 타당성조사 의뢰 및 심사
 - 2021.05. ~ 2021.10. :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
 - 2021.12. : 부지매입
 - 2022.03. ~ 2022.04. : 김포시 건축기획 심의 및 계약심사
 - 2022.05. ~ 2022.08. : 조달청 설계 공모
 - 2022.09. ~ 2024.0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5.11. ~ 2025.12. : 조달청 계약의뢰, 시공사 및 감리단 선정
 - 2026. ~ 2028.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74,774,000	32,774,000	2,000,000	0	0	0	2,000,000	40,000,000
공 정 별	설계비	1,256,000	1,256,000	0					
	보상비	31,159,000	31,159,000	0					
	공사비	38,369,000		1,500,000				1,500,000	36,869,000
	감리비	3,862,000	300,000	445,000				445,000	3,117,000
	부대비	128,000	59,000	55,000				55,000	14,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연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속 추진 ·2023.08. ~ 11. :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예산 420억 신청(미선정)
2024	·2024.06. ~ : 특별교부세 및 국비 재정지원 신청, 2025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수요 신청 등 ·2024.0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25	·2025. 1 :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20억) 및 특별조정교부금(20억) 신청 ·2025. 7 : 2026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예산 신청 (30억) ·2025. 8 :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5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1,098	21,219	619,879	-	
2024	619,879	418,906	-	200,973	집행잔액 반납완료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육청소년과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735.33㎡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위치	장기동 1888-9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김은정	담당자	행정7급 박효성	전화	2596
-----	--------	-----------	-----	----------	----	------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문화예술과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5. 10. ~ 2026. 5.	사업위치	김포국제조각공원(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사업규모	전기선로, 경관조명, 분전반, 아트홀 외관 도색 등		
사업목적	조각공원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400,000	0	0	0	400,000	4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특조금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 전기선로, 분전반 설치 : 50,000,000원*1식 =	50,000	
		· 야간 경관 조명 설치 : 130,000,000원*1식 =	130,000	
		· 아트홀 외관 기능보수 및 도색 : 170,000,000원*1식 =	170,000	
		· 아트홀 및 작품 주변 통로 바닥 개선 : 50,000,000원*1식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국제조각공원 전기선로 확충 및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
- 김포국제조각공원 아트홀 외벽 도색을 통한 부식 방지 및 기능 보수를 통한 관람 환경 개선
- 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 김포국제조각공원 방문객 증가 및 시 브랜드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김포국제공원 관람환경 개선 배분 결정 통보[경기도 예산담당관 -14482(2025. 8. 4.)]에 따른 사업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 2025. 10. : 용역 입찰 공고
 - 2025. 11. : 업체선정 및 공사착공
 - 2026. 5.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문화예술과	사업규모	전기선로, 야간조명, 분전반, 아트홀 도색 등	3회추경 요구액 (천원)	4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람환경 개선	사업위치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이풍주	담당자	행정7급 허태구	전화	2364
-----	-------	----------	-----	----------	----	------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5개소		
사업목적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 역할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86,255	306,700	298,096	0	0	8,604	20,445	
국비		0					0	
도비	85,875	91,770	89,429			2,341	5,895	
시비	200,380	214,930	208,667			6,263	14,5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604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박물관·미술관 신규 등록 자문수당 : 200,000원*2인*2회 =	800	시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문인력(도슨트) 인건비 - 경정(1,800,000원*4개소*10월) - 기정(1,800,000원*4개소*8.9월) =	7,804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비 및 전문인력(학예사, 도슨트) 인건비 지원
- 박물관 및 미술관 4개소(김포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보름산미술관, CICA미술관) 도슨트 인건비 지원
- 박물관·미술관 등록 사무 이양에 따라 신규 박물관·미술관 등록 절차(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문위원 수당 신규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최종 심사 결과 및 도슨트 지원 확정금액이 반영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경기도 문화정책과-4011(2025.3.2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2025년도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2025. 3. :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문인력(학예사, 도슨트) 인건비 교부
 - 2025. 3. ~ 12. : 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 2025. 7. ~ 9. : 사업 현장평가 실시
 - 2025.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등록 박물관 3개소 및 미술관 2개소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문인력(학예사, 도슨트) 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김포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외할머니의부엌, 보름산미술관, CICA미술관
2024	- 관내 등록 박물관 3개소 및 미술관 2개소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문인력(학예사, 도슨트) 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김포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외할머니의부엌, 보름산미술관, CICA미술관
2025	- 관내 등록 박물관 3개소 및 미술관 2개소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문인력(학예사, 도슨트) 인건비 지원 * 대상시설: 김포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외할머니의부엌, 보름산미술관, CICA미술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0,057	330,057	-	-	
2024	286,255	286,255	-	-	
2025	298,096	298,096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이풍주	담당자	행정7급 허태구	전화	2364
-----	-------	----------	-----	----------	----	------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기간		2025. 10.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돌문로 26
사업규모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뮤지컬 <애기봉> 6회 공연		
사업목적		시 대표 문화콘텐츠 공연을 통한 시민 공연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김포시 대내외 홍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0,000	250,000	0	0	0	250,000	-250,000	
국비	250,000	0					-250,000	
도비		0					0	
시비	250,000	250,000				25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전문가활용비 - 전문인력(예술감독, 연출 등) : 2,390,470원*21명 ≡ 50,200 - 아티스트(배우, 작가, 작곡가, 예술감독 등) : 5,933,330원*15명 ≡ 89,000 · 홍보비 - 홍보물 제작 : 22,000,000원*1식 = 22,000 · 임차비(음향·조명·연습실) : 34,100,000원*1식 = 34,100 · 제작비(무대·의상·MR등) : 31,700,000원*1식 = 31,700 · 공공운영비(보험, 운영비 등) : 23,000,000원*1식 = 23,000		

☐ 예산요구 사유

- 초연의 성공적 성과로 인한 김포시민 및 타 지역 관객의 재공연 요구 급증
- 김포 고음 설화 기반 뮤지컬의 장기 레퍼토리화 가능성 확인 및 문화생태계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기존 공연단체 및 출연진 유지
- 무대·의상·소품 재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23. : 개최방안 검토보고
 - 2025. 9. 25. : 종합계획 수립(시·재단·공연배달서비스 간다 3자 회의)
 - 2025. 10. ~ 11. : 시나리오·안무·음원 편곡, 출연배우 섭외 등
 - 2025. 12. : 공연(6회)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공연 6회 및 부대행사 3회(사전공연 갈라쇼, 언론인 시사회, 관객과의 대화) · 2,272명 관람(1회 평균 379명), 마지막 공연 2회차 전석 매진 · 만족도 94.6점/100점(응답자 355명)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00,000	500,000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예술팀장 임미란	담당자	행정7급 노정주	전화	2318
-----	-------	----------	-----	----------	----	------

문화유산 상시 보수·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문화유산 38개소 상시 보수 및 관리		
사업목적	문화유산의 상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2조(경비부담) 제1항, 제2항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0,000	60,000	37,500	0	0	22,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0	60,000	37,500			22,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500	
문화유산 상시 보수·관리	401-01 시설비	· 보수공사 : 경정(7,500,000원*8회) - 기정(7,500,000원*5회)	= 22,500	

□ 예산요구 사유

- 문화유산 상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유산 노후로 긴급보수 상황 발생시 신속 처리

□ 예산증감 사유

- 문화유산 상시 점검을 통해 확인된 긴급 보수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5회->8회)
 - 문수산성 문화유산 구역 안내판 정기보수, 남문 깃대 지반침하 보수
 - 덕포진 탐방로 안내판 수정 설치, 덕포진 돈대터 정비사업
 - 통진향교 계단 보수, 전류정 홍살문 보수, 대포서원 입구 기둥 방부방염처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하반기 보수 대상지 선정
 - 2025. 9. ~ 12. : 보수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문수산성, 덕포진 문화재 안내판 설치(2023.03.~2023.05.) - 통진향교 명륜당 전기보완공사(2023.03.) - 김포향교, 우서저원 화장실보수(2023.05.) - 십강신도비 보호각 보수(2023.05.) - 국가유산 문수산성 복문, 덕포진 지적측량(2023.10.)
2024	- 덕포진 종합안내판 이동조치(2023.12~2024.9.) - 천연기념물 조류 보호시설 보수공사 완료(2023.12~2024.2.) - 덕포진 파수청 전기공사 완료(2024.4~2024.5.) - 2024년 덕포진 전시관 보수공사 집행 완료(2024.5~2024.6.) - 2024년 전류정 여흥민씨 충절유적 지붕보수 공사 완료(2024.7~2024.10)
2025	- 심응사당 담장 보수공사 (2025.2~2025.3.) - 전기 안전점검에 따른 한재당 전기 분전함 보수공사(2025.3) - 대포서원 화장실 보수공사(2025.5) - 통진향교, 양성지 신도비 등 주변 정비공사(2025.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572	56,506	8,056	10	
2024	68,056	67,892	-	164	
2025	37,500	23,015	-	14,48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탁여진	담당자	시설8급 조진희	전화	2483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관광진흥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평화공원로 289	
사업규모		애기봉평화생태공원 1개소					
사업목적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 관람객 만족도 제고 및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 기반 마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50,000	2,201,835	1,677,900	266,264	175,500	82,171	751,83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50,000	2,201,835	1,677,900	266,264	175,500	82,171	751,83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2,171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비]		
		. 배수로 정비공사 (고압세척)	= 3,520	
		. 냉난방기 보수 (전열교환기 전열소자 교체)	= 5,000	
		. BI 교체에 따른 사인물 보수	= 21,000	
		[일반운영비] . 셔틀버스 임차비 추가(운영방식 변경)	= 36,121	
		[재료비] . 조경 관리용 공기구 구입 (엔진블로워, 엔진톱)	= 1,000	
		[위탁관리비] 매표소 종합관리동 신축에 따른 용역인력 충원	= 15,530	

□ 예산요구 사유

[배수로 정비공사]

-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시설물 침수피해 우려
- 기존 배수 체계로는 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도로 노면으로 우수가 범람하여 차량 운행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배수를 위한 보수공사 필요

[냉난방기 보수]

- 전열교환기 전열소자 및 필터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실내 공기질 개선과 냉난방기 효율 증대를 위해 전열소자를 교체하고 에너지 절약 및 설비 내구도 개선

[BI 교체에 따른 안내 사인물 등 보수]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BI 교체에 따라 기존 안내판과 사인물 일부 교체 및 보수

[셔틀버스 임차 운영비]

- 셔틀 버스 1회당 수송 인원과 평일-주말 간 방문객 수 편차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방식 재검토**
 - 당초 : 운행 인력 별도 고용 및 소형차량(25인승) 2대 장기임차 - 평일 1대 운행으로 운영효율 저하
 - 변경 : 운행 인력 포함 대형(45인승) 차량임차(평일1대, 주말2대) - 1회 수송인원 증가 및 운영 효율 증가

[조경 관리용 공기구 구입]

- 공원 일원의 수목류 조경 관리를 위한 엔진톱, 엔진블로워 공기구 구입

[매표소 종합관리동 신축에 따른 용역 인력 충원]

- 매표소 종합관리동 신축(2025년 10월 준공 예정)에 따라 필요 인력 충원

□ 예산증감 사유

-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다양한 시설물과 장비류의 설치후 5년 이상 경과에 따라 내·외부 도색 및 설비 부품 교체 등 적정 시기 유지관리를 통해 내용 연수 연장 및 쾌적한 환경 유지
- 매표소 종합관리동 신축에 따른 용역 인력 충원 및 조경관리를 위한 공기구 구입
-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광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관광콘텐츠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적정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2024.11. 반영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10. : 사업 운영 세부계획 수립, 셔틀버스 임차 및 용역인력 충원 절차 진행
 - 2025.11.~12. : 배수로 정비 및 냉난방기 보수, 사인물 보수, 공기구 구입 등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 3. ~ 6. : 기업연계 조각전시(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청춘 시그널3040MHz’展) 2023. 4. ~ 10. : ‘조강풍류’ 문화행사(문화예술공연, 어린이날 캐리커처 이벤트 등) 2023. 7. 24.~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연중무휴 개시 2023.10.28.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야간개장 ※ 2023년 방문객 : 131,386명
2024	2024. 1. : 1일 방문객 입장 허용 인원 확대(1,000명 → 2,000명) 2024. 2. : 정월대보름‘애기봉 달빛 라이트쇼’ 개최 2024. 6. : 태평양 해병대 지휘관심포지엄(PALS 행사 개최) 2024. 7. : 경기 ‘유니크 베뉴’ (지역 이색 회의명소)선정 2024. 7. : 국립극장과 업무 협약을 통한 ‘별별실감극장’ 미래관 상영 2024. 9. :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창고 개방’ 개최 2024. 12. :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 ‘겨울밤 낭만주의보’ 개최 ※ 2024년 방문객(12.31.기준) : 190,234명
2025	2025. 1. : 기획전시 - 반고흐 레플리카전 2025. 2. : 정월대보름 기념 행사(방문객 2,518명) 2025. 2. : 매표창구 증설(2개소→3개소) 2025. 2. : 누적방문객 50만 돌파 2025. 1.~6. :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특별문화행사(총6회) 2025. 5. : 기획전시 - 철위에 핀 조선의 숨결 ※ 2025년 방문객(8.22.기준) : 258,89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16,815	1,416,815	-	-	
2024	1,450,000	1,376,493	-	73,507	
2025	2,119,664	1,944,164	-	175,5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장 허효정	담당자	행정7급 나가은	전화	5102
-----	-------	------------	-----	----------	----	------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성립전)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음식점 및 카페, 체험시설		
사업목적	경기 북부지역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도 50%, 시 50%)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3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호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9.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0,000	0	0	0	100,000	100,000	
국비		0					0	
도비		50,000				50,000	50,000	
시비		50,00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미식축제 개최(성립전) = 50,000,000원 · 미식투어 개발 및 운영 = 50,000,000원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 북부지역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
[경기도 관광산업과-6775(2025.5.12.)호]

□ 예산증감 사유

- 김포함상공원의 노을을 배경으로 로컬푸드 미식체험과 더불어 대명항 제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통합형 미식축제 개최
- 김포의 풍부한 로컬푸드 및 미식체험 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식투어 코스 개발 및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2025년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 2025. 05.: 도비 보조금 교부
 - 2025. 06.~07.: 성립전 예산 편성(도비 50,000천원) 및 계약 추진
 - 2025. 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시비 50,000천원 요구
 - 2025. 10.: 미식축제 개최 및 미식투어 운영
 - 2025. 11.: 사업완료 및 정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관광진흥과	사업규모	김포 미식축제 개최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성립전)	사업위치	김포함상공원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장 허효정	담당자	행정8급 장민호	전화	5105
-----	-------	------------	-----	----------	----	------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25. 10.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목적	김포시 주요 관광지 특성을 반영한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7조의7 제6호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조례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호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	60,000	30,000	0	0	3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	60,000	30,000			30,000	2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관광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관광홍보물 제작 : 10,000,000원*3종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주요 관광지(애기봉평화생태공원, 함상공원 등) 방문객 증가와 각종 축제·행사 개최 시 참여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관광홍보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 단순 홍보용 기념품 외에 판매용 상품의 다양화와 한정판 등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 필요성 증대
- 각종 지역연계관광상품, 국내외 교류행사, 하반기 축제 등에 활용할 보상품 및 기념품 확보를 통해 방문객 체험가치 향상 및 김포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관광객 및 축제·행사 방문객 증가, 김포시 기념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다양한 홍보이벤트 개최 등에 따라 관광홍보물에 대한 수요 증가
- 단일·소량 제작 위주의 기존 홍보물 체계에서 벗어나, 판매용 라인업 확대, 한정판 제작, 이벤트 보상품 준비 등을 통해 관광홍보물 기능 다변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2025. 06.: 관광홍보물 제작(6종)
 - 2025. 10. ~ 2025. 12.: 관광홍보물 추가 제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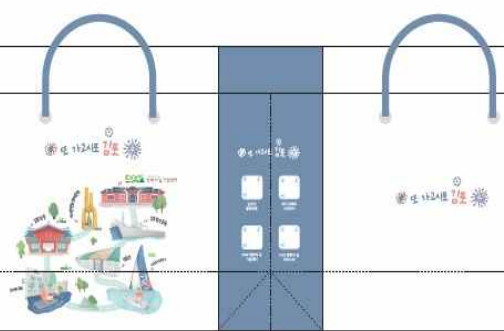
2023	- 관광홍보물품 제작[관광안내지도, 키링, 철책철거기념품(무드등,그립톡)]
2024	- 관광홍보물품 제작(관광안내지도, 변색 소주잔, 지비츠, 돛자리, 우산, 쇼핑백)
2025	- 관광홍보물품 제작(관광홍보 가이드북, 담요, 화투, 마그넷, 명함지갑, 쇼핑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19,945	-	54	
2024	40,000	39,895	-	104	
2025	30,000	26,410	-	3,590	8.22.기준 집행현황

○ 2025년 제작 관광홍보물 현황

제작 물품명	화투	마그넷(6종)	관광홍보 가이드북
사진			
제작 수량	500개	1,100개	1,000부
활용처	축제 및 이벤트 활용	주요 행사 활용 및 판매	관공서 및 관광객 배부

제작 물품명	명함지갑	쇼핑백
사진		
제작 수량	120개	1,000개
활용처	주요 행사 활용 및 판매	기념품 제공시 활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관광진흥과	관광사업팀장 부광영	담당자	행정9급 이성연	전화	5110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기금)(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1. ~ 2025. 12. 31.	사업위치	종합운동장, 노을체육관, 서암생활체육공원
사업규모	4개팀(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 운영		
사업목적	전문체육 우수도시로서의 시 위상 제고 및 지역 체육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40,000	0	0	0	140,000	140,000	
국비		140,000				140,000	140,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0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기금)	301-12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 육상선수단 육성(성립전) ○ 운영비 - 피복비 250,000원*7명*6벌 = 23,720 - 훈련용 보충제 1,944,000원*5종 = 10,500 - 육상화 250,000원*7명*2족 = 9,720 = 3,500		
		◎ 태권도선수단 육성(성립전) ○ 운영비 - 피복비 350,000원*9명*5벌 = 17,750 - 훈련용품 구입 100,000원*20개 = 15,750 = 2,000		
		◎ 테니스선수단 육성(성립전) ○ 운영비 - 피복비 250,000원*6명*4벌 = 29,000 - 훈련용품 구입 4,674,500원*4종 = 6,000 - 테니스화 구입 239,000원*6명*3족 = 18,698 = 4,302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육상선수단 물품구입(성립전) ○ 무동력 트레드밀 구입 2,480,000원*2대 = 6,280 ○ 스타트 블록 구입 330,000원*4대 = 4,960 = 1,320		
		◎ 태권도선수단 물품구입(성립전) ○ 스텝밀 구입 3,700,000원*1대 = 22,250 ○ 크로스핏 원판 구입 110,000원*5개 = 3,700 ○ 사이클 구입 1,800,000원*1대 = 550 ○ 전자호구 구입 2,025,000원*8개 = 1,800 = 16,200		
		◎ 테니스선수단 물품구입(성립전) ○ 테니스 스트링기 구입 11,000,000원*1대 = 11,000 = 11,000		
		◎ 복싱선수단 물품구입(성립전) ○ 멀티 스미스 랙 구입 3,650,000원*2대 = 30,000 ○ 사이클 구입 2,000,000원*2대 = 7,300 ○ 로버스트 탄력바 바벨 구입 260,000원*8개 = 4,000 ○ 바벨 원판 구입 90,000원*18개 = 2,080 ○ 복싱링 구입 15,000,000원*1개 = 1,620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4개 종목(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 편성
※ 2025. 8월 총 사업비 140,000천원 중 100,000천원 성립전 예산 편성(2025. 7월 1차 교부액 100,000천원)

□ 예산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기금 교부
 - 2025. 7. ~ 12. : 사업 추진
 - 2026. 2. :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정책팀장 권두택	담당자	행정8급 이수현	전화	2587
-----	-----	------------	-----	----------	----	------

체육회 육성지원(기금)

사업기간	2025. 9.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체육회 사무국장 1명		
사업목적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통한 상근직 근무체계 확립 및 업무책임성을 높여 사무국 안정과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해당조례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2,000	0	0	0	12,000	12,000	
국비		12,000				12,000	12,000	
도비		0				0	0	
시비		0				0	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체육회 육성지원 (기금)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 1,000,000원*12월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 관련,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체육회 공공성 및 행정력을 강화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기금 교부
 - 2025. 9. ~ 12. : 사업비 교부(시→김포시체육회) 및 집행
 - 2025.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지영배	담당자	행정8급 나대준	전화	2598
-----	-----	------------	-----	----------	----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기간	2025. 8.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877명		
사업목적	어르신 대상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지역·민생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43,862	0	0	0	243,862	243,862	
국비		170,704				170,704	170,704	
도비		36,579				36,579	36,579	
시비		36,579				36,579	36,579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3,862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금 50,000원*4,877명(최대 수혜가능인원) =	243,862	

□ 예산요구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관련,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스포츠 상품권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 건강 증진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8. ~ 12.
 - 지원대상 :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 5만원 ※ 1회당 5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3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스포츠시설 이용 가능 상품권(제로페이 가맹시설)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 교부신청 안내(문화체육관광부→시)
 - 2025. 9. : 국·도비 보조금 교부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 2025. 10. : 신청자 모집, 사업비 집행(스포츠상품권 대금 선납) 및 사업 운영
 - 2025.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지영배	담당자	행정8급 나대준	전화	2598
-----	-----	------------	-----	----------	----	------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1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288
사업규모	연면적 4,088.26㎡,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지하1층/지상3층)		
사업목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김포골드벨트 산업단지 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근로자 건강증진 및 공공체육 활성화 기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레)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350,000	0	0	0	1,350,000	1,3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50,000				1,350,000	1,3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000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 체육관 건립(연면적 3,916.85㎡, 지하1층/지상3층) - 지하:수영장, 샤워실/ 지상1층:로비, 카페 등/ 지상2층: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지상3층: 사무실,전기실 등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시설 설치 등)	= 1,350,000	

□ 예산요구 사유

-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학운·대포리) 내 체육시설을 확충(연면적 4,088.26㎡, 지상3층 지하1층, 수영장, 다목적체육관)하여 근로자들의 워라벨과 정주의식 고취 및 시민 만족감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1,350,000천원 예산 반영
※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8674(2024.12.1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반영	-	-	-
일자	2024.11.	2020.03.(도) 2022.08.(도)					2020.03. 2022.0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3.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이행
 - 2020. 0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1. 0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0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5. 09.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15,350,000	5,700,000	1,350,000	0	0	0	1,350,000	8,300,000
공 정 별	설계비	532,000	532,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13,778,000	4,428,000	1,350,000			1,350,000	8,000,000
	감리비	1,000,000	700,000	0				300,000
	부대비	40,000	4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20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27,000	165,000	5,062,000	-	
2024	5,062,000	-	5,062,000	-	
2025	5,062,000	-	-	5,062,000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등) (연면적 4,088.26㎡, 지하1층/지상3층)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3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위치	양촌읍 학운리 4288 (김포골드벨리체육공원 내)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김영수	전화	2193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2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8급 박준홍	전화	5062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기간	2024.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마산동642-13, 장기동1888-12
사업규모	파크골프장 18홀 및 주차장 조성, 유아숲 이설등		
사업목적	관내 부족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을 통해 쾌적한 야외체육공간 제공과 시설확충 요구에 부응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20,000	4,070,000	1,500,000	0	1,660,000	910,000	2,550,000	
국비		0					0	
도비	450,000	0					-450,000	
시비	1,070,000	4,070,000	1,500,000		1,660,000	910,000	3,000,000	특조금 : 9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10,000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조정·기계 : 경정(4,300,000,000원) - 기정(3,800,000,000원) = 500,000 · 전기 : 경정(600,000,000원) - 기정(340,000,000원) = 260,000 · 통신 : 경정(400,000,000원) - 기정(260,000,000원) = 140,000		특조금
	405-01 자산취득비	· 파크골프장 가구, 비품등 물품 구입비 - 컴퓨터: 1,000,000원 - 의 자: 400,000원*8개 = 3,200,000원 - 락 커: 500,000원*8개 = 4,000,000원 - 캐비닛: 200,000원*4개 = 800,000원 - 파티션 외 물품비 등 = 1,0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잔여 사업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추가·누락 공사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야간개장을 위한 전기, 통신 추가공사 반영(관급자재 포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5.1 (도)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5. : 파크골프장 확충 추진계획 수립
 - 2024.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8.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이행
 - 2024. 10. : 공원조성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 2024. 11.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5. 3.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5,590,000	1,520,000	4,070,000	1,500,000	0	1,660,000	910,000	0
공 정 별	설계비	103,708	103,708	0					
	보상비	0		0					
	공사비	5,446,292	1,386,292	4,060,000	1,500,000		1,660,000	900,000	
	감리비	20,000	20,000	0					
	부대비	10,000	10,000						
	자산취득비	10,000		10,000				1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부지선정 중간보고회
2024	- 실시설계(토목·기계, 전기, 통신) - 2024년 체육진흥시설 추가 공모 사업선정(450백만원 교부)
2025	- 공사 착공 및 관급자재 발주 - 조경, 기계 설계변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520,000	103,708	1,416,292	-	
2025	4,576,291	3,138,905	-	1,437,386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파크골프장(18홀) 및 주차장 조성		3회추경 요구액 (천원)	910,000
부기명 (세부사업)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위치	마산동 642-13(솔터체육공원내) 장기동 1888-12			
위치도						

실내테니스장 냉난방기 설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마산동 642-1(실내테니스장)
사업규모	실내테니스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사업목적	냉난방기 설치를 통한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협의(체육과, 공공건축과, 테니스협회)
 - 2024. 12. : 실내테니스장 준공
 - 2025. 1. ~ 6. : 실내테니스장 시범운영
 - 2025. 9. : 전원공급 전기공사 및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2025. 10. :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냉난방기 설치	3회추경 요구액 (천원)	-48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실내테니스장 냉난방기 설치	사업위치	마산동 642-1 실내테니스장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방현욱	전화	2589
-----	-----	------------	-----	----------	----	------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성립전)

사업기간	2025. 8. 1. ~ 2025. 12. 31.	사업위치	하성면 양택리 397번지 외 5개소
사업규모	게이트볼장 6개소 냉난방기 설치		
사업목적	냉난방기 설치를 통한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00,000	0	0	0	300,000	3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				300,000	300,000	특조금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401-01 시설비	· 냉난방기 설치공사 : 7,666,000원*30대 = 230,000,000원 · 전기공사 : 70,000,000원	= 230,000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자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전기공사 및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300,000	0	300,000	0	0	0	3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0		0					
	공사비	300,000		300,000				300,000	
	감리비	0		0					
	자산취득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구 수요조사
2025	-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체육과	사업규모	냉난방기 설치	3회추경 요구액 (천원)	3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게이트볼장 실내개선	사업위치	양택리 397번지 외 5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대곶 게이트볼장 석모리 게이트볼장 청송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우1·3통 게이트볼장 양택리 게이트볼장 시암리 게이트볼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방현욱	전화	2589
-----	-----	------------	-----	----------	----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업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장실 관리, 공공요금 납부, 책자관리 및 물품 구입		
사업목적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5,704	133,975	115,945	0	4,530	13,500	48,27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5,704	133,975	115,945		4,530	13,500	48,27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0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공과금(전기,상하수도) 납부: 225,000원*10개소*6개월 =	13,50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체육시설 공과금(전기,상하수도) 납부에 따른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공공체육시설 건립(김포반다비체육센터, 솔터실내테니스장, 학운5야구장) 위탁 운영사 선정 시까지 필요한 공과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부족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변환경 관리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화장실 및 시설 소규모 공사 - 청소도구 및 건설공사 관련 책자 구입 - 공공체육시설 10개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2024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구래다목적구장 화장실 및 주변환경 관리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구래다목적구장 화장실 물품구매 - 건설공사 관련 책자 구입 - 공공체육시설 10개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2025	- 공공체육시설 16개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납부 - 전호야구장, 청송게이트볼장, 학운체육공원, 구래다목적구장 화장실 물품구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4,449	90,509	-	33,940	
2024	85,704	76,393	-	9,311	
2025	120,475	116,524	-	3,95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김기천	전화	2585
-----	-----	------------	-----	----------	----	------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업규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목적	공공체육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방지 및 생활체육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18조	
	해당조례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0,000	370,000	300,000	0	0	70,000	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	370,000	300,000			70,000	7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공공체육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예산 · 긴급공사 및 하자 보수 · 울생리 족구장 시설 보수공사 등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52개소) 긴급공사 및 보수공사 추진

2024		2025(8.22. 기준)	
유지보수 및 긴급공사	경비 및 용역비	유지보수 및 긴급공사	경비 및 용역비
33	5	23	4

□ 예산증감 사유

○ 노후화 시설 개선공사 및 예측 불가한 긴급공사를 위한 정비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0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공체육시설 정비	○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 2022년 12월 노무비 지급 ○ 파르코스 테니스장 조명시설 램프 및 안정기 교체 공사 ○ 파르코스 테니스장 등기구 교체공사(추가) 집행 ○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 학운체육공원 펜스 교체 및 벤치 수리 집행 ○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 이월품의 ○ 서암생활체육공원 풋살장 그물망헨스 철거 및 이설공사 관급자재(금속울타리) ○ 오니산리 체육시설 개선공사 이월품의 (공사) ○ 청송게이트볼장 화장실 누수공사 ○ 하성면 게이트볼장분회 전기증설에 따른 전기 시설 부담금 납부 ○ 솔터다목적체육관 상수도 계량기 구축 고지서 납부 ○ 양택리 게이트볼장 전기증설공사 ○ 시암리게이트볼장 LED 교체공사 ○ 관내공공체육시설 이동식 화장실 관급자재 구매 ○ 양촌파크골프장 펜스 구매 ○ 관내 테니스장 등기구 교체공사 ○ 청송게이트볼장 및 전호야구장 화장실 긴급공사 ○ 전호배드민턴장 전기조명시설 개선공사 ○ 관내 공공체육시설 휴게용 컨테이너 관급자재 물품구매 ○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보수공사 ○ 대곶면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공사 ○ 태산정 전기사용 신청에 따른 전기시설 부담금 납부 ○ 풍무현대프라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 서암생활체육공원 배수로정비공사 ○ 양촌파크골프장 써브엣지 설치 ○ 고촌체육공원 수목제거 및 예초공사 ○ 관내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보수공사 (청송게이트볼장, 전호야구장)
2024	공공체육시설 정비	○ 구래다목적구장 측면 개폐공사 ○ 신곡체육시설 족구장 지주대 교체공사 ○ 금성초등학교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공사 ○ 그라운드골프장 모래포설공사 ○ 청송게이트볼장 지붕 물받이 및 우수배관 방수 공사 ○ 양곡테니스장 지주대 보강공사 ○ 운양게이트볼장 막구조물 바람막이 설치공사 ○ 금릉정 기와지붕 보수공사 ○ 전호배드민턴장 주차장 쇄석 포설 및 배수로 보수공사 ○ 김포시게이트볼장 바람막 교체 공사 ○ 양곡게이트볼장 BF인증 개선공사 ○ 솔터 체육공원 내 보도블럭 보수공사 ○ 시민회관 주차장 정산소 앞 보도 신설공사 ○ 풍무체육문화센터 임시주차장 진입도로 교통시설물 개선공사 ○ 신곡체육시설 족구장 모래 및 주차장 쇄석 포설공사 ○ 전호배드민턴장 시설 개선공사 ○ 하성초등학교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공사 ○ 구래다목적구장 펜스 네트 연장 공사 ○ 금릉정 석재계단 및 바닥 보수공사 ○ 양곡테니스장 라이트 지주 보강공사 ○ 고촌 파르코스 테니스장 옥외용 조명 타이머 설치공사

2025	공공체육시설 정비	- 솔터다목적체육관 천장 환풍기 개폐공사 - 공공체육시설 7개소 화장실 절수기기 설치공사 - 대곶문화복지센터(수영장, 헬스장)실내인테리어 공사 - 김포반다비체육센터 통신공사 - 청송게이트볼장 외 1개소 보수공사 - 대곶문화복지센터(수영장, 헬스장) 통신공사 - 김포반다비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자 집행 - 걸포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 - 김포시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교체공사 - 김포반다비체육센터 내부 환경개선 공사 - 시암리게이트볼장 창호 설치공사 - 금능정 시설 보수공사 - 구래다목적구장 환경개선 공사 - 주차관리시스템 전기공사[김포반다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 솔터다목적체육관 개폐장치 전기공사 - 전호야구장 통행로 정비공사 - 김포반다비체육센터 필라테스룸 소방공사 - 학운5야구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김포반다비체육센터 시설 보완 공사 - 김포종합운동장 시설 보수공사 - 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 축구장 흰스개선 공사 - 대곶게이트볼장 방충망 보수공사 - 김포반다비체육센터 차선 정비공사
------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31,633	797,500	-	34,133	
2024	300,000	267,752	-	32,248	
2025	559,905	515,534	-	44,37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김영수	전화	2193
-----	-----	------------	-----	----------	----	------

□ 예산요구 사유

- 노후된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 증대
- 전년 대비 동절기 평균 기온 하락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동력비(도시가스) 요금 증가
- 운영기간 축소(야외 테니스장 기상 여건, 체육관 도색작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연 등)에 따른 강사료 감액
- 겨울철 야외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제설차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시설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17,263천원 증액
 - 사우문화체육광장 바닥 화강석 보수, 풍무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 양곡문화체육센터 동력비(도시가스) 30,000천원 증액
- 종합운동장 및 양곡문화체육센터 비율제 강사비 125,339천원 감액
- 김포생활체육관 제설차 구입 비용 18,898천원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통진문화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마산·구래다목적 포함), 노을체육관,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2024	-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통진문화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마산·구래다목적, 양곡죽구장 포함), 노을체육관, 양곡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2025	-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통진문화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마산·구래다목적, 양곡죽구장 포함), 노을체육관, 양곡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29,116	4,633,866	-	195,250	
2024	6,450,564	5,924,618	-	525,946	
2025	6,973,200	6,973,2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행정7급 최정인	전화	258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서관과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2로 42(장기동)
사업규모	연중 프로그램, 본 행사 등 전국 최대 규모 도서관 축제 운영		
사업목적	7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김포의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기반 마련 및 '책의 도시 김포' 브랜딩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서관법	제32조 제2호
	위임규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해당조례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연령별·수준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00,000	1,000,000	0	0	0	1,000,000	
국비		300,000	300,000				300,000	
도비		0					0	
시비		700,000	700,000				7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대한민국 독서대전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 경정(37,400,000원*1식)-기정(35,000,000원*1식) = ·행사차출지급경비 : 경정(100,000원*75명*2일)-기정(100,000원*50명*2일) =	2,400 5,000	7,4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독서대전 자원봉사 실비 : 경정(10,000원*86명*3일)-기정(10,000원*333명*3일) =	-7,400	-7,400

□ 예산요구 사유

- 자원봉사자 실제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 내역을 재산정하여 감액하고, 본 행사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운영비 증액
- 본행사 규모 확대에 의한 공무원 추가 차출 필요 및 경비 지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자원봉사자 예상 모집 인원이 변경되어 세부사업 내 예산 조정
- 본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추가 제작 및 공무원 차출경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400천원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추진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4. 11.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2025.07. : 본 행사 기본계획 수립, 본 행사 주관 대행사 공모 및 선정
 - 2025.07. : 본 행사 세부 추진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2025.08. : 본 행사 사전교육, 안전교육 및 발대식
 - 2025.09. :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 행사 개최
 - 2025.10.~2025.11. : 본 행사 참여기관 사후 워크숍 개최
 - 2025.12. :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 결과보고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189종 운영, 199,075명 참여 (책의 도시 선포식, 새로고침 명사특강, 책 있는 저녁, 각종 도서관 연중 프로그램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00	212,943	-	787,05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독서대전TF팀장 황경애	담당자	사서8급 이경연	전화	4656
-----	------	--------------	-----	----------	----	------

고촌도서관 연장운영(자체)

사업기간	2025. 10.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사업규모	고촌도서관 1개관 기간제근로자 6명, 만화도서관 1개관 단시간 근로자 2명		
사업목적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 확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서관법	제32조 제6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호
		제4조(업무) 4.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080	17,355	13,080	0	0	4,275	4,27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080	17,355	13,080			4,275	4,2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75	
고촌도서관 연장운영(자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단시간 근로자 급여 : 11,400원*7시간*2명*26일 ·단시간 근로자 보험료 : 2,074,800원*2명*3%	= 4,150 = 125	4,275

□ 예산요구 사유

-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김포만화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운영시간 변경내용 : 화요일~토요일 10:00~18:00 → 화요일~일요일 10:00~21:00)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만화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
(주 2회, 14시간 근무자 2명 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김포만화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계획 수립
- 2025.09. : 김포만화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채용
- 2025.10.~2025.12. : 김포만화도서관 확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고촌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누적 이용자 21,213명 / 대출권수 8,943권
2024	- 고촌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누적 이용자 34,620명 / 대출권수 8,710권
2025	- 고촌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누적 이용자 19,538명 / 대출권수 4,533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04	12,654	-	550	
2024	13,080	12,300	-	780	
2025	13,080	5,460	-	7,62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고촌도서관팀장 이서현	담당자	사서7급 안해숙	전화	4843
-----	------	-------------	-----	----------	----	------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모담공원로 118(모담도서관) 외 7개소
사업규모	모담도서관 외 7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목적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서관법	제32조 제6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4조(업무)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86,286	1,397,170	1,277,170	30,000	0	90,000	-1,089,11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86,286	1,397,170	1,277,170	30,000		90,000	-1,089,11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 경정(40,040,000원*12월)-기정(32,540,000원*12월) =	9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서관 8개소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증액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모담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년 대비 관리면적 증가 및 냉방설비 조기 가동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
- 기존 도서관 면적 대비 관리면적 32% 증가(27,049㎡ → 35,73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관내 도서관 시설물 교체, 보수, 공공요금 납부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서관 7개소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2024	- 도서관 7개소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2025	- 도서관 8개소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전기, 기계, 토목, 건축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1,417	1,914,923	7,000	79,494	
2024	2,345,826	2,062,818	17,237	265,771	
2025	1,307,170	838,173	-	468,99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서관과	시설운영팀장 동학준	담당자	공업7급 신관우	전화	3931
-----	------	------------	-----	----------	----	------

복지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김포 복지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사업규모	김포복지재단 1개소		
사업목적	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45,042	1,290,162	1,256,382	0	85,728	-51,948	145,1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45,042	1,290,162	1,256,382		85,728	-51,948	145,12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948	
김포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경정(1,290,162,000원)-기정(1,342,110,000원)	= -51,948	

□ 예산요구 사유

-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 및 운영경비 재산출에 따른 예산 변경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인력 채용 시 호봉 차액에 따른 기본급 및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감액(32,120천원 감액)
- 운영경비 재산출(계약 금액 변경 등)에 따른 운영비 감액(19,828천원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11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66,106천원 모금액 : 823,062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190가구 - 지역사회 현안사업 101회, 긴급재해재단 사업 644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59가구, 가족기능강화사업 30가구 - 명절지원사업 184개소/ 1,610가구, 우리김포긴급지원사업 426가구, 정기결연지원사업 2,243가구, 미래세대성장사업 523가구 -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사업 28개소, 차량지원사업 4개소, 기관협력지원사업 36개소 - 사회복지인식개선사업 18회,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19회, 힐링지원사업 10회/431명, 사회복지시설지원 32회 -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 13회, 사례관리회의 8회, 시민모니터링 9회, 복지네트워크 사업 9회)
2024	- 제12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00,000천원 모금액 : 1,363,038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70가구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61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75건 (보훈취약계층 699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1,938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711건/134개소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2건, 차량지원사업 1개소 - 나눔교육사업 10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2회, 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17회 - 시민모니터링단 18회, 복지협력네트워크 12회, 업무협약 1회
2025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53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2건, 보훈취약계층지원 311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1,146건, 미래세대성장사업 52건, 명절지원사업 1,093건/116개소 -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10가구,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64건,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공모사업 11건 - 나눔교육 50건,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16건, 힐링지원사업 1건, 복지협력네트워크 5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1,700	1,161,242	-	160,458	
2024	1,145,042	945,558	-	199,484	
2025	1,342,110	726,427	-	615,68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19
-----	-------	------------	-----	----------	----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8.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임시주거시설 8개소		
사업목적	임시주거시설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를 통해 시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이용에 편의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해구호법	제4조의2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150	3,480	0	0	0	3,480	-1,670	
국비		0					0	
도비	5,150	3,480				3,480	-1,67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480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신규설치) 400,000원 * 4개소 = 1,600,000원 · (노후설치) 470,000원 * 4개소 = 1,880,000원 =	3,480	

□ 예산요구 사유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의 설치(교체)로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에 편의도모 (도비 100%)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지정된 임시주거시설(장기초등학교 등 4개소)과 노후화된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기존 임시주거시설의 안내표지판(운양고등학교 등 4개소)을 신규·교체 설치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6. : 안내표지판 점검 및 대상지 경기도 수요조사 제출
 - 2025. 07.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교부
 - 2025. 08. ~ 2025. 09. : 안내표지판 설치
 - 2025. 10 : 안내표지판 설치 결과 경기도 보고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11개소 및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3개소 설치
2024	·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5개소 및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7개소 설치
2025	·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4개소 및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4개소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700	7,700	-	-	
2024	5,150	5,150	-	-	
2025	3,480	3,480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규모	안내표지판 설치 8개소	3회추경 요구액 (천원)	3,480
부기명 (세부사업)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0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5조 제1항
		제8조(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의 운영경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44,806	1,676,268	1,714,539	0	0	-38,271	31,46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44,806	1,676,268	1,714,539			-38,271	31,46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271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 경정(1,406,409,000원)-기정(1,444,680,000원)	= -38,271	

□ 예산요구 사유

- 인력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 예산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 시 호봉 차액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 기본급의 호봉차이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9.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사례관리사업 - 사례개발, 사례개입,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실무자 모임 (진행횟수 252건 / 연인원 741명, 196천원 집행)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의 사랑, 에듀테크 멘토링, 옥상정원 가족텃밭, 생애주기별 가족지원, 취약계층학습지원, 식생활지원, 경제적지원, 결연후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정서지원, 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강사간담회, 문화복지, 미디어센터 조성 및 교육 운영, 인권교육사업, 김포 먹거리 복지 코너 등 (진행횟수 3,583건, 연인원 30,667명, 212,197천원 집행)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업무협약, 유관기관간담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연구사업, 찾아가는 심리상담, 이동복지사업 - 동네방네, 양육공감부모교육, 주민 간담회, 공(연), 색동아리, 마을종합지원사업, 마을우물터, 자원봉사개발 및 활동 관리, 후원개발 및 관리, 기관견학, 대외홍보, 홍보물제작, 주민편의제공(무인카페운영, 복지관 대관 등) (진행횟수 4,163건 / 연인원 83,854명, 60,600천원 집행) ○공모사업 - 꿈꾸는 아이들, 장기대안학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행복마중, 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 공동모금회, 느린학습지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역난방비지원, 민.관통합사례관리, 미션.비전 컨설팅 등 (진행횟수 1,805건, / 연인원 3,960명, 193,640천원 집행)
2024	○사례관리사업 - 사례개발, 사례개입,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실무자 모임 (진행횟수 261건 / 연인원 531명)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옥상정원 가족텃밭, 취약계층학습지원, 식생활지원, 경제적지원, 복어꿈, 지역사회보호사업, 고립가구 예방사업, 9월의 크리스마스, 교육문화사업, 미디어센터, 인권교육 (진행횟수 3,110건, 연인원 33,793명, 190,672천원 집행)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업무협약, 유관기관간담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연구사업, 동네방네, 양육공감부모교육, 색동아리, 마을종합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수원 관리 및 개발, 무인카페운영, 식당운영, 시설대관 등 (진행횟수 4,006건 / 연인원 86,502명, 94,818천원 집행) ○공모사업 - 꿈꾸는 아이들, 김포희망학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청소년중독예방사업 등 (진행횟수 1,667건, 연인원 4,458명, 271,832천원 집행)
2025	○사례관리사업 - 사례개발, 사례개입,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실무자 모임 (진행횟수 157건 / 연인원 309명)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옥상정원 가족텃밭, 취약계층학습지원, 식생활지원, 경제적지원, 복어꿈, 지역사회보호사업, 고립가구 예방사업, 정서지원, 교육문화사업, 미디어센터, 인권교육 (진행횟수 1,487건, 연인원 21,045명, 94,979천원 집행)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업무협약, 유관기관간담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연구사업, 동네방네, 양육공감부모교육, 색동아리, 마을종합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무인카페운영, 식당운영, 시설대관 등 (진행횟수 3,017건, 연인원 49,572명, 54,995천원 집행) ○공모사업 - 꿈꾸는 아이들, 김포희망학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청소년중독예방사업 등 (진행횟수 830건, 연인원 10,273명, 205,193천원 집행)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14,282	1,552,832	-	61,450	
2024	1,644,806	1,489,986	-	154,820	
2025	1,714,539	893,725	-	820,81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19
-----	-------	------------	-----	----------	----	------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50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5조 제1항
		제8조(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의 운영경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06,405	1,586,648	1,649,648	0	0	-63,000	-19,75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06,405	1,586,648	1,649,648			-63,000	-19,75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3,000	
김포시 제2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 경정(1,054,160,000원)-기정(1,101,160,000원) · 운영비 : 경정(370,038,000원)-기정(386,038,000원)	= = -47,000 -16,000	

□ 예산요구 사유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산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재산정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감액
- 전년도 공공요금 평균 지출금액 반영에 따른 운영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9.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사례관리사업 - 사례개발, 사례개입, 사례회의,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실무자 모임 (진행횟수 252건 / 연인원 741명, 196천원 집행)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의 사랑, 에듀테크 멘토링, 옥상정원 가족텃밭, 생애주기별 가족지원, 취약계층학습지원, 식생활지원, 경제적지원, 결연후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정서지원, 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강사간담회, 문화복지, 미디어센터 조성 및 교육 운영, 인권교육사업, 김포 먹거리 복지 코너 등 (진행횟수 3,583건, 연인원 30,667명, 212,197천원 집행)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업무협약, 유관기관간담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연구사업, 찾아가는 심리상담, 이동복지사업 - 동네방네, 양육공감부모교육, 주민 간담회, 공(연), 색동아리, 마을종합지원사업, 마을우물터, 자원봉사개발 및 활동 관리, 후원개발 및 관리, 기관견학, 대외홍보, 홍보물제작, 주민편의제공(무인카페운영, 복지관 대관 등) (진행횟수 4,163건 / 연인원 83,854명, 60,600천원 집행) ○공모사업 - 꿈꾸는 아이들, 장기대안학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인가구지원사업-행복마중, 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 공동모금회, 느린학습지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역난방비지원, 민.관통합사례관리, 미션.비전 컨설팅 등 (진행횟수 1,805건, / 연인원 3,960명, 193,640천원 집행)
2024	○사례관리기능 -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진행횟수 2,176건, 연인원 18,422명) - 이주배경아동사례지원 ‘우리다운’ (진행횟수 718건, 연인원 772명) ○서비스제공기능 - 글로벌가족소통강화사업, 부모역량강화사업, 방학돌봄교실 등 (진행횟수 336건, 연인원 3,024명) - 경제적지원, 식생활지원, 우리동네먹거리네트워크 등 (진행횟수 398건, 연인원 5,101명) - 교육문화사업-영유아, 라인댄스, 정리수납 등 (진행횟수 1,017건, 연인원 13,015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마을에서하루살기, 주민동아리지원사업, 토요프로그램 등 (진행횟수 270건, 연인원 3,881명) - 후원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191건, 연인원 2,982명) - 자원봉사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1,080 건, 연인원 1,250명) - 홍보사업-홍보물제작, 홈페이지유지관리, 대외홍보 등 (진행횟수 659건, 연인원 27,889명) - MOU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활동, 실습지도 등(진행횟수 240건, 연인원 308명) - 아이성장놀이터, 시골벽적가족도서관 등 (진행횟수 1,146건, 연인원 9,822명) ○공모사업 - 이주배경청소년효능감증진 및 진로성장지원프로그램’step-up’ (지원금 51,600천원 진행횟수 163건, 연인원 1,781명)

	- 취약계층 아동정서지원프로그램'꿈아트'(지원금 15,000천원, 진행횟수 37건, 연인원 435명) - 청소년중독예방사업 '지피지기' (지원금 30,000천원, 진행횟수 10건, 연인원 1,061명) ○직원역량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직원연수 등 (진행횟수 157건, 연인원 1,413명)
2025	○사례관리기능 :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진행횟수 1,652건, 연인원 7,069명) ○서비스제공기능 : - 이주배경성인소통강화사업, 문화나눔, 성인문해교육 등 (진행횟수 423건, 연인원 4,136명) - 교육문화-노래교실, 라인댄스, 정리수납 등 (진행횟수 590건, 연인원 9,102명) - 경제적지원, 식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진행횟수 149건, 연인원 2,718명) ○지역조직화기능사업 : - 후원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158건, 연인원 300명) - 자원봉사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846건, 연인원 885명) - 출판홍보사업-홍보물제작, 홈페이지유지관리, 대외홍보 등 (진행횟수 362건, 연인원 188,379명) - MOU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활동, 실습지도 등(진행횟수 187건, 연인원 493명) - 지역현안조사사업-지역현안TFT, 주민만나기, 지역사회 실태조사 (진행횟수 150건, 연인원 309명) - 아이성장놀이터, 시골벽적가족도서관, 시설대관 등 (진행횟수 748건, 연인원 13,857명) - 주민동아리 지원사업(7건, 42명) - 토요일여가문화사업 '놀라운 토요일'(22건, 1,445명) -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예술은 사랑을 싣고'(57건,443명) ○공모사업 - 취약계층아동.청소년가족기능강화사업 (지원금 115,000천원)-(진행횟수 721건, 연인원 879명) - 청소년건강식지원사업 '푸드트립'(지원금 37,470천원, 진행횟수 278건, 연인원 1,398명) - 청소년 중독예방사업 '지피지기' (지원금 30,000천원, 진행횟수 38건, 연인원 316명) - 느린학습청소년맞춤형성장지원사업 (지원금 44,037천원, 진행횟수 78건, 연인원 453명) -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꿈빛파티시에'(지원금 20,000천원, 진행횟수 25건, 연인원 358명) - 경기복지재단 어르신즐김터사업 '예술은 사랑을 싣고'(28건, 271명) ○직원역량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직원연수 등 (진행횟수 188건, 연인원 1,16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70,991	1,866,255	-	904,736	
2024	1,606,405	1,478,014	-	128,391	
2025	1,649,648	1,004,709	-	644,93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19
-----	-------	------------	-----	----------	----	------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국가보훈대상자 4,400명		
사업목적	수당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 및 경제적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20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2.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 사망위로금 4. 그 밖의 위로금(보훈의 달, 명절, 보훈관련 국경일) 5.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546,500	6,383,000	6,740,000			-357,000	-163,500	
국비								
도비								
시비	6,546,500	6,383,000	6,740,000			-357,000	-163,5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57,000	
국가유공자 위문	301-14 기타보상금	· 보훈명예수당 - 만75세 미만 : (경정) 80,000원*1,900명*12월-(기정) 80,000원*2,100명*12월 = -192,000 - 만75세 이상 : (경정) 100,000원*2,500명*12월-(기정) 100,000원*2,600명*12월 = -120,000 · 명절 및 보훈의달 위로금 : (경정) 50,000원*4,400명*3회-(기정) 50,000원*4,700명*3회 = -45,000		

□ 예산증감 사유

- 보훈수당 지급대상 인원 수 현황('25년 7월 말 기준 4,378명)을 반영하여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접수(읍면동), 사망위로금 신청 및 지급
 - 매월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지급
 - 추석 : 보훈대상자 위로금 지급(각 5만원)
 - 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절 위로금 지급(10만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인원 : 4,608명)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위로금 지급 : 5,316,030천원
2024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인원 : 4,583명)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위로금 지급 : 6,144,750천원
2025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인원 : 4,378명)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위로금 지급 : 4,236,07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24,000	5,316,030	-	107,970	
2024	6,546,500	6,144,750	-	401,750	
2025	6,740,000	4,236,070	-	2,503,930	8.22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79명		
사업목적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및 자긍심 고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임규정	제17조 제1항	
	해당조례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6,000	62,173	78,700			-16,527	-3,827	
국비								
도비	13,200	18,652	23,610			-4,958	5,452	
시비	52,800	43,521	55,090			-11,569	-9,279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527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경정) 787,000원 * 79명 - (기정) 787,000원 * 100명	= -16,527	

□ 예산증감 사유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실 지급인원(100명 →79명) 반영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통보(경기도 → 시)
 - 2025. 01. ~ 12. : 대상자 무료 진료증 발급 및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 접수·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인원 : 64명 ○ 총지급액 : 58,773천원
2024	○ 지원인원 : 90명 ○ 총지급액 : 61,699천원
2025	○ 지원인원 : 57명 ○ 총지급액 : 23,21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000	58,773	-	7,226	
2024	66,000	61,699	-	4,301	
2025	78,700	23,216	-	55,48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보훈단체 일반운영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0개 보훈단체		
사업목적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및 주차료 지원을 통한 원활한 단체 운영 보조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임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2,000	38,130	32,850	0	0	5,280	-3,8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000	38,130	32,850			5,280	-3,8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80	
보훈단체 일반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보훈단체 차량 주차료 : 15대 * 88,000원 * 4월	= 5,280	

□ 예산요구 사유

- 10개 보훈단체와 시설 및 단체관리를 위한 차량의 주차료 지원
- 입주 보훈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공간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9월 김포시 보훈회관 개관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025. 12. : 보훈단체 등 차량 주차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훈단체 임차료 지급 : 41,400천원 -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홍보 : 1,760천원
2024	- 보훈단체 임차료 지급 : 42,000천원
2025	- 보훈단체 임차료 지급 : 29,2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160	43,160	-	-	
2024	42,000	42,000	-	-	
2025	32,850	29,200	-	3,6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전화	2617
-----	-------	----------	-----	------------	----	------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보훈시설물 10개소		
사업목적	현충탑 등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 도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000	35,000	25,00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	35,000	25,000			10,000	1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현충시설 등 유지관리비 경정(2,000,000원*10개 시설) - 기정(1,000,000원*10개 시설)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충탑 등 보훈시설물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편의 도모 및 보훈정신 함양
- 보훈회관 및 국가유공자 회관 유지·관리를 통한 보훈단체 활동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현충시설 조경 조성 및 노후화 시설 개·보수비 증액
- 현충탑 등 시설 내 균열로 보수가 시급하여 예산 증액 불가피

※ 별첨자료

□ 김포시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사진	비고
1	양촌.대곶면민만세운동유적비	양촌읍 양곡리 497-1		현충 시설
2	월곶면민만세운동유적비	월곶면 포내리 168-2		
3	고촌면민독립만세유적탑	고촌읍 신곡리 1106 (신곡노을공원 내)		
4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46		
5	현충탑	김포한강4로 419-39		
6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월곶면 고막리 435-6 (청소년수련원 내)		
7	해병대김포지구전적비	월곶면 조강리 1-9(애기봉)		
8	6.25참전유공자탑	월곶면 고막리 435-6 (청소년수련원 내)		
9	보훈회관	사우중로11번길 34		기타 보훈 시설
10	국가유공자회관	장릉로 125		

□ 조경 조성 및 개·보수 필요시설

구분	사 진			
조경 조성				양촌.대곶면민만세운동유적비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6.25참전유공자탑
개·보수 사항				
	현충탑 계단 석재 균열	현충탑 도장 탈색	공원 내 시설물 파손	시설 내 조형물 (글자탈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연중 : 관내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현충탑 유지관리 - CCTV 사용료 및 상하수도요금 : 864천원 - 현충탑 물청소 및 예초작업 등 : 6,547천원 - 현충탑 유지관리 용역(무공수훈자회) : 13,473천원 ○양촌·대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보수 : 1,084천원 ○보훈회관, 유공자회관 보수공사 등 : 4,265천원
2024	○현충탑 유지관리 - CCTV 사용료 및 상하수도요금 : 863천원 - 현충탑 물청소 및 예초작업 등 : 5,069천원 - 현충탑 유지관리 용역(무공수훈자회) : 11,228천원 ○양촌·대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보수 : 1,970천원 ○고촌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보수 : 1,700천원
2025	○현충탑 유지관리 - CCTV 사용료 및 상하수도요금 : 907천원 - 현충탑 유지관리 용역(무공수훈자회) : 13,473천원 ○마산동 현충탑 보수 : 2,190천원 ○양촌·대곶 및 월곶면민만세운동 유적비 정비 : 1,944천원 ○국가유공자회관 시설 보수 : 600천원 ○보훈회관 시설 보수 : 2,23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400	26,233	-	4,167	
2024	25,000	20,830	-	4,170	
2025	25,000	21,349	-	3,65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전화	2617
-----	-------	----------	-----	------------	----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1개소		
사업목적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을 통한 독립운동정신 계승 및 애국심 고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조(업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보존 및 관리 2. 유물의 보관 관리 및 수집 3. 이용자 보호 및 홍보 활동 4. 김포시 3·1 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하 사항 5. 기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95,225	320,768	337,068			-16,300	25,543	
국비								
도비								
시비	295,225	320,768	337,068			-16,300	25,543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300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독립운동기념관 경비(위탁관리비) - 청사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감액 : (경정)99,360,000원 - (기정)115,660,000원	= -16,300	

□ 예산증감 사유

○ 위탁관리비 : 2025년 청소용역 계약 낙찰 차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연간 이용객 33,950명/21개 사업) - 3.1절특별기획전 <신문이 그려낸 김포>, 광복절특별기획전 <나라말글과 독립> 기획 및 운영 - 국경일행사(3.1절 및 광복절), 청소년도슨트 등 독립운동특성화사업(5종) 추진 - 김포 및 독립운동사 관련 소장품 26점 발굴
2024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연간 이용객 39,980명/18개 사업) - 3.1절특별기획전 <고종황제의 국장>, 광복절특별기획전 <1920 독립전쟁의 해> 기획 및 운영 - 국경일행사(3.1절 및 광복절), 청소년큐레이터, 역사강좌 등 특성화사업(5종) 추진 - <김포군 대곶면 영수증> 등 179점 발굴, <독립선언서> 영인본 1점 구입
2025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연간 이용객 24,074명/16개 사업) - 특별기획전 <식민지 조선의 풍경> 기획 및 운영 - 특별기획전 연계 QR전시해설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경일행사(3.1절 및 광복절) 및 순회전시, 청소년큐레이터, 국가상징체험활동사업 등 특성화사업 5종 추진 - <태극우표>, <토지세자료> 등 14점 발굴, <김아파나시 훈장> 등 34점 기증 - 수장고 IPM(종합적유해생물관리) 및 소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수장고 보존 환경 유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8,390	286,527	-	21,863	
2024	295,225	263,368	-	31,857	
2025	337,068	206,885	-	130,18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긴급복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5,497명		
사업목적	실직, 중한질병 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23,469	5,699,958	6,167,956	0	0	-467,998	676,489	
국비	4,018,775	4,559,966	4,934,364			-374,398	541,191	
도비	502,347	569,996	616,796			-46,800	67,649	
시비	502,347	569,996	616,796			-46,800	67,64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7,998	
긴급복지	301-01 사회복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생계비 및 의료비 경정(1,037,000원*5,497가구)-기정(1,037,000원*5,948가구)	≒ -467,998	

□ 예산요구 사유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지원가구 감소(5,948가구 -> 5,497가구)
- 실제 지원 가구 수를 반영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현장조사
 - 수시: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사후조사
 - 동절기 (10월 ~3월): 연료비 추가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5,212가구, 4,017,177천원)
2024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4,844가구, 5,023,469천원)
2025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3,290가구, 3,420,46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20,250	4,017,177		3,073	
2024	5,023,469	5,023,466	-	3	
2025	6,167,956	3,420,460	-	2,747,49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 한은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윤진	전화	2488
-----	-------	------------	-----	-----------	----	------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경기도 특화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4조(기능) 도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	10,000	10,000	0	0	0	0	
국비		0					0	
도비	2,000	3,000	3,000			0	1,000	30%
시비	8,000	7,000	7,000			0	-1,000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비 : 경정(4,000,000원)-기정(4,000,000원)	= 0	
	201-02 공공운영비	· 무한돌봄 차량 유류비 등 : 경정(292,000원)-기정(1,404,000원)	= -1,112	
		· 무한돌봄 복지등기우편료 등 : 경정(1,112,000원)-기정(0원)	= 1,112	
		· 무한돌봄 공용 휴대폰 이용요금 : 경정(396,000원)-기정(396,000원)	= 0	
	201-03 행사운영비	· 통합사례관리 교육 등(강사비 포함) : 경정(4,200,000원)-기정(4,200,000원)	= 0	

□ 예산요구 사유

- 무한돌봄 전용차량의 자산관리과 이전에 따른 차량 유류비 등의 일부를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등기우편료로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내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무한돌봄센터 공용 휴대폰 이용요금 및 등기우편료 지급
 - 수시 : 카카오톡 채널 ‘김포복지팡팡’ 운영 등
 - 분기별 : 읍면동 공무원, 시 사례관리사, 민관이 함께하는 역량교육, 통합사례관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복지사각지대 홍보물 제작: 12,000부 - 복지등기서비스 7차 발송, 복지사각지대 발굴 6,273건 -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5회), 내부사례회의(34회) - 비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김포복지팡팡” 운영(채널친구 : 1,367명)
2024	- 복지사각지대 홍보물 제작: 12,000부 - 복지등기서비스 8차 발송, 복지사각지대 발굴 8,531건 -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3회), 내부사례회의(16회) - 비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김포복지팡팡” 운영(채널친구 : 1,616명)
2025	- 복지사각지대 홍보물 제작: 12,000부 제작중 - 복지등기서비스 8차 발송, 복지사각지대 발굴 6,825건 -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2회), 내부사례회의(10회) - 비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김포복지팡팡” 운영(채널친구 : 1,80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9,600	-	400	
2024	10,000	9,949	-	51	
2025	10,000	6,200	-	3,8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6급 이하영	전화	2632
-----	-------	------------	-----	----------	----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8명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1,428	185,714	90,000	0	10,000	85,714	124,286	
국비	43,000	130,000	63,000		7,000	60,000	87,000	
도비	9,214	27,857	13,500		1,500	12,857	18,643	
시비	9,214	27,857	13,500		1,500	12,857	18,64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71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경정(600,000원*51명*6개월)-기정(600,000원*28명*6개월)	85,714	

□ 예산요구 사유

- 신규 및 재판정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 욕구가 있는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서비스 이용자 수시 모집(연중)
 - 2025. 02. : 서비스 홍보
 - 2025. 08. : 관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 2025. 10.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사업홍보 및 홍보리플릿 제작 : 5,283천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약금 지급 : 53,714천원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결정 : 22건 - 2024년 하반기 시행사업
2025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약금 지급 : 100,000천원 - 일상돌봄서비스 신규 및 재판정 결정 : 5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1,428	61,428	-	-	
2025	100,000	100,0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 한은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보열	전화	5648
-----	-------	------------	-----	------------	----	------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통합사례관리사 3명		
사업목적	통합사례관리사 수당지원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항, 제4항
		②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법 제42조의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823	5,894	32,137	0	0	-26,243	-9,929	
국비		0					0	
도비		0				0	0	
시비	15,823	5,894	32,137			-26,243	-9,929	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243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인건비 등 : 경정(5,894,000원)-기정(26,731,000원)	= -20,837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4대보험료 부담금 : 경정(0원)-기정(5,406,000원)	= -5,406	

□ 예산요구 사유

-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지침에 의거 통합사례관리사 국비 인건비 부족분(기타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수당 등)에 대해 시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등으로 국비 예산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여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통합사례관리사 3명 수당 지원
2024	- 통합사례관리사 3명 수당 지원
2025	- 통합사례관리사 3명 수당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266	28,596	-	5,670	
2024	15,823	15,395	-	428	
2025	32,137	5,894	-	26,24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6급 이하영	전화	263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569명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4,951,000	51,568,000	49,239,000	0	0	2,329,000	6,617,000	
국비	40,456,800	46,411,200	44,315,000			2,096,200	5,954,400	90%
도비	3,146,340	3,609,660	3,446,500			163,160	463,320	7%
시비	1,347,860	1,547,140	1,477,500			69,640	199,280	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29,000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생계급여 지원 경정(449,090원*9,569명*12월)-기정(449,090원*9,137명*12월)	≒ 2,329,000	

□ 예산요구 사유

- 도 복지사업과-14512(2025.6.26.)호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상자 증가(9,137명 → 9,569명)
-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6.4% 인상됨
- 2025년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2%)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인상액	52,342	80,016	99,423	117,715	131,986	142,86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 ~ 2025.12. : 생계급여 지급 (매월 20일 : 정기급여, 매월 말 : 추가급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8,134명 총 35,875,921천원 지급
2024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8,656명 총 44,652,402천원 지급
2025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9,070명 총 33,708,166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707,000	35,875,921	-	831,079	
2024	44,951,000	44,652,402	-	298,598	
2025	49,239,000	33,708,166	-	15,530,83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2621
-----	-------	------------	-----	------------	----	------

민생회복 소비쿠폰(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79,348명		
사업목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위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21,740,011	0	0	0	121,740,011	121,740,011	
국비		109,499,562				109,499,562	109,499,562	89.95%
도비		6,083,309				6,083,309	6,083,309	5%
시비		6,157,140				6,157,140	6,157,140	5.0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1,740,011	
민생회복 소비쿠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보수 - 인건비 11,400원*8시간*36명*30일 인건비 11,400원*8시간*2명*79일 - 4대보험료 112,905,600원*14.07% - 인건비(자체) 11,400원*8시간*2명*35일 - 4대보험료(자체) 6,384,000원*12.64%	= 98,496 ÷ 14,410 ÷ 15,894 = 6,384 ÷ 807	
	201-01 사무관리비	· 행정장비 임차료 · 행정장비 임차료(자체) · 선불카드 수수료(발행비용 등) : 150,000장 * 2,000원 · 홍보비 등 · 홍보비 등(자체) · 매식비(자체) : 9,000원*15일*8명*4개월	= 5,800 = 44,200 = 300,000 = 4,380 = 10,120 4,32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등	= 8,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 (34,048명*150,000원) + (425,000명*250,000원) + (2,800명*400,000원) + (17,500명*500,000원)	= 121,227,200	

□ 예산요구 사유

-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중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8.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통보 (도 복지정책과-15477호)
- 2025. 7. 9.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사업지침 배부 및 읍면동장 회의
- 2025. 7. 14. :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 운영 개시
- 2025. 7. 21. ~ 9. 12.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2025. 9. 22. ~ 10. 17.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민생회복 소비쿠폰 468,661명 (내시 인구대비 97.8%)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24,800,000천원 예약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성립전)	69,006,582	24,875,874	-	44,130,70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장 권성민	담당자	복지6급 이하영	전화	8302
-----	-------	-----------------------	-----	----------	----	------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1. ~ 2025. 9. 30.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2,150가구		
사업목적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민생안전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해당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①항
		한파·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과 안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등의 냉난방비용 및 소모성 물품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607,500	0	0	0	607,500	607,500	
국비		0					0	
도비		607,500				607,500	607,500	1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7,500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000원 * 12,150가구	= 607,500	

□ 예산요구 사유

- '25.7.11. 「경기도 극한폭염, 긴급대책」 발표에 따라 긴급 냉방비 지원
- 여름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 및 민생안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도비100% 신규 추진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대상자 명단 중복 정비 및 계좌 파악
 - 2025. 7. : 성립전예산 편성
 - 2025. 8. :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1,538가구/ 냉방비 576,900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07,500	576,900	-	30,6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2621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8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급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200	13,800	12,600	0	0	1,200	600	
국비		0					0	
도비	3,960	4,140	3,780			360	180	30%
시비	9,240	9,660	8,820			840	420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경정(150,000원*7명*12월) - 기정(150,000원*5명*12월) 경정(100,000원*1명*12월) - 기정(100,000원*3명*12월)	= 3,600 = -2,4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정규직,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급여
- 5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에 따른 수당 금액 증액
- 도 복지사업과-14173(2025.6.20.)호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특수근무수당 : 8명 12,900천원
2024	- 특수근무수당 : 8명 11,700천원
2025	- 특수근무수당 : 8명 9,1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00	12,900	-	300	
2024	13,200	11,700	-	1,500	
2025	12,600	9,100	-	3,5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승미	전화	2623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11명		
사업목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400	6,400	6,000	0	0	400	1,000	
국비		0					0	
도비	5,400	6,400	6,000			400	1,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경정((50,000원*10명*12월)+(50,000원*1명*8월))-기정(50,000원*10명*12월) =	4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부가급여(계약직 포함)
- 센터 종사자 증원에 따른 수당 예산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자활 사례관리사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증액
- 도 복지사업과-14173(2025.6.20.)호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처우개선비 : 8명, 4,850천원
2024	- 처우개선비 : 8명, 5,400천원
2025	- 처우개선비 : 8명, 4,2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00	4,850	-	550	
2024	5,400	5,400	-	-	
2025	6,000	4,200	-	1,8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승미	전화	2623
-----	-------	------------	-----	------------	----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54명		
사업목적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2,000	43,200	32,000	0	0	11,200	11,200	
국비							0	
도비	9,600	12,960	9,600			3,360	3,360	30%
시비	22,400	30,240	22,400			7,840	7,840	7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200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정(800,000원*54명)-기정(800,000원*40명)	= 11,200	

□ 예산요구 사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 보장

□ 예산증감 사유

-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
- 도 노인복지과-13598(2025.6.23.)호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 ~ 2025.12.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수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및 장례비용 26명(일반 10명, 수급자 16명) 지급
2024	-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및 장례비용 39명(일반 9명, 수급자 30명) 지급
2025	-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및 장례비용 31명(일반 13명, 수급자 18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840	12,800	-	13,040	
2024	32,000	32,000	-	-	
2025	32,000	24,550	-	7,4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송현지	전화	2624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

- 재가의료급여 사업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16명		
사업목적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입원문제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372	9,325	8,921	0	0	404	2,953	
국비	5,098	7,460	7,137			323	2,362	80%
도비	892	1,306	1,249			57	414	14%
시비	382	559	535			24	177	6%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4	
의료급여사업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재가의료급여 사업 경정(48,570원*16명*12개월)-기정(46,460원*16명*12개월)	= 404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입원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통합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도 복지사업과-19474(2025.8.26.)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5년 매월 서비스 연계 비용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비용 2,926천원 집행
2025	-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비용 6,725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372	2,926	-	3,446	
2025	8,921	6,725	-	2,19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의료기관
사업규모		8,541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482,887	3,615,006	3,391,704	-17,826	0	241,128	132,11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82,887	3,615,006	3,391,704	-17,826		241,128	132,119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1,128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경정(3,615,006,000원)-기정(3,391,704,000원)	= 241,128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 예탁
-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예산증감 사유

- 도 복지사업과-19474(2025.8.26.)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294명 증가(8,247명 → 8,541명)로 진료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5. 8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변경내시
 - 2025년 1월, 4월, 7월, 10월, 11월 진료비 예약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5회)
2025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3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51,388	2,951,388	-	-	
2024	3,482,887	3,482,887	-	-	
2025	3,373,878	3,042,878	-	331,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이예스더	담당자	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의료기관
사업규모		8,541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278	6,102	5,754	0	0	348	-17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278	6,102	5,754			348	-176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48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경정(6,102,000원)-기정(5,754,000원)	= 348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예산증감 사유

- 도 복지사업과-19474(2025.8.26.)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 의료급여 수급자 294명 증가(8,247명 → 8,541명)로 의료급여 지급 위탁수수료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5. 8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변경내시
 - 2025년 1월, 4월, 7월, 10월, 11월 위탁수수료 지급 (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수수료 정산(4회)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수수료 정산(5회)
2025	.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수수료 정산(3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974	4,974	-	-	
2024	6,278	6,278	-	-	
2025	8,921	6,725	-	2,19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이예스더	담당자	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약 3,650명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신체적 청결 유지를 위해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51,600	744,600	693,600	0	0	51,000	9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51,600	744,600	693,600			51,000	93,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000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17,000원*3,650명*12월)-기정(17,000원*3,400명*12월)	≒ 51,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신체적 청결 유지를 위한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 및 만65세 연령 도래에 따른 지급대상자 증가(약 3,400명→약 3,65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후생복지비 지급(매월 20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매월 2,704명 지원
2024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매월 3,170명 지원
2025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매월 3,81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1,400	568,191	-	3,209	
2024	651,600	650,268	-	1,332	
2025	693,600	496,485	-	197,11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두리	전화	2249
-----	--------	------------	-----	------------	----	------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2,000가구		
사업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위임규정	제4조 제1항	
	해당조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6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난방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0,000	492,000	525,000	0	0	-33,000	-8,000	
국비		0					0	
도비	150,000	147,600	157,500			-9,900	-2,400	
시비	350,000	344,400	367,500			-23,100	-5,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000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492,000,000원)-기정(525,000,000원)	= -33,0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노인 개별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사업 변경내시(1차) [경기도 노인복지과-13861(2025.6.2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3. : 기초수급 노인 개별가구에 난방비 지원
 - 2025. 11. ~ 2025. 12. : 기초수급 노인 개별가구에 난방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초생활수급 노인 개별가구 월 1,810가구 지원
2024	· 기초생활수급 노인 개별가구 월 1,874가구 지원
2025	· 기초생활수급 노인 개별가구 월 1,923가구 지원 (1월~3월분 지급 완료, 11월~12월분 지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4,000	457,800	-	6,200	
2024	500,000	474,000	-	26,000	
2025	525,000	289,600	-	235,4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두리	전화	2249
-----	--------	------------	-----	------------	----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저소득 노인 1,500가구		
사업목적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 개별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9,000	222,000	189,000	0	0	33,000	33,000	
국비		0					0	
도비	56,700	66,600	56,700			9,900	9,900	
시비	132,300	155,400	132,300			23,100	23,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000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222,000,000원)-기정(189,000,000원)	= 33,0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사업 변경내시(1차) [경기도 노인복지과-13861(2025.6.26.)]
-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급 대상자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매월 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저소득 노인가구 매월 1,250가구 지원
2024	· 저소득 노인가구 매월 1,366가구 지원
2025	· 저소득 노인가구 매월 1,380가구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9,000	141,029	-	47,971	
2024	189,000	181,978	-	7,022	
2025	189,000	123,507	-	65,49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두리	전화	2249
-----	--------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종사자 66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62명)		
사업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49,000	1,384,840	1,379,700	0	0	5,140	435,840	
국비	664,300	969,388	965,790			3,598	305,088	
도비	42,705	62,318	62,087			231	19,613	
시비	241,995	353,134	351,823			1,311	111,13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4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 : 경정(1,384,840,000원) - 기정(1,379,700,000원) =	5,140	

□ 예산요구 사유

- 종사자 66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62명) 수당 예산 추가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변경내시 [경기도 노인복지과-10441(2025.5.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보조금 교부(분기별)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1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7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560명
2024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9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5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559명
2025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9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5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69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9,215	1,329,215	-	-	
2024	1,355,700	1,355,700	-	85,799	
2025	1,379,700	1,045,203	-	334,49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은미	전화	2205
-----	--------	------------	-----	------------	----	------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4번길 48(사우동)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사업규모	노인복지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사업목적	평생교육, 건강, 상담,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234,772	2,257,180	2,312,439	0	0	-55,259	22,40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34,772	2,257,180	2,312,439			-55,259	22,40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259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2,253,880,000원)-기정(2,309,139,000원)	= -55,259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내 불용예정액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입퇴사(입사 11명, 퇴사 17명)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 예정액 감액
- 복지관 직원 실 인원 감소분(6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연금사회보험금 등 불용액 예정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1.10. (노인종합복지관) 2022.1. (북부노인복지관)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반기별 보조금 교부 및 노인복지관 운영
 - 2025. 08. : 노인복지관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실시
 - 2025. 12.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076,020천원) · 노인복지관 2개소 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실시(143,990천원)
2024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194,372천원) · 노인종합복지관 물품 구입 및 환경개선 실시(40,400천원)
2025	· 노인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2,253,880천원) · 노인종합복지관 물품 구입 (3,3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20,010	2,162,995	-	57,015	
2024	2,234,772	2,164,273	-	70,498	
2025	2,312,439	2,257,180	-	55,25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4번길 48(사우동)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사업규모	2개소(김포시노인상담센터, 김포시북부노인상담센터)		
사업목적	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3,963	73,603	94,403	0	0	-20,800	-10,360	
국비		0					0	
도비	25,190	22,081	28,321			-6,240	-3,109	
시비	58,773	51,522	66,082			-14,560	-7,2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800	
노인상담센터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 : 경정(73,603,000원)-기정(94,403,000원)	= -20,800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상담센터 2개소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노인상담센터 도 지원 변경 내시 반영
 - 2025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변경내시 알림[경기도 노인복지과-12192(2025.6.2.)호]
- 노인상담센터 1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상담사 미채용(25.1.~5.)에 따른 5월분(20,800천원) 불용액 발생 예정으로 감액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2025. 01. ~ 2025. 12. : 노인상담사업 추진(심리상담, 심리검사,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등)
 - 2025. 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노인상담센터 : 59명/72건 · 김포시북부노인상담센터 : 272명/626회
2024	· 김포시노인상담센터 : 185명/377회 · 김포시북부노인상담센터 : 115명/355회
2025	· 김포시노인상담센터 : -명/-회 · 김포시북부노인상담센터 : 58명/177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7,843	61,974	-	25,869	
2024	83,963	70,591	-	13,372	
2025	94,403	47,707	-	46,69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생계급여(노인시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8개소(634명)		
사업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부식비 등 구입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요구액 (F)	
계	2,500,000	2,800,000	3,000,000	0	0	-200,000	300,000
국비	2,250,000	2,520,000	2,700,000			-180,000	270,000
도비	175,000	196,000	210,000			-14,000	21,000
시비	75,000	84,000	90,000			-6,000	9,00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생계급여 (노인시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금 : 경정(368,188원*634명*12월)-기정(368,188원*679명*12월)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부식비, 월동대책비, 명절 특별위로금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변경내시 [경기도 복지사업과-14512(2025.6.26.)호]
 - 생계급여(노인시설) 감액편성
-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679명→634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월평균 372명, 총 1,500,358천원 지원
2024	· 월평균 527명, 총 2,238,254천원 지원
2025	· 월평균 704명, 총 8,786,530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80,000	1,500,358	-	79,642	
2024	2,500,000	2,238,254	-	261,746	
2025	3,000,000	1,725,951	-	1,274,04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전진선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28
-----	--------	------------	-----	------------	----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83명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법령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421,229	11,360,924	10,992,074	0	0	368,850	1,939,695	
국비	0	0					0	
도비	942,123	1,136,092	1,099,207			36,885	193,969	
시비	8,479,106	10,224,832	9,892,867			331,965	1,745,726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8,850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1,386,155원*683명*12월)-기정(1,385,788원*661명*12월) =	368,850	

□ 예산요구 사유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자택 등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가 방문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운영비 등 공단 부담분에 대해 지출(도비 10%, 시비 90%)

□ 예산증감 사유

- 가내시 대비 확정 및 변경내시 통보 반영 및 지급대상자 증가(661명 → 683명)로 증액
 - 확정내시 [경기도 노인복지과-365(2025.1.6.)호]
 - 변경내시 [경기도 노인복지과-8535(2025.4.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월평균 476명, 총 7,369,967천원 지원
2024	· 월평균 576명, 총 9,421,229천원 지원
2025	· 월평균 661명, 총 5,807,680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369,967	7,369,967	-	0	
2024	9,421,229	9,421,229	-	0	
2025	10,992,074	8,786,530	-	2,205,54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전진선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28
-----	--------	------------	-----	------------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52명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338,510	14,594,664	17,095,342	0	0	-2,500,678	4,256,154	
국비	0	0					0	
도비	5,169,255	7,297,332	8,547,671			-1,250,339	2,128,077	
시비	5,169,255	7,297,332	8,547,671			-1,250,339	2,128,077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678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2,690,757원*452명*12월)-기정(2,687,947원*530명*12월) =	-2,500,678	

□ 예산요구 사유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자택 거주가 어려운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생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운영비 등 공단 부담분에 대해 지출(도비 10%, 시비 90%)

□ 예산증감 사유

- 가내시 대비 확정 및 변경내시상 지급대상자 감소(530명 → 452명)함에 따라 금액 변동 발생
 - 확정내시 통보서 [경기도 노인복지과-365(2025.1.6.)호]
 - 변경내시 통보서 [경기도 노인복지과-8535(2025.4.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월평균 345명, 총 9,147,592천원 지원
2024	· 월평균 328명, 총 10,338,510천원 지원
2025	· 월평균 443명, 총 10,650,854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147,592	9,147,592	-	-	
2024	10,338,510	10,338,510	-	-	
2025	17,095,342	10,650,854	-	6,444,48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전진선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28
-----	--------	------------	-----	------------	----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기간	2025. 9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3로 291(장기동 1888-18)
사업규모	통합사회복지관 2개동(지하2층/지상3층, 부지면적: 8,969㎡, 건축면적: 3,683㎡, 연면적: 16,638㎡)		
사업목적	김포한강신도시 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과 서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8항에 따라 김포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30,000	0	0	0	130,000	1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0,000				130,000	1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 복지관 건립	401-01 시설비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 130,000 .40,976,000,000원 / 1.1 * 3.708% * 0.08 = 110,400,000원 = 110,400 .110,400,000원 * 손해배상공제 0.326% = 350,000원 = 350 .110,400,000원 * 부가세 10% = 11,040,000원 = 11,040 .121,790,000원 * 추가 조사비 6.7% = 8,210,000원 = 8,21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한강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2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료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뢰 시 자료 제출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실시(증 13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반영	-	-	-
일자	2024.11 반영	2022.8. (자체)	-	-	-	-	2022.10.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8. ~ 2018. 11. :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05. ~ 2019. 12. : 타당성조사 사전 용역 완료
 - 2020. 10. ~ 2022. 0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완료
 - 2022. 08.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 완료
 - 2022. 09. ~ 2022. 10. :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료
 - 2024.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25~2029)
 - 2025. 09. ~ 2025. 12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 2026. 01. : 중앙투자심사 의뢰(행정안전부)
 - 2026. 02. : 공공건축심의(건축과)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경기도 공공건축센터) 의뢰
 - 2026. 03. ~ 2026. 06. :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6. 07. ~ 2026. 11. : 중앙투자심사 결과 발표 및 지방채 신청 및 일상감사
 - 2027. 08. ~ 2027. 09. :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업체선정
 - 2027. 10. ~ 2029. 03. :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64,522,000	13,705,000	130,000	0	0	0	130,000	50,687,000
공 정 별	설계비	1,549,000	130,000				130,000	1,419,000
	보상비	13,705,000	0					
	공사비	41,243,000	0					41,243,000
	감리비	3,161,000	0					3,161,000
	부대비	4,864,000	0					4,864,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5	· 계획(변경) 보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노인장애인과	사업규모	복지관 2개동,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16,638㎡, 건축면적: 3,683㎡)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3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사업위치	김포한강3로 291 (장기동 1888-18)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전진선	담당자	시설8급 이운재	전화	2215
-----	--------	------------	-----	----------	----	------

폭염 대비 경로당(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1. ~ 2025. 8.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경로당 383개소		
사업목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의 제2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63,195	0	0	0	63,195	63,195	
국비		0					0	
도비		63,195				63,195	63,195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3,195	
폭염 대비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경로당(무더위쉼터) : 165,000원*383개소	= 63,195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폭염 대비 경로당(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 내시 [경기도 노인복지과-15836(2025.7.21.)호]
- 무더위쉼터 냉방 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긴급 예산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11. : 경기도 극한폭염 긴급대책 시행계획 수립 (道)
 - 2025. 07. 21. : 폭염 대비 경로당(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 내시 통보 (道 노인복지과)
 - 2025. 07. 21. :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道 노인복지과)
 - 2025. 07. 29. : 성립전 예산편성 요청 및 승인
 - 2025. 08. ~ 12. : 냉방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30개소, 7,239천원 지원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625	7,239	-	38,386	
2024	-	-	-	-	
2025	63,195	-	-	63,19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상미	전화	2207
-----	--------	------------	-----	------------	----	------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400명		
사업목적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70,000	700,000	600,000	0	0	100,000	-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70,000	700,000	600,000			100,000	-7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화장 장려금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500,000원*1,400명)-기정(500,000원*1,200명)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50만 원의 범위에서 화장 비용 실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현재 집행률(70%) 및 지난 3년간 평균 지급자수(1,491명)를 기준으로 하반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4. 10. 31.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2015. 1. 1. 시행)

- 2018. 01. 01.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급 시행

- 2019. 06. 26.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지원대상자 확대, 2020.1.1. 시행)

- 2022. 02. 11.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지원대상자 확대)

- 2025. 01. ~ 2025. 12. : 2025년도 화장장려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산액 : 730,000천원, 신청건수 : 1,472명, 집행액 : 729,962천원, 집행률 : 99%
2024	· 예산액 : 770,000천원, 신청건수 : 1,558명, 집행액 : 769,862천원, 집행률 : 99%
2025	· 예산액 : 600,000천원, 신청건수 : 846명, 집행액 : 417,900천원, 집행률 : 7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30,000	729,962	-	38	
2024	770,000	769,862	-	138	
2025	600,000	417,900	-	182,1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전진선	담당자	사회복지9급 고정훈	전화	5563
-----	--------	------------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0명			
사업목적		출산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삶의 질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400	12,000	8,400	2,400	0	1,200	3,600	
국비	5,880	8,400	5,880	1,680		840	2,520	
도비	378	540	378	108		54	162	
시비	2,142	3,060	2,142	612		306	91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지원금 : 경정(1,200,000원*10명)-기정(1,200,000원*9명) =	1,200	

□ 예산요구 사유

- 비장애 여성과 비교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4703(2025.6.20.)호]
- 여성장애인 출산자 증가(9명→10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상자 : 8명
2024	· 대상자 : 9명
2025	· 대상자 : 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000	8,000	-	-	
2024	8,400	8,400	-	-	
2025	10,800	10,8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명			
사업목적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500	9,834	6,234	0	0	3,600	-3,666	
국비							0	
도비	2,700	2,950	1,870			1,080	250	
시비	10,800	6,884	4,364			2,520	-3,91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9,834,000원)-기정(6,234,000원)	= 3,600	

□ 예산요구 사유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5727(2025.7.2.)호]
- 수혜 인원(4명 → 6명)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상자 : 6명
2024	· 대상자 : 8명
2025	· 대상자 : 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9,000	-	6,000	
2024	13,500	9,420	-	4,080	
2025	6,234	4,799	-	1,43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14명		
사업목적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3,000	48,000	30,600	0	0	17,400	15,000	
국비		0					0	
도비	9,900	14,400	9,180			5,220	4,500	
시비	23,100	33,600	21,420			12,180	10,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400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지원금 : 경정(48,000,000원)-기정(30,600,000원)	= 17,400	

□ 예산요구 사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뇌병변 장애인에 국한됐던 지원대상을 '25.7월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추진하여 배변·배뇨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 도모
-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분기별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예산증감 사유

-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5742(2025.7.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2025. 12.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 2025. 01. ~ 2025. 12.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월 평균 64명 지원
2024	· 월 평균 62명 지원
2025	· 월 평균 8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600	27,497	-	103	
2024	33,000	32,395	-	605	
2025	30,600	18,024	-	12,57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7급 이하나	전화	2212
-----	--------	-------------	-----	----------	----	------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93명			
사업목적		자산형성 기능이 미흡한 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4,600	156,600	237,500	0	0	-80,900	-8,000	
국비		0					0	
도비	49,380	46,980	71,250			-24,270	-2,400	
시비	115,220	109,620	166,250			-56,630	-5,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900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23년 가입자 : 경정(100,000원*69명*6월) - 기정(100,000원*72명*6월) · 25년 가입자 : 경정(100,000원*56명*6월) - 기정(100,000원*161명*7월)	= -80,900	

□ 예산요구 사유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24개월간 월 10만원 이내 1:1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4326(2025.6.1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뢰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2025년 신규 가입자 모집
 - 2025. 06. ~12. : 신규가입자 적립
 - 2025. 07. : 만기자(2023년 가입) 개인적립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입자 103명 지원
2024	· 가입자 173명 지원
2025	· 가입자 193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8,100	81,110	-	6,990	
2024	164,600	144,510	-	20,090	
2025	237,500	111,623	-	125,87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희정	전화	2629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67명		
사업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지자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지원함으로써 돌봄공백 발생을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법령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660,568	3,851,304	2,899,534	0	321,540	630,230	190,7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60,568	3,851,304	2,899,534		321,540	630,230	190,73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30,23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자체)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16,620원*667명*20시간*12월)-기정(16,620원*509명*20시간*12월) =	630,23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도비)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고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인에게 지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모든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급 대상자 증가(509명 → 667명)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24시간 지원 : 20명 · 김포시 추가지원 : 650명
2024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9명 · 김포시 추가지원 : 906명
2025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8명 · 김포시 추가지원 : 78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97,404	2,297,404	-	-	
2024	3,660,568	3,660,568	-	-	
2025	3,221,074	3,221,074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보람	전화	2211
-----	--------	-------------	-----	------------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891명		
사업목적	성장기 발달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아동의 지속적 치료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43,657	2,167,000	1,643,658	233,142	0	290,200	523,343	
국비	1,150,560	1,516,900	1,150,560	163,200		203,140	366,340	
도비	74,600	97,515	73,965	10,491		13,059	22,915	
시비	418,497	552,585	419,133	59,451		74,001	134,08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0,20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금 : 경정(2,167,000,000원)-기정(1,876,800,000원)	= 290,200	

□ 예산요구 사유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기능성의 일부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속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경기도 장애인복지과-15900(2025.7.4.)회]
- 2025.1월부터 미등록 장애아동의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이 만6세까지에서 만9세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추가 소요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상자 : 711명
2024	· 대상자 : 874명
2025	· 대상자 : 89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72,000	1,372,000	-	-	
2024	1,643,657	1,643,657	-	-	
2025	1,876,800	1,876,8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8명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의 가족 기능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132	36,198	15,306	0	0	20,892	17,066	
국비	13,392	25,339	10,714			14,625	11,947	
도비	861	1,629	689			940	768	
시비	4,879	9,230	3,903			5,327	4,3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89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36,198,000원)-기정(15,306,000원)	= 20,892	

□ 예산요구 사유

- 심리적 소진, 우울감, 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1년간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변경 내시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8919(2025.7.22.)]
- 지원 대상 사업량(8명 → 18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 현황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이용자 10명
2024	· 이용자 8명
2025	· 이용자 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120	21,120	-	-	
2024	19,132	19,132	-	-	
2025	15,306	15,306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7급 조혜원	전화	2213
-----	--------	-------------	-----	----------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32명		
사업목적	청소년기(중·고등학교)발달장애인에게 여가활동, 자립준비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에게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36,930	1,981,944	1,879,428	0	0	102,516	145,014	
국비	1,285,852	1,387,361	1,315,600			71,761	101,509	
도비	82,661	89,187	84,574			4,613	6,526	
시비	468,417	505,396	479,254			26,142	36,97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516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16,620원*232명*66시간*12월*64.9%(집행계수)) - 기정(16,620원*220명*66시간*12월*64.9%(집행계수))	≡ 102,516	

□ 예산요구 사유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변경 내시[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8725(2025.7.17.)]
- 지원 대상 사업량(220명 → 232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 현황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이용자 196명
2024	· 이용자 227명
2025	· 이용자 23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45,920	1,433,598	-	212,322	
2024	1,836,930	1,836,930	-	-	
2025	1,879,428	1,371,982	-	507,44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7급 이하나	전화	2212
-----	--------	-------------	-----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2명		
사업목적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08,880	1,408,837	1,273,372	0	0	135,465	199,957	
국비	846,216	986,186	891,360			94,826	139,970	
도비	54,399	63,398	57,302			6,096	8,999	
시비	308,265	359,253	324,710			34,543	50,98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5,46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경정(16,620원*52명*136시간*12월) - 기정(16,620원*47명*136시간*12월)	≒ 135,465	

□ 예산요구 사유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변경 내시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8725(2025.7.17.)]
- 지원 대상 사업량(47명 → 52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이용자 47명
2024	· 이용자 64명
2025	· 이용자 6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70,310	1,870,310	-	-	
2024	1,208,880	1,208,880	-	-	
2025	1,273,372	1,018,696	-	254,67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7급 이하나	전화	2212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가연마을(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 예지원(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랜시스교회집(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입소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유지와 보호 및 재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374,861	4,587,032	4,334,527	0	0	252,505	212,171	
국비	3,062,403	3,210,923	3,034,176			176,747	148,520	
도비	196,869	206,416	195,054			11,362	9,547	
시비	1,115,589	1,169,693	1,105,297			64,396	54,1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2,50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4,587,032,000원)-기정(4,334,527,000원)	= 252,505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에 대한 내시 변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거주시설(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란치스꼬집) 3개소 운영 지원
2024	· 장애인거주시설(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란치스꼬집) 3개소 운영 지원
2025	· 장애인거주시설(가연마을, 예지원, 통진프란치스꼬집) 3개소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30,437	4,068,556	-	261,881	
2024	4,374,861	4,259,956	-	114,905	
2025	4,334,527	3,455,617	-	878,91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희연	전화	2218
-----	--------	-------------	-----	------------	----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보리수마을(승가로 89) 문수마을(월곶면 김포대로 2857-39)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단기간 돌봄 부담 경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과 가족지원체계 기능 회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49,420	765,920	719,470	0	0	46,450	16,500	
국비		0					0	
도비	74,942	76,592	71,947			4,645	1,650	
시비	674,478	689,328	647,523			41,805	14,8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45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765,920,000원)-기정(719,470,000원) =	46,45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참여, 장애인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에 대한 내시변경
-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5424(2025.6.3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0.10. 보리수마을 2022.11. 문수마을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1개소 운영 지원
2024	·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문수마을) 2개소 운영 지원
2025	·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문수마을) 2개소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5,742	357,748	-	177,994	
2024	749,420	702,694	-	46,726	
2025	719,470	585,487	-	133,98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희연	전화	2218
-----	--------	-------------	-----	------------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밀알사랑터[북변1로16번길 34(북변동, 산호A)] 행복한사람들[풍년로 19(사우동, 진흥A)]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가정식 주택내 공동생활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30,900	349,800	320,900	0	0	28,900	18,900	
국비		0					0	
도비	33,090	34,980	32,090			2,890	1,890	
시비	297,810	314,820	288,810			26,010	17,0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8,9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349,800,000원)-기정(320,900,000원) =	28,9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생활 운영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에 대한 내시변경
-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5424(2025.6.3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공동생활가정(밀알사랑터, 행복한사람들) 2개소 지원
2024	· 장애인공동생활가정(밀알사랑터, 행복한사람들) 2개소 지원
2025	· 장애인공동생활가정(밀알사랑터, 행복한사람들) 2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7,087	293,887	-	23,200	
2024	330,900	328,424	-	2,476	
2025	320,900	264,276	-	56,62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희연	전화	2218
-----	--------	-------------	-----	------------	----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개소		
사업목적	장애인 사회재활 증진 및 돌봄 부담 경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636,000	2,898,159	3,258,764	0	50,000	-410,605	262,159	
국비		0					0	
도비	263,600	289,816	325,876		5,000	-41,060	26,216	
시비	2,372,400	2,608,343	2,932,888		45,000	-369,545	235,94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0,605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위탁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경정(2,255,736,000원)-기정(2,666,341,000원)	= -410,605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통·폐합 운영으로 인한 1개소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 9. 2023. 9.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 운영 지원
202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 운영 지원
2025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소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98,410	1,952,365	-	446,045	
2024	2,636,000	2,130,665	-	505,335	
2025	3,308,764	2,404,574	-	904,19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8개소, 85명		
사업목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4,400	134,900	142,800	0	0	-7,900	500	
국비		0					0	
도비	13,440	13,490	14,280			-790	50	
시비	120,960	121,410	128,520			-7,110	4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900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경정(134,900,000원)-기정(142,800,000원)	= -7,9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예산증감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통·폐합 운영으로 인한 종사자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매월 25일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7개소 월 71명 지급
2024	· 8개소 월 84명 지급
2025	· 8개소 월 81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6,400	113,050	-	33,350	
2024	134,400	131,200	-	3,200	
2025	142,800	87,750	-	55,0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0(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장애 또는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감각통합 등 재활을 통한 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0,000	80,000	80,000	0	0	0	0	
국비		0					0	
도비	16,000	24,000	16,000			8,000	8,000	
시비	64,000	56,000	64,000			-8,000	-8,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종사자 인건비 경정(80,000,000원)-기정(80,000,000원)	= 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과 기능 향상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인지 등 전문적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화를 촉진하는 김포시장장애아동재활센터의 운영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내시비율 변경(도비 20% → 3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2.9.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장애아동재활센터 1개소 지원
2024	· 김포시장애아동재활센터 1개소 지원
2025	· 김포시장애아동재활센터 1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0,000	80,000	-	-	
2024	80,000	80,000	-	-	
2025	80,000	58,929	-	21,07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1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병역법	제31조 제5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15,040	1,310,400	1,411,200	0	0	-100,800	195,3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15,040	1,310,400	1,411,200			-100,800	195,3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800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	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봉급 : 경정(1,310,400,000원)-기정(1,411,200,000원)	= -100,80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98명→91명)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병무청 연간 군사훈련 소집계획 통보
 - 2025. 01. ~ 2025. 12. : 매월10일 봉급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회복지무요원 105명
2024	· 사회복지무요원 100명
2025	· 사회복지무요원 9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60,000	939,890	-	20,110	
2024	1,115,040	876,891	-	238,149	
2025	1,411,200	697,171	-	714,02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1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병역법		제31조 제5항, 제75조의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3,590	230,302	260,262	0	0	-29,960	36,71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3,590	230,302	260,262			-29,960	36,71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96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중식비 및 교통비 등 : 경정(230,302,000원)-기정(260,262,000원) =	-29,96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책임보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98명→91명)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2025. 12. : 매월10일 중식비, 교통비 지급
 - 2025. 02. : 연간 책임보험 갱신
 - 수시 : 신규소집자 근무복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회복지무요원 105명
2024	· 사회복지무요원 100명
2025	· 사회복지무요원 9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3,171	292,904	-	267	
2024	193,590	176,715	-	16,875	
2025	260,262	120,545	-	139,71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공무직 근로자)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1호, 제4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④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1항을 제외한 위의 사업들의 세부지원내용은 노인복지법령 및 경기도 노인보전복지사업 지침의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460	19,562	10,438	0	1,500	7,624	9,10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460	19,562	10,438		1,500	7,624	9,10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624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인건비 등 : 경정(19,562,000원)-기정(11,938,000원)	= 7,624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일자리 담당자(공무직 근로자)경력인정 및 호봉재확정에 따른 임금 부족분 지급
- 국도비 지원 외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예산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총무과-14363(2025.05.27.)호와 관련, 2025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중 경력인정 및 호봉재확정에 따라 급여,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 인상분, 퇴직적립금 부족분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 기본급 (12호봉 2,529,000원 → 2,604,870원 / 13호봉 2,552,820원 → 2,629,400원) 인상
 - 초과근무수당 단가 (20,980원 → 21,570원) 인상
 - 명절수당 (3,049,092원 → 3,140,562원) 인상
 - 퇴직적립금 부족분 반영 (5,783,000원) [2025.12월 말 퇴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공무원(무기계약)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 2025. 07. :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제출
 - 2025. 11. ~ 12. :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및 면접, 선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노인장애인과 전담인력(공무직) 1명 제수당 8,677천원 지급
2024	· 노인장애인과 전담인력(공무직) 1명 제수당 10,416천원 지급
2025	· 노인장애인과 전담인력(공무직) 1명 제수당 7,379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677	8,677	-	-	
2024	10,460	10,416	-	44	
2025	11,938	7,379	-	4,55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서지선	전화	220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생계급여(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보호시설 입소 수급자의 숙식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8,000	42,000	30,000	0	0	12,000	14,000	
국비	25,200	37,800	27,000			10,800	12,600	
도비	1,960	2,940	2,100			840	980	
시비	840	1,260	900			360	4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 생계급여 - 주·부식비, 피복비,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 경정(42,000,000원)-기정(30,000,000원)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의 주·부식비, 피복비 등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입소자 중 수급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비율 상승(월평균 '24년 7.1명 → '25년 9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5명/90건)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9명/86건)
202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4명/7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000	23,250	-	5,090	
2024	28,000	28,000	-	-	
2025	30,000	26,542	-	3,45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자립지원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000	35,000	30,000	0	0	5,000	10,000	
국비	25,000	24,500	21,000			3,500	-500	
도비		5,250	4,500			750	5,250	
시비		5,250	4,500			750	5,2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자립지원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 경정(35,000,000원)-기정(30,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및 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월세, 임차 보증금 등 주거지원, 자립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 지원 등)

□ 예산증감 사유

- '25년 하반기 퇴소예정자 자립지원금 지급
-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2207(2025.2.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지급 대상 퇴소자 발생 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자립지원금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5명) - 주택 임대차 보증금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7명 / 피해자 6, 동반아동 1) - 주택 임대차 보증금
202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6명 / 피해자 4, 동반아동 2) - 주택 임대차 보증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000	25,000	-	-	
2024	32,500	32,500	-	-	
2025	30,000	25,000	-	5,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가정폭력 피해자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000	15,550	12,000	0	2,500	1,050	3,550	
국비	8,400	10,885	8,400		1,750	735	2,485	
도비	1,800	2,333	1,800		375	158	533	
시비	1,800	2,332	1,800		375	157	53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50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 경정(15,550,000원)-기정(14,500,000원)	= 1,05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및 동반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7727(2025.5.1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1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2025.03.~2025.1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개별상담(42회), 집단상담(25회), 심신회복캠프(2회), 기타 치료프로그램(7회)
2024	○ 개별상담(35회), 집단상담(24회), 심신회복캠프(1회), 음악치료(2회)
2025	○ 개별상담(25회), 집단상담(16회), 심신회복캠프(1회), 음악치료(2회), 원예치료(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700	20,700	-	-	
2024	12,000	12,000	-	-	
2025	14,500	14,5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운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아이돌봄 지원(운영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가족센터(대곶)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맞벌이,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68,441	2,011,964	1,592,762	-17,392	0	436,594	643,523	
국비	957,907	1,401,122	1,114,932	-18,108		304,298	443,215	
도비	205,267	305,421	238,915	358		66,148	100,154	
시비	205,267	305,421	238,915	358		66,148	100,15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6,594	
아이돌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2,011,964,000원)-기정(1,575,370,000원) =	436,594	

□ 예산요구 사유

-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변경내시에 따른 운영비 증액 [경기도 가족정책과-8816(2025. 6. 27.)호]
- 정부지원금 중위소득 지원기준 완화(150% 이하 → 200% 이하)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서비스제공에 따른 예산 집행
 - 2025.01.~2025.12. :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금 사업비 예탁(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 제공 가구수 총 4,785가구(시간제 4,356가구, 종일제 100가구, 질병감염아동 329가구) ○ 누적 제공 아동수 총 7,398명(시간제 6,873명, 종일제 139명, 질병감염아동 386명)
2024	○ 누적 제공 가구수 총 3,368가구(시간제 3,081가구, 종일제 65가구, 질병감염아동 222가구) ○ 누적 제공 아동수 총 5,224명(시간제 4,916명, 종일제 83명, 질병감염아동 225명)
2025	○ 누적 제공 가구수 총 2,644가구(시간제 2,495가구, 종일제 42가구, 질병감염아동 107가구) ○ 누적 제공 아동수 총 4,203명(시간제 4,024명, 종일제 54명, 질병감염아동 12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82,103	1,231,097	-	151,006	
2024	1,368,441	1,268,359	-	100,082	
2025	1,575,370	944,381	-	630,98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복지7급 박세준	전화	5605
-----	-------	------------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해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652,760	5,241,160	5,066,160	0	0	175,000	588,400	
국비	3,722,208	4,192,928	4,052,928			140,000	470,720	
도비	465,276	524,116	506,616			17,500	58,840	
시비	465,276	524,116	506,616			17,500	58,8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5,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아동양육비 등 : 경정(5,241,160,000원)-기정(5,066,160,000원) =	175,0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자 수 '25. 1월 대비 '25. 7월말 기준 약 3.5%(3,511명 → 3,638명)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경기도 변경 가내시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11832(2025.08.2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급여명	누적인원(명)	월평균(명)	집행액(천원)
	합 계	18,869	1,658	3,722,549
	아동양육비(모자, 부자, 조손)	16,836	1,403	3,564,200
	추가아동양육비	1,940	162	149,700
	학용품비	93	93(연 1회)	8,649
2024	급여명	누적인원(명)	월평균(명)	집행액(천원)
	합 계	20,738	1,839	4,258,500
	아동양육비(모자, 부자, 조손)	18,608	1,551	4,095,410
	추가아동양육비	2,010	168	151,930
	학용품비	120	120(연 1회)	11,160
2025	급여명	누적인원(명)	월평균(명)	집행액(천원)
	합 계	14,413	2,000	3,236,241
	아동양육비(모자, 부자, 조손)	12,808	1,600	3,110,887
	추가아동양육비	1,377	172	104,150
	학용품비	228	228(연 1회)	21,204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61,640	3,722,549	-	339,091	
2024	4,652,760	4,258,500	-	394,260	
2025	5,066,160	3,236,241	-	1,829,91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행정8급 조선희	전화	2272
-----	-------	------------	-----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청소년부모 자녀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1,200	35,000	30,000	0	0	5,000	-6,200	
국비	20,600	17,500	15,000			2,500	-3,100	
도비	3,090	2,625	2,250			375	-465	
시비	17,510	14,875	12,750			2,125	-2,63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경정(35,000,000원) - 기정(30,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학업 및 취업 준비 등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의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청소년부모의 월 평균 자녀수 증가(10명 → 12명)에 따른 아동양육비 예산 증액
-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9919(2025. 7. 1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누적인원 : 95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명	8명	8명	8명	8명	8명	6명	8명	8명	8명	9명	9명
2024	○ 누적인원 : 138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명	9명	8명	10명	10명	12명	12명	13명	13명	14명	14명	15명
2025	○ 누적인원 : 99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명	14명	14명	14명	14명	13명	8명	8명	-	-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6	19,200	-	4,806	
2024	41,200	36,000	-	5,200	
2025	30,000	25,000	-	5,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김유재	담당자	행정8급 조선희	전화	227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본소)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 (통진분소)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4층 (풍무분소) 김포시 유현로 233, 201호
사업규모	3개소(본소1, 통진분소1, 풍무분소1)		
사업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해당조례	김포시 보육 조례	제29조 제4호
		제2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84,293	1,241,904	1,307,709	0	0	-65,805	157,61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84,293	1,241,904	1,307,709			-65,805	157,61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5,805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육아종합지원센터(통진분소) 운영 : 경정(70,999,000원) - 기정 (136,804,000원)	= -65,805	

□ 예산요구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김포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다양한 보육인프라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통진 분소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통진분소 계획대비 사업추진 지연 및 12월 개소 예정으로 운영비 감액

※ 2025년 제3회 추경 요구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 목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3회 추경	2025년 최종예산액
	관	항	목			
통진 분소 운영비 (민간위탁금)	분소(통진분소 운영비) 합계			136,804	-65,805	70,999
	사무비	합계(사무비)		118,949	-75,580	43,369
		인건비	소계	106,300	-85,058	21,242
			급여(총 5명)	78,532	-63,015	15,517
			보육전문 4호 (1명)	15,707	-11,380	4,327
			운영요원 1호 (4명)	62,825	-51,635	11,190
			제수당 및 기타경비	27,768	-22,043	5,725
		운영비	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12,649	9,478	22,127
	재산 조성비	합계(시설비)		0	10,000	10,000
		시설비	어린이안전설비(모서리보호대 등)	0	10,000	10,000
	사업비	합계(사업비)		17,855	-225	17,630
		가정양육지원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15,200	1,100	16,300
		홍보및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 제작비 등	2,655	-1,325	1,33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2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및 풍무 분소 운영
 - 2025. 3. ~ 5. : 통진 분소 재추진계획 수립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5. 6. : 통진 분소 설계·제작·설치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5. 11. : 통진 분소 설계·제작·설치 용역 준공
 - 2025. 12월 중 : 개소식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교직원교육 1,252명, 보육컨설팅 222회 - 가정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15,458건, 안전문화체험관 5,025명, 프로그램실 5,693명, 어린이소공연장 3,201명, 아이사랑놀이터 6,199명
2024	-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교직원교육 2,379명, 보육컨설팅 246회 - 가정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11,740건, 안전문화체험관 3,398명, 프로그램실 3,955명, 어린이소공연장 1,918명, 아이사랑놀이터 5,199명
2025	-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교직원교육 1,575명, 보육컨설팅 285회 - 가정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13,448건, 안전문화체험관 3,728명, 프로그램실 2,969명, 어린이소공연장 3,370명, 아이사랑놀이터 12,050명, 맘대로놀이터 2,28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66,237	942,810	-	23,427	
2024	1,084,293	1,047,974	-	36,319	
2025	1,307,709	1,161,155	-	146,554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686㎡	3회추경 요구액 (천원)	-65,805
부기명 (세부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통진분소) 운영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1로77 (북부보건센터 4층)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권미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원태	전화	5323
-----	-------	------------	-----	------------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68명		
사업목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651,586	16,261,178	14,855,690	0	0	1,405,488	-390,408	
국비	9,990,952	9,756,707	8,913,414			843,293	-234,245	
도비	4,662,444	4,553,130	4,159,593			393,537	-109,314	
시비	1,998,190	1,951,341	1,782,683			168,658	-46,84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5,48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 경정(2,028,590원*668명*12월)-기정(2,026,144원*611명*12월) =	1,405,488	

□ 예산요구 사유

-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611명 → 668명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개소수	57	7	64
2024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개소수	60	7	67
2025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개소수	62	7	6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344,447	14,344,382	-	65	
2024	16,651,586	16,651,219	-	367	
2025	14,855,690	12,656,487	-	2,199,20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6명		
사업목적	영아전담,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776,789	3,711,758	3,609,340	0	0	102,418	-65,031	
국비	2,266,073	2,227,055	2,165,603			61,452	-39,018	
도비	1,057,501	1,039,292	1,010,615			28,677	-18,209	
시비	453,215	445,411	433,122			12,289	-7,8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41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 경정(1,501,520원*206명*12월)-기정(1,432,280원*210명*12월) =	102,418	

□ 예산요구 사유

- 취약보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영아전담, 장애아전문/통합,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취약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11, 장애아통합 1 등) 지정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국도비 내시 변경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개소수	105	5	1	11	88
2024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개소수	117	5	1	12	99
2025	구 분	합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개소수 (명)	130 (206)	5 (43)	1 (17)	13 (93)	111 (5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94,238	3,386,927	-	7,311	
2024	3,776,789	3,776,748	-	41	
2025	3,609,340	2,757,525	-	851,81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22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 학습, 놀이 등 보조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674,000	9,772,258	9,550,708	0	0	221,550	98,258	
국비	5,804,400	5,863,354	5,730,424			132,930	58,954	
도비	2,708,720	2,736,232	2,674,198			62,034	27,512	
시비	1,160,880	1,172,672	1,146,086			26,586	11,79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1,55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보조교사 인건비 : 경정(1,127,915원*722명*12월)-기정(1,127,330원*706명*12월)	≒ 221,55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놀이·학습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반영(706명 → 722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보조교사 :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54명, 1,099천원/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311명, 1,099천원/인
2024	· 보조교사 :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52명, 1,128천원/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350명, 1,128천원/인
2025	· 보조교사 : 전체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32명, 1,161천원/인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354명, 1,161천원/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80,000	9,042,444	-	37,556	
2024	9,674,000	9,649,149	-	24,851	
2025	9,550,708	6,351,520	-	3,199,18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4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85,000	1,516,073	1,447,528	0	0	68,545	31,073	
국비	891,000	909,642	868,516			41,126	18,642	
도비	415,800	424,500	405,308			19,192	8,700	
시비	178,200	181,931	173,704			8,227	3,73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54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대체교사 인건비 : 경정(2,339,620원*54명*12월)-기정(2,365,240원*51명*12월) =	68,545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경조사,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반영(51명 → 54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합 계	2,650	※ 51명 인건비 월 2,342천원/인
	연 가	2,012	
	병 가	554	
	기 타	84	
2024	구 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합 계	3,406	※ 65명 인건비 월 2,401천원/인
	연 가	3,080	
	병 가	201	
	기 타	125	
2025	구 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합 계	1,424	※ 60명 인건비 월 2,473천원/인
	연 가	1,233	
	병 가	127	
	기 타	64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00,000	1,363,600	-	36,400	
2024	1,485,000	1,484,921	-	79	
2025	1,447,528	1,040,418	-	407,11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68일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7,100	85,650	87,100	0	0	-1,450	-1,450	
국비		0					0	
도비	17,420	25,695	26,130			-435	8,275	
시비	69,680	59,955	60,970			-1,015	-9,7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50	
대체인력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보육교사 : 경정(96,000원*768일)-기정(96,000원*786일) =	-1,45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경조사,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반영(786일→768일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합계	854	※보육교사 일 87,140원/인, 조리원 일 74,000원/인
	연 가	703	
	병 가	125	
	기 타	26	
2024	구 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합계	1,039	※보육교사 일 93,690원/인, 조리원 일 79,000원/인
	연 가	951	
	병 가	61	
	기 타	27	
2025	구 분	지원일수	지원금액
	합계	809	※보육교사 일 96,500원/인, 조리원 일 80,240원/인
	연 가	752	
	병 가	40	
	기 타	1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5,000	63,073	-	11,927	
2024	87,100	79,228	-	7,872	
2025	87,100	52,179	-	34,92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기간	2025.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개반(독립반), 13개반(통합반)		
사업목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 또는 비상 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35,632	284,920	319,379	-94,139	0	59,680	49,288	
국비	117,816	142,460	159,689	-47,069		29,840	24,644	
도비	58,908	71,230	79,845	-23,535		14,920	12,322	
시비	58,908	71,230	79,845	-23,535		14,920	12,32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9,68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및 운영비 : 경정(1,484,000원*16개반*12월)-기정(1,340,720원*14개반*12월)	59,680	

□ 예산요구 사유

- 유동적인 시간제 보육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 (13개소 14개반 → 15개소 16개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4개반, 통합반 5개반 운영
202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0개반 운영
2025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1개반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7,372	194,749	-	2,623	
2024	235,632	188,905	-	46,727	
2025	225,240	152,044	-	73,19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2개소		
사업목적	취업부모의 야간연장 보육욕구 충족을 통하여 직장가정생활의 안정적 양립 추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해당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73,600	355,667	384,000	0	0	-28,333	82,067	
국비		0						
도비	54,720	106,700	115,200			-8,500	51,980	
시비	218,880	248,967	268,800			-19,833	30,08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8,333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400,000원*72개소*12월)-기정(400,000원*80개소*12개월) =	-28,333	

□ 예산요구 사유

- 취업부모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양육가정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는 야간연장보육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반영(80개소→72개소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52개소, 월 400천원
2024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64개소, 월 400천원
2025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70개소, 월 4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9,600	237,600	-	12,000	
2024	273,600	273,600	-	-	
2025	384,000	206,800	-	177,2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337	21,820	17,249	0	0	4,571	483	
국비	12,804	13,092	10,349			2,743	288	
도비	5,962	6,110	4,830			1,280	148	
시비	2,571	2,618	2,070			548	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71	
어린이집 운영 지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259,770원*7개소*12월)-기정(205,350원*7개소*12월) =	4,571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개소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월 200~280천원 운영비 차등 지원
-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육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2024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2025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858	20,680	-	178	
2024	21,337	20,840	-	497	
2025	17,249	10,700	-	6,54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위생 관리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0개소		
사업목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호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05,200	211,428	216,000	0	0	-4,572	6,228	
국비	123,120	126,857	129,600			-2,743	3,737	
도비	57,456	59,200	60,480			-1,280	1,744	
시비	24,624	25,371	25,920			-549	7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72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위생 관리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급식위생관리비 : 경정(293,650원*60개소 *12월) - 기정(300,000원*60개소 *12월)	= -4,572	

□ 예산요구 사유

- 민간어린이집 급식소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영유아 정원 및 교직원포함 50인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개소당 300천원/월	47개소/월평균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영유아 정원 및 교직원포함 50인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개소당 300천원/월	39개소/월평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5,200	179,700	-	25,500	
2025	216,000	98,700	-	117,3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에 적절한 보육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000	4,000	6,000	0	0	-2,000	-2,000	
국비		0					0	
도비	1,200	1,200	1,800			-600	0	
시비	4,800	2,800	4,200			-1,400	-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교재교구비 : 경정(전문 4,000천원*1개소*1회) -기정(전문 4,000천원, 통합 2,000천원*1개소*1회)	-2,000	

□ 예산요구 사유

-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기준 미달(장애반 3개반 이상)로 인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시설	교재교구비 : 2,000천원/년	1개소/년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시설	교재교구비 : 4,000천원/년	1개소/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시설 (장애반 3개 이상시 지원)	교재교구비 : 2,000천원/년	1개소/년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시설	교재교구비 : 4,000천원/년	1개소/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시설 (장애반 3개 이상시 지원)	교재교구비 : 2,000천원/년	0개소/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2,000	-	-	
2024	6,000	6,000	-	-	
2025	6,000	4,000	-	2,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25
-----	-------	------------	-----	------------	----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51개소		
사업목적	영아 발달특성을 고려한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44,200	435,780	340,560	0	0	95,220	-108,420	
국비		0					0	
도비	108,840	130,734	102,168			28,566	21,894	
시비	435,360	305,046	238,392			66,654	-130,31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5,220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경정(103,460원*351개소*12월)-기정(80,850원*351개소*12월)	95,22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아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5년 7월부터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가정·협동어린이집 : 100,000원 → 150,000원, 그 외 어린이집 : 60,000원 → 10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6.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2025. 7. ~ 2025. 12. : 확대 지원금 반영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총 계		353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158
	가정·협동어린이집	월15만원/개소	195
2024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총 계		343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161
	가정·협동어린이집	월15만원/개소	182
2025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총 계		331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월6만원/개소	164
	가정·협동어린이집	월10만원/개소	17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8,000	552,900	-	95,100	
2024	544,200	520,000	-	24,200	
2025	340,560	199,430	-	141,13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310명		
사업목적	도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0~2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25,840	637,200	0	484,320	0	152,880	111,360	
국비		0					0	
도비	525,840	637,200		484,320		152,880	111,36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2,880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2세)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10,000원*5,310명*12월)-기정(10,000원*4,036명*12월) =	152,880	

□ 예산요구 사유

-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보육서비스 제고
- 현원 40인 미만 정부 미지원 시설 → 현원 50인 이하 시설 지원 확대
- 확대 시설 대상 지원금 소급(1~6월)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4,036명 → 5,310명 사업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예정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6.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 2025. 7. ~ 2025. 12. : 지원 확대에 따라 소급포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월평균 어린이집 225개소 지원
2025	월평균 어린이집 210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25,840	435,000	-	90,840	
2025	484,320	393,990	-	90,33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부모급여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584명		
사업목적	영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및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제2조제1호,제2호
	해당조례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9,895,841	34,421,028	35,181,158	-57,661	0	-702,469	-15,474,813	
국비	37,421,881	25,815,771	26,385,868	-43,245		-526,852	-11,606,110	
도비	8,731,772	6,023,680	6,156,703	-10,091		-122,932	-2,708,092	
시비	3,742,188	2,581,577	2,638,587	-4,325		-52,685	-1,160,61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2,469	
부모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부모급여 : 경정(625,000원*4,584명*12월)-기정(749,120원*4,677명*12월) =	-702,469	

☐ 예산요구 사유

- 영아(0~23개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반영(4,677명 → 4,584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부모급여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3,771명
	0~11개월	700천원/월	2,819명
	12~23개월	350천원/월	952명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3,857명
	0~11개월	1,000천원/월	2,879명
	12~23개월	500천원/월	978명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합 계		3,163명
	0~11개월	1,000천원/월	2,277명
	12~23개월	500천원/월	88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780,000	29,778,950	-	1,050	
2024	49,895,841	49,833,541	-	62,300	
2025	35,123,497	24,568,616	-	10,554,88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9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209명		
사업목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
제34조(무상보육)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9,800,722	61,770,618	60,890,498	1,111,010	0	-230,890	1,969,896	
국비	44,850,542	46,327,964	45,667,874	833,257		-173,167	1,477,422	
도비	10,465,126	10,809,858	10,655,837	194,427		-40,406	344,732	
시비	4,485,054	4,632,796	4,566,787	83,326		-17,317	147,74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0,890	
영유아보육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영유아보육료 : 경정(714,000원*7,209명*12월)-기정(692,000원*7,456명*12월)	≒ -230,890	

□ 예산요구 사유

-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7,456명 → 7,209명 사업량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7,506명/월	599천원	326천원	221천원	5,950명/월
2024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6,807명/월	629천원	342천원	232천원	6,267명/월
2025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1세	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6,903명/월	629천원	342천원	232천원	6,031명/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213,926	63,213,926	-	-	
2024	59,800,722	59,800,722	-	-	
2025	62,001,508	39,115,597	-	22,885,91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320명		
사업목적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제 23조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437,285	14,454,663	15,678,271	-383,608	0	-840,000	-982,622	
국비		0					0	
도비	15,437,285	14,454,663	15,678,271	-383,608		-840,000	-982,622	
시비		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0,000	
누리과정 운영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누리과정 운영비 : 경정(362,810원*3,320명*12월)-기정(362,810원*3,513명*12월)	= -840,00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보장 및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3,513명 → 3,32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누리과정 운영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4,560명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4,210명
	누리과정 운영비	월 70천원/인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350명
2024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3,913명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3,605명
	누리과정 운영비	월 70천원/인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308명
2025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 계		3,246명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인	2,950명
	누리과정 운영비	월 70천원/인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60천원/인	29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719,536	18,719,536	-	-	
2024	15,437,285	15,437,285	-	-	
2025	15,294,663	8,093,037	-	7,201,62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379명		
사업목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해당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711,875	1,925,031	2,158,361	0	0	-233,330	-786,844	
국비		0					0	
도비	542,375	577,508	647,508			-70,000	35,133	
시비	2,169,500	1,347,523	1,510,853			-163,330	-821,97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3,330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 경정(116,330원*1,379명*12월)-기정(95,370원*1,886명*12월)	≒ -233,330	

□ 예산요구 사유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1,886명 → 1,379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3~5세 아동	월 102천원 ~ 128천원/인	2,387명/월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3~5세 아동	월 102천원 ~ 128천원/인	1,792명/월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3~5세 아동	월 102천원 ~ 128천원/인	1,238명/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38,575	2,938,575	-	-	
2024	2,711,875	2,180,000	-	531,875	
2025	2,158,361	930,000	-	1,228,36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65명		
사업목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차별없는 보육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4호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88,000	384,250	529,200	0	0	-144,950	96,250	
국비		0				0	0	
도비	57,600	115,275	158,760			-43,485	57,675	
시비	230,400	268,975	370,440			-101,465	38,57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950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육료 : 경정(120,800원*265명*12월)-기정(150,000원*294명*12월)	≒ -144,95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료 일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외국인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100천원 → 150천원]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복지부-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으로 확대 인상분 [50천원 / 7개월분(1~7월)]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0천원/인	월 평균 190명
2024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0천원/인	월 평균 240명
2025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100천원/인	월 평균 25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300	210,300	-	-	
2024	288,000	288,000	-	-	
2025	529,200	210,000	-	319,2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50명		
사업목적	내·외국인 아동의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제①항 제7호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90,000	540,000	360,000	0	0	18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90,000	540,000	360,000			18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보육료 : 경정(180,000원*250명*12월)-기정(130,000원*230명*12월)	≒ 180,000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해당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외국인자녀 보육[도] 확대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외국인아동[시] 보육료 본예산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나, 외국인자녀[도] 보육료 지원 금액 감액에 따라 외국인아동[시] 보육료 지원 금액 증액 편성
 - 사유: 복지부 - 경기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 외국인보육료: 총280천원[김포시: 130천원 → 180천원, 경기도: 150천원 → 100천원]
- 김포시 내 외국인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보육료 지원 금액 증액[230명 → 25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인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80천원/1인(1월~3월 영아(만0세~만2세)) ·180천원/1인(1월~3월 유아(만3세~만5세)) ·180천원/1인(4월~ 영유아(만0세~만5세))	85개소(175명)
2024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인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80천원/1인(만0세~만5세)	92개소(230명)
2025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개소(인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80천원/1인(만0세~만5세)	89개소(25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0,000	430,000	-	20,000	
2024	490,000	490,000	-	-	
2025	360,000	300,000	-	6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8
-----	-------	------------	-----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사업목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전한 성장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55,764	350,076	327,996	0	0	22,080	-5,688	
국비	177,882	175,038	163,998			11,040	-2,844	
도비	88,941	87,519	81,999			5,520	-1,422	
시비	88,941	87,519	81,999			5,520	-1,42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8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경정(1,378,650원*20개소*12월) - 기정(1,328,650원*20개소*12월) =	12,000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지원 경정(228,580원*7개소*12월) - 기정(190,000원*4개소*12월) =	10,08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기본운영비 교부로 인한 변경내시 증액
- 2개소 이상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추가지원 센터(법인명): 김포(실로원사회적협동조합), 중봉(실로원사회적협동조합), 꽃가람(어깨동무사회적협동조합)

□ 예산증감 사유

- 냉난방비 및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법인시설 4개소→7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5.01. ~ 2025.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20개소 운영비 지원 - 도시 30인 이상 2개소 - 읍면 29인 이하 3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 읍면 19인 이하 8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 19인이하 : 200,000원*2개소 - 29인이하 : 250,000원*1개소
2024	· 총 20개소 운영비 지원 - 읍면 30인 이상 2개소, 도시 30인 이상 2개소 - 읍면 29인 이하 1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 읍면 19인 이하 8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 19인이하 : 200,000원*2개소 - 29인이하 : 250,000원*2개소
2025	· 총 20개소 운영비 지원 - 읍면 30인 이상 2개소, 도시 30인 이상 2개소 - 읍면 29인 이하 1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 읍면 19인 이하 8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 19인이하 : 200,000원*3개소 - 29인이하 : 250,000원*4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6,876	321,918	-	14,958	
2024	355,764	341,837	-	13,927	
2025	327,996	261,786	-	66,21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윤아	전화	5592
-----	-------	------------	-----	------------	----	------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7명		
사업목적	지역아동센터 파견 기간제 아동복지교사의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항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보조인력(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등) 인건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350	0	2,025	0	0	-2,025	-4,3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350	0	2,025			-2,025	-4,3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25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경정(0원)-기정(2,025,000원)	= -2,025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의 명절휴가비 지원
- 돌봄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기초학습, 외국어, 독서지도, 예체능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추석) 지급 기준 미충족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7명 명절휴가비 지급(설/추석)
2024	-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7명 명절휴가비 지급(추석)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50	3,900	-	450	
2024	4,350	1,875	-	2,475	
2025	2,025	-	-	2,02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나연	전화	5529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돌봄센터 22개소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8,000	276,000	264,000	0	0	12,000	28,000	
국비	124,000	138,000	132,000			6,000	14,000	
도비	62,000	69,000	66,000			3,000	7,000	
시비	62,000	69,000	66,000			3,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경정(1,045,500원*22개소*12월) - 기정(1,000,000원*22개소*12월)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동절기 난방비(2개월) 및 하절기 냉방비(2개월) 운영지원에 따른 변경내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3.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총 17개소)
2024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20개소)
2025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총 22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6,000	197,835	-	18,165	
2024	248,000	232,123	-	15,877	
2025	264,000	209,400	-	54,6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명신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돌봄센터 22개소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98,770	360,000	504,813	0	0	-144,813	61,230	
국비		0					0	
도비	89,631	108,000	151,444			-43,444	18,369	
시비	209,139	252,000	353,369			-101,369	42,86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813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경정(681,810원*22개소*2명*12월) - 기정(914,560원*23개소*2명*12월) =	-144,813	

□ 예산요구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센터장 및 돌봄교사)에 대한 근무경력(호봉) 및 연2회 명절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종사자 수 및 근무경력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감액(종사자 수 46명 → 44명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3.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분기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돌봄센터 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 34명 지원
2024	- 돌봄센터 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 42명 지원
2025	- 돌봄센터 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 46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6,185	90,360	-	115,825	
2024	298,770	268,728	-	30,042	
2025	504,813	266,264	-	238,54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명신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62명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4. 1.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2,000	83,900	91,200	0	0	-7,300	11,900	
국비		0					0	
도비	21,600	25,170	27,360			-2,190	3,570	
시비	50,400	58,730	63,840			-5,110	8,3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300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112,760원*62명*12월) -기정(116,920원*65명*12월) =	-7,300	

□ 예산요구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근무연수(경력) 등 재직상태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원

※ 2025년 설치 및 개소 센터의 종사자는 익년도부터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지급대상자 감소(종사자 수 65명→62명)에 따른 변경내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3.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매월 25일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돌봄센터 종사자 48명 지원
2024	- 돌봄센터 종사자 52명 지원
2025	- 돌봄센터 종사자 62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500	61,850	-	2,650	
2024	72,000	68,700	-	3,300	
2025	91,200	54,650	-	36,5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명신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42명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4. 1.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000	25,300	26,400	0	0	-1,100	4,300	
국비		0					0	
도비	21,000	25,300	26,400			-1,100	4,3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경정(50,000원*42명*12월) - 기정(50,000원*44명*12월) =	-1,100	

□ 예산요구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2025년 설치 및 개소 센터의 종사자는 익년도부터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 감소(44명→42명)에 따른 변경내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3.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돌봄센터 종사자 32명 지원
2024	- 돌봄센터 종사자 35명 지원
2025	- 돌봄센터 종사자 42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800	19,100	-	700	
2024	21,000	21,000	-	-	
2025	26,400	16,800	-	9,6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명신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돌봄센터 22개소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4,844	79,650	122,040	0	0	-42,390	4,806	
국비		0					0	
도비	22,453	23,895	36,612			-12,717	1,442	
시비	52,391	55,755	85,428			-29,673	3,36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390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경정(4,500원*14명*22개소*57일) - 기정(4,500원*20명*23개소*60일) =	-42,390	

□ 예산요구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대상 중 방학중 중식 제공(1식 단가 9,000원, 자부담 4,500원)
- 아동 식사예절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행복밥상 신청아동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감액(신청아동 460명→308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3.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추진(겨울방학)
- 2025. 7 ~ 8. :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추진(여름방학)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밥상 이용 아동 398명 지원
2025	-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밥상 이용 아동 36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4,844	45,753	-	29,091	
2025	122,040	72,151	-	49,88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명신	전화	5586
-----	-------	------------	-----	------------	----	------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거점아동돌봄센터 1개소(양도점)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5개소		
사업목적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양육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초등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3,686	65,100	60,960	0	0	4,140	21,414	
국비		0					0	
도비	21,843	32,550	30,480			2,070	10,707	
시비	21,843	32,550	30,480			2,070	10,70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40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자체/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경정(15,000원*25시간*12월) - 기정(15,000원*10시간*12월) = 2,700 · 제공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부담금 경정(120,000원*12월) - 기정(0원*12월) = 1,440		

□ 예산요구 사유

-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시 언제나 이용 가능한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 24년 시행 후 매칭건수(매칭목표건수:55건→129건)증가에 따른 매칭기관(제공기관) 운영비 지급 부족

□ 예산증감 사유

- 거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추가지원 편성으로 예산 증액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부담 부담금 미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3.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24년 하반기('24년 7월부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시행) - 매칭건수: 55건, 총이용시간: 167시간
2025	·'25년 상반기 - 매칭건수: 57건, 총이용시간: 178시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3,686	28,893	-	14,793	
2025	60,960	60,960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명신	전화	5586
-----	-------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아동 1,842명		
사업목적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초기비용 저축 및 사회진출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18,329	1,185,047	1,585,241	-22,228	0	-377,966	-433,282	
국비	1,132,830	829,523	1,109,669	-15,560		-264,586	-303,307	
도비	72,825	53,329	71,336	-1,000		-17,007	-19,496	
시비	412,674	302,195	404,236	-5,668		-96,373	-110,47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7,966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정부지원금 경정(98,753,920원*12월) - 기정(130,251,090원*12월) =	-377,966	

□ 예산요구 사유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 만 18세미만까지 최대 월10만원 한도 1:2매칭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매칭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창업·주거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 및 감액(2,569명→1,842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대상자 가입안내
 - 2025. 1. ~ 12. : 매월 초 아동의 적립액에 따라 1:2 정부지원매칭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452명 (보호대상아동: 94명, 가정복귀: 3명, 기초수급가정: 355명) 정부지원금 매칭
2024	- 1,106명 (보호대상아동: 98명, 가정복귀: 7명, 기초수급가정: 1,001명) 정부지원금 매칭
2025	- 1,352명 (보호대상아동: 97명, 가정복귀: 6명, 기초수급가정: 1,141명, 차상위계층 108명) 정부지원금 매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8,432	448,684	-	109,748	
2024	1,618,329	820,966	-	797,363	
2025	1,563,013	729,638	-	833,37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나연	전화	5529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지오프라자 804~806호)
사업규모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사업목적	피해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가족기능 회복 등 재학대 위험 감소를 위한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5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26,276	845,806	722,932	122,674	0	200	19,530	
국비	413,138	422,903	361,466	61,337	0	100	9,765	
도비	206,569	211,451	180,733	30,668	0	50	4,882	
시비	206,569	211,452	180,733	30,669	0	50	4,88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 845,806,000원 - (기정) 845,606,000원 【냉방비 지원 : 100,000원*2월*1개소】	= 2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전기료 인상 등 폭염대비 냉방비 활용 운영비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 변경내시 통보

[경기도 아동돌봄과-14932(2025.06.2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	-	-	-	-	-	-	2022.03.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급
 - 2025. 1. ~ 12. :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급(643,586천원)
2024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급(793,780천원)
2025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급(665,25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7,109	643,586	-	23,523	
2024	826,276	793,780	-	32,496	
2025	845,606	665,254	-	180,35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문지현	전화	2263
-----	-------	------------	-----	------------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사업목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복귀를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96,788	517,800	517,400	0	0	400	21,012	
국비	198,712	207,118	206,958	0	0	160	8,406	
도비	149,038	155,341	155,221	0	0	120	6,303	
시비	149,038	155,341	155,221	0	0	120	6,30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 경정(517,800,000원) - 기정(517,400,000원) = 【냉방비 지원 : 100,000원*2월*2개소】	4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전기료 인상 등 폭염대비 냉방비 활용 운영비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 2025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사업(국비,지원) 변경내시 및 부담지시서 통보

[경기도 아동돌봄과-14212(2025.06.17.)]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3.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급
 - 2025. 1. ~ 12. :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개소('23년 11월 1일)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247,571천원)
2024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456,707천원)
2025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388,0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4,568	247,571	-	226,997	
2024	496,788	456,707	-	40,081	
2025	517,400	388,050	-	129,3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세영	전화	5534
-----	-------	------------	-----	------------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기간	2025.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그룹홈 4개소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62,976	584,912	581,712	0	2,400	800	21,936	
국비	225,190	233,964	232,685		960	319	8,774	
도비	168,893	175,474	174,513		720	241	6,581	
시비	168,893	175,474	174,514		720	240	6,58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경정(584,912,000원) - 기정(584,112,000원) · [냉방비 : 100,000원*2월*4개소]	= 8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전기료 인상 등 폭염대비 냉방비 활용 운영비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변경내시 및 부담지시서 통보

[경기도 아동돌봄과-14472(2025.06.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그룹홈 4개소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급
 - 2025. 1. ~ 12. :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인건비, 운영비 5개소 지원(소풍, 다움, 가온길, 드리머, 은빛마을) ※ 가온길 폐지(2023.10.31.)
2024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2025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9,143	486,564	-	72,579	
2024	562,976	562,974	-	2	
2025	584,112	422,011	-	162,10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태혁	전화	2263
-----	-------	------------	-----	------------	----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장애입양아동 2명		
사업목적	장애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724	19,209	9,628	0	0	9,581	5,485	
국비	9,607	13,446	6,740			6,706	3,839	
도비	618	864	433			431	246	
시비	3,499	4,899	2,455			2,444	1,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581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양육수당 : 경정(634,000원*2명*12월)-기정(634,000원*1명*12월) = 7,608 · 의 료 비 : 경정(1,996,500원*2명)-기정(2,020,000원*1명) = 1,973		

□ 예산요구 사유

- 만18세 미만의 장애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장애입양 아동 1명 증가로 증액 (1명 → 2명)
- ※ 2025년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양육수당) 변경내시 알림(1차)
[경기도 아동돌봄과-11338(2025.05.0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매월 20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장애입양 아동 2명 지원(24년 신규 사업)
2025	- 장애입양 아동 2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3	-	-	-	-	
2024	13,724	13,292	-	432	
2025	9,628	9,390	-	23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위탁아동 2명				
사업목적	전문위탁가정(만2세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대상 가정형 보호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9,000	17,000	36,000	-6,000	0	-13,000	-22,000	
국비	27,300	11,900	25,200	-4,200		-9,100	-15,400	
도비	1,755	765	1,620	-270		-585	-990	
시비	9,945	4,335	9,180	-1,530		-3,315	-5,6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전문아동보호비 : 경정(1,000,000원*17개월)-기정(1,000,000원*30개월)	= -13,000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위탁가정(만2세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전문적 보호필요 아동이 가정위탁 또는 일시위탁으로 보호조치 되었을 시 양육보조금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세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의 연령도래에 따른 위탁가정 감소(3가구→2가구)로 인한 예산 감액
 ※ 2025년 가정위탁아동지원(국비) 전문아동보호비 변경내시 통보
 [경기도 아동돌봄과-13046(2025.05.28.)]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매월 20일 전문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문가정위탁아동 1명 지원
2024	- 전문가정위탁아동 3명 지원
2025	- 전문가정위탁아동 2명 지원(25년 6월 1명 중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	32,000	-	4,000	
2024	39,000	27,500	-	11,500	
2025	30,000	12,500	-	17,5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운영비)(자체)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68번길 37, 1층
사업규모	14개 읍면동, 김포시 전 지역 취약계층 아동 283명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법령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3,877	86,624	61,731	0	0	24,893	42,74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3,877	86,624	61,731			24,893	42,7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893	
인력운영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인건비 : 경정(600,000원*5명*12월) -기정(284,900원*5명*12월)	= 18,906	
		· 임금협약금 : 경정(120,617원*5명*12월) -기정(100,000원*5명*12월)	= 1,237	
		· 연차유급휴가수당 : 경정(118,400원*5명*10일) -기정(113,400*5명*10일)	= 250	
		· 통합사례관리사 퇴직금 : 경정(10,000,000원*1명) -기정(7,000,000원*1명)	= 3,000	
		· 정년퇴직자 위로 여행비 : 1,500,000원*1명	1,500	

□ 예산요구 사유

- 아동 통합 사례 관리자 인건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 관련, 국비 기준 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시 부담금 반영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상승, 임금협약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정년퇴직자 퇴직금 등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2. 07. : 드림스타트 개소 (통진읍사무소 내)
 - 2012. 10. :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양촌읍 노인복지회관 내)
 - 2013. 02. :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통진읍, 양촌읍 관리)
 - 2015. 03. : 3개면(대곶, 월곶, 하성) 확대 관리
 - 2016. 03. : 김포시 전지역 사례관리 확대
 - 2018. 04.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취약계층 아동 (0세~만12세) 1,440명 중 352명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양육자 힐링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미술치료, 도서지원, 방송댄스 등) 운영 - 부모교육(부모마음 코칭교육), 영양교육, 가족문화체험활동(도자기 공예, 베이킹 클래스, 응급처치교육, 워터파크, 영화관람 등). 동병하치(한방치료), 안경제작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24	- 김포시 취약계층 아동 (0세~만12세) 1,373명 중 325명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양육자 힐링 프로그램, 캘리 그라피, 미술치료, 도서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 학습지 지원 등) 운영 - 부모교육(부모마음 코칭교육), 영양교육, 가족문화체험활동(도자기 공예, 베이킹 클래스, 응급처치교육, 워터파크, 영화관람 등). 동병하치(한방치료), 안경제작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25	- 김포시 취약계층 아동 (0세~만12세) 1,026명 중 283명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양육자 힐링 프로그램, 미술치료, 도서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 학습지 지원 등) 운영 - 부모교육(부모마음 코칭교육), 영양교육, 동병하치(한방치료), 안경제작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1일 드림체험활동, 한방치료 사업, 겨울/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519	41,934	-	585	
2024	43,877	35,727	-	8,150	
2025	61,731	42,357	-	19,37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장 남혜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강민정	전화	5600
-----	-------	-------------	-----	------------	----	------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의 통합서비스관리 강화 및 위기아동 적극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13조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572	20,874	17,625	0	0	3,249	4,30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572	20,874	17,625			3,249	4,30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49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 요원 지원) (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 경정(13,674,000원) - 기정(10,425,000원) =	3,249	

□ 예산요구 사유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필요 서비스 적시 제공 등 위기 아동 적극 보호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김포시 공무원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3% 인상
 - 업무지원직 → 사회서비스직으로 임금테이블 변경
 - 2025년 가족수당 인상(14만원 → 17만원)
-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함에 따라 국비 초과분 예산 편성
- ※ 2025년 공무원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및 행정사항 안내[총무과-14363(2025.5.27.)]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지원
2024	-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지원
2025	-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484	6,169	-	3,315	'2203~'2302 육아휴직
2024	16,572	15,338	-	1,234	
2025	17,625	4,893	-	12,73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9급 민가희	전화	5337
-----	-------	------------	-----	------------	----	------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2. 28.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사업목적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50	1,900	2,200	0	0	-300	3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50	1,900	2,200	0	0	-300	3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	
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경정(100,000원*9명)-가정(100,000원*12명) =	-300	

□ 예산요구 사유

- 제8기('23~'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배부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회 1회 개최(자문, 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추진완료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김포시의회 보고 및 경기도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제8기('23.~'26.)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제8기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출, 책자 배부
2024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책자 배부
2025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책자 배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703	31,617	-	4,086	
2024	1,550	1,550	-	-	
2025	2,200	1,900	-	3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6급 최숙경	전화	4003
-----	-------	------------	-----	----------	----	------

구내식당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보건소 본소 근무직원		
사업목적	내부 식당 운영으로 직원 복리후생 도모 및 질적 업무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2,280	87,127	83,057	0	0	4,070	24,84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2,280	87,127	83,057	0	0	4,070	24,8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70	
구내식당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영양사 대체인력 퇴직금 : 2,155,000원*1명	=	2,155
		· 급식실 전담인력 퇴직금 : 1,915,000원*1명	=	1,915

□ 예산요구 사유

- 본예산 편성 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른 퇴직금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퇴직금 지급 기간제근로자 2명분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구내식당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드덕트 청소
 - 2025.02. : 월간 구내식당 운영 결산 보고, 주방타일 공사
 - 2025.05. ~ 2025.11. :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개최(상반기·하반기)
 - 2025.12.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식당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인력현황 : 4명(영양사 1/ 조리사 1/ 조리원 2) · 운영식수 : 34,652식(일 평균 139식)
2024	· 인력현황 : 4명 (영양사 1/ 조리사 1/조리원 2) · 운영식수 : 33,471식(일 평균 136식)
2025	· 인력현황 : 4명 (영양사 1/ 조리사 1/조리원 2) · 운영식수 : 20,551식(일 평균 135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035	49,709	-	4,326	
2024	62,280	57,351	-	4,927	
2025	83,057	48,297	-	34,76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7급 신지혜	전화	4004
-----	-------	------------	-----	----------	----	------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274번길 20 외
사업규모	보건지소 5개소		
사업목적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5조의2(공중보건역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 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공중보건역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해당조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2조제1항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보건지소를 두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910	88,927	82,427	0	21,000	-14,500	38,01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910	88,927	82,427	0	21,000	-14,500	38,01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500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공중보건역사 관사 월세 : 경정(500,000원*12월*3개소) - 기정(500,000원*12월*3개소+500,000원*9월*1개소)	= -4,500	
	406-01 기타자본이전	· 공중보건역사 관사 보증금 : 경정(5,000,000원*2개소) - 기정(5,000,000원*4개소)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공중보건역사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역사에 대한 주거시설 및 주거편의 등 제공 의무화

2025년 공중보건역사제도 운영지침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실제 근무지로부터 근접거리에 위치한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한 주거시설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공중보건 의사 1명 감배치(7명→6명)로 관사 1개소 월세 감액
- 2024년 기존 관사 계약연장 및 공중보건 의사 감배치에 따른 2개소 관사 보증금 감액
- 관사 이용 현황 : 관사(3명), 임대(3명)

연번	구분	복무기간	근무부서	위치 및기간	비 고
1	임대	'23.04.10.~'26.04.09.	북부보건센터(치과)	통진읍('24.4.15.~'25.4.14.) ('25.4.15~'26.4.14.)	계약연장
2	임대	'24.04.08.~'27.04.07.	북부보건센터(한 의과)	통진읍('25.4.14.~'26.4.13.)	신규
3	임대	'24.04.08.~'27.04.07.	보건사업과(한 의과)	풍무동('25.4.22.~'26.4.21.)	신규
4	관사	'23.04.10.~'26.04.09.	월곶면보건지소(의과)	월곶지소	
5	관사	'23.04.10.~'26.04.09.	보건사업과(치과)	고촌지소	
6	관사	'24.04.08.~'27.04.07.	양촌읍보건지소(한 의과)	양촌지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보건지소 운영
 - 2025. 04.: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공중보건 의사 관사 임대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곶보건지소, 하성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관사 임대계약 및 집행 : '23.4.~12.
2024	· 대곶보건지소, 하성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관사 임대료 지급 : '24.1.~3. · 대곶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계약 및 집행 : '24.4.~12.
2025	· 대곶보건지소,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료 지급 : '25.1.~3. · 한의진료실, 구강보건실 관사 임대계약 및 집행 : '25.4.~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364	57,992	-	372	
2024	50,910	50,202	-	708	
2025	103,427	64,239	-	39,18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6급 최숙경	전화	4003
-----	-------	------------	-----	----------	----	------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외
사업규모	보건진료소 7개소(학운리, 대벽리, 송마리, 성동리, 개곡리, 마조리, 석탄리)		
사업목적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7,010	191,830	191,830	0	0	0	4,8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7,010	191,830	191,830	0	0	0	4,820	통계목 변경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청사 관리용역비 : 경정(304,000원*10회) - 기정(1,104,000원*10회)	= -8,000	
	307-01 의료및회복비	· 일차진료 의약품 등 구입 : 경정(87,994,000원*1회) - 기정(79,994,000원*1회)	= 8,000	

□ 예산요구 사유

- 필수 의약품 계약단가가 전년대비 평균 3.8% 인상되어 기존 예산 내 충분한 수량 확보 어려움
- 보건진료소 환자 수 증가로 의약품 수요 증가(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 전년대비 5.5% 상승)
→ 약품 부족으로 환자가 재방문하는 불편 발생,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간 의약품 전배 횟수 증가
- 보건진료소 주요 진료 대상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로 만성질환은 원인이 복합적이며 진행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고 효과가 저하되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제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 기존 약제비보다 1.3~1.5배 부담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 운영
 - 2025.02. : 김포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개최,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0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 10,276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74,438천원(집행률 100%)
2024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 10,433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75,007천원(집행률 100%)
2025	·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 6,361건 · 의료및회복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42,348천원(집행률 4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2,116	165,209	-	26,907	
2024	187,010	181,840	-	5,170	
2025	191,830	128,846	-	62,98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미경	담당자	보건진료8급 강지우	전화	4239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44명		
사업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제15조의18(산후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17,900	622,500	0	149,400	246,000	1,017,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017,900	622,500	0	149,400	246,000	1,017,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6,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01-02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경정(498,000원*2,044명)-기정(498,000원*1,550명)	= 246,000	

□ 예산요구 사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 수 지속 증가 추세
- 2025년 지원 대상자는 2024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2월 서비스 종료한 산모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지원예산 추가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2월~5월 월별 평균 지원금액은 76,000천원으로 9월부터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
*1월은 2024년 서비스 종료 산모 신청 건 포함되어 다른 달보다 4배 많아 평균 산출에서 제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7.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본인부담금 지원 규정 신설, 김포시 전 출산가정 지원)
 - 2024.01. ~ 2024.12. : 사업 미추진(예산 미편성)
 - 2024.05.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김포시 180일 거주제한 신설 등)
 - 2024.07. : 김포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10. : 김포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24.12.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사업 홍보
 - 2025.01. ~ 2025.12. :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지원
 - 2025.12. :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37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71,900	691,773	-	80,12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보건7급 이인정	전화	4152
-----	-------	------------	-----	----------	----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70명		
사업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조
		제1조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출산축하금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00	1,070,000	900,000	0	0	170,000	7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0	1,070,000	900,000	0	0	170,000	7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출산축하금 지원	301-02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출산축하금 지원 : 경정(1,000,000원*1070명)-기정(1,000,000원*900명)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다자녀가구의 출산에 소모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 10월 중 출산축하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12월 미지급 발생 우려로 추가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상반기 월평균 지원 인원이 90명으로 하반기에는 약 170명분의 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출산축하금 대상자 접수·결정·통보 및 지원
 - 2025.12. :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출산축하금 지원: 1,297명, 신생아건강보험 계약인원: 61명
2024	· 출산축하금 지원: 1,000명
2025	· 출산축하금 지원: 71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34,889	1,359,451	-	75,438	
2024	1,000,000	1,000,000	-	-	
2025	900,000	712,000	-	188,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220명		
사업목적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 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3호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16,500	1,610,000	1,350,000	0	0	260,000	193,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16,500	1,610,000	1,350,000	0	0	260,000	193,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00	
임신축하금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임신축하금 : 경정(500,000원*3,220명)-기정(500,000원*2,700명)	= 260,000	

□ 예산요구 사유

-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 현 예산은 10월 소진(9월 신청자)이 예상되며 10월 이후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 발생 우려로 추가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4년 6월 기준 임신축하금 지원 건수 1,089건 대비, '25년 6월 기준 신청자 수 1,90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
- 월평균 250~300건 지원으로 추세에 따르면 하반기 약 520명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계획수립
 - 2025.01. ~ 2025.12. : 사업추진(임신축하금 지급대상 적합여부 조회 및 지급)
 - 2025.12.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신축하금 지원 : 3,115명
2024	· 임신축하금 지원 : 2,963명
2025	· 임신축하금 지원 : 2,19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0,000	1,557,500	-	2,500	
2024	1,416,500	1,416,500	-	-	
2025	1,350,000	1,234,500	-	115,5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 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건		
사업목적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제1항6의2
		제5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의2.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6,000	10,000	0	0	-4,000	6,000	
국비							0	
도비	0	3,000	5,000	0	0	-2,000	3,000	
시비	0	3,000	5,000	0	0	-2,000	3,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 경정(2,000,000원*3건)-기정(2,000,000원*5건)	= -4,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1831(2025.7.9.)호 관련,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시군별 예산수요조사 결과 25개 시군 일괄 감액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지원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 사업 홍보
 - 2025.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	-	-	1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다인	전화	4153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28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0	80,000	100,000	0	0	-20,000	-20,000	
국비	50,000	40,000	50,000	0	0	-10,000	-10,000	기금
도비	25,000	20,000	25,000	0	0	-5,000	-5,000	
시비	25,000	20,000	25,000	0	0	-5,000	-5,00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경정(625,000원*128명)-기정(625,000원*160명)	= -20,000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1832(2025. 7. 9.)호 관련,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시군별 예산수요조사 결과 예산 조정으로 인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뢰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 사업 안내(전화 및 문자 홍보)
 - 2025.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92명
2024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62명
2025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7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0	59,979	-	21	
2024	100,000	93,238	-	6,762	
2025	100,000	62,346	-	37,65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9명					
사업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 예방 및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600	9,000	6,000	0	0	3,000	-2,600	
국비	5,800	4,500	3,000	0	0	1,500	-1,300	기금
도비	2,900	2,250	1,500	0	0	750	-650	
시비	2,900	2,250	1,500	0	0	750	-65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난청 검사비 지원 및 보청기 지원 : 경정(1,000,000원*9명)-기정(1,000,000원*6명)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9869(2025. 6. 9.)호 관련,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최종예산 대비 2025년 본예산 감소로 미지급액 발생하여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보청기 지원
 - 2025.12. : 사업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3명(선별·확진검사)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1명
2024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6명(선별·확진검사)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5명
2025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4명(선별·확진검사)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	3,164	-	36	
2024	11,600	11,600	-	-	
2025	6,000	5,910	-	9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54명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 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3,200	90,000	146,000	0	0	-56,000	-73,200	
국비	81,600	45,000	73,000	0	0	-28,000	-36,600	기금
도비	40,800	22,500	36,500	0	0	-14,000	-18,300	
시비	40,800	22,500	36,500	0	0	-14,000	-18,3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6,000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경정(584,000원*154명)-기정(584,000원*250명)	= -56,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9567(2025. 6. 3.)호 관련,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실적(2023년~2025.3월)을 반영하여 예산 감액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의료비 지원
 - 2025.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43명
2024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85명
2025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3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7,600	67,465	-	135	
2024	163,200	89,124	-	74,076	
2025	146,000	51,065	-	64,93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김은정	전화	4155
-----	-------	------------	-----	------------	----	------

모자보건실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가임기 여성, 임산부)		
사업목적	임산부 건강관리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제1·2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 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280	73,600	50,350	0	0	23,250	70,3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80	73,600	50,350	0	0	23,250	70,3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250	
모자보건실 운영	307-01 의료및회복비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 철분제 : 경정(6,000원*8,881개)-기정(6,000원*5,881개) - 엽산제 : 경정(3,500원*4,704개)-기정(3,500원*3,204개)	= 23,250 = 18,000 = 5,250	

□ 예산요구 사유

- 임산부 영양제 지원을 통해 엽산 및 철분 결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7월말 기준) 대비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건수 6,752건에서 7,529건으로 증가함
 - 임신초기(~8주) 임산부 경우 엽산제 1~2개 지급, 임신중기(16주~39주)에 따라 철분제 1개~5개 지급
 - 12월 말까지 3,500건 추가 지급 예상
- 2024년(7월말 기준) 대비 다태아 등록 47건에서 60건으로 증가, 다태아는 철분제 2배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모자보건실·모유수유실 운영, 임신부 등록 및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 유축기 대여
 - 2025.12. : 임신부 등록·영양제 배부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신부 등록관리 : 2,869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7,388개
2024	· 임신부 등록관리 : 3,100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12,150개
2025	· 임신부 등록관리 : 1,358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7,529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280	3,238	-	42	
2025	50,350	48,471	-	1,87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관내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사업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2,000	249,790	198,790	0	0	51,000	207,790	
국비	21,000	124,895	99,395	0	0	25,500	103,895	
도비	10,500	62,448	49,698	0	0	12,750	51,948	
시비	10,500	62,447	49,697	0	0	12,750	51,94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00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07-01 의료및회복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경정(180,000원*1,387.7쌍)-기정(180,000원*1,104쌍)	= 51,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2213호(2025. 7. 15.)호 관련 예산 증액 변경 내시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확대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수요 증가 추세
(’24년 목표량 1,084쌍 대비 ’25년 6월 기준 신청자 수 1,311쌍으로 수요 급증)
 - 대상자 : (기존)임신 희망 부부 → (확대)25~49세 가임기 남녀(혼인여부 무관)
 - 지원 횟수 : (기존)생애 1회 → (확대)생애 3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계획 수립
 - 2025.01. ~ 2025.12. : 사업추진(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대상 여부 조회 및 지급)
 - 2025.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1,084쌍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급 : 791쌍
2025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1,617쌍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급 : 825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4,460	69,189	-	5,271	
2025	198,790	153,414	-	45,37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장 연은영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인주	전화	4160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감염병관리과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지역		
사업목적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1조(소독 의무)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68,848	397,023	454,453	0	0	-57,430	-171,82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8,848	397,023	454,453			-57,430	-171,8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7,430	
취약지역 방역소독	307-05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 방역소독 : 경정(27,857,000원*10권역)-기정(33,600,000원*10권역) =	-57,430	

□ 예산요구 사유

- 이상기후 등으로 돌발해충 및 위생해충 개체수의 지속적 증가로 적극적인 방역 필요
- 공장, 농가주택 등 사유지 내 방역 요구 증가로 민간자율방역 지원 확대
- 돌발해충 대응 및 대규모 해충 서식지 대상 방제 역량 강화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업체별 제한 최저가 견적 제출 입찰 집행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잔액 발생
 - ※ 민간위탁 입찰 낙찰하한율 : 88%
- 업체별 입찰 금액 내 과업 이행 후 사업 종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24.11 반영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
 - 2025. 03. : 취약지역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5. 04. ~ 11. : 민간위탁 방역소독 용역 계약 및 사업 수행
 - 2025. 11. ~ 12. :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 정산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해빙기방역 실시 : 90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839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4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302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043ℓ 사용 - 해충퇴치기 26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DMS 12대 관리
2024	- 해빙기방역 실시 : 129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982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371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861ℓ 사용 - 해충퇴치기 30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DMS 12대 관리
2025	- 해빙기 방역 실시 : 유충구제 86회, 연막소독 47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2,030회 - 민간위탁 방역소독 10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744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2,090ℓ 사용 - 해충퇴치기 300대, 해충기피제함 19대 관리, DMS 12대 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9,525	522,158	-	17,367	
2024	568,848	520,632	-	48,216	
2025	454,453	349,164	-	105,28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김재민	전화	4119
-----	--------	-------------	-----	----------	----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65세 이상 어르신+면역저하자)		
사업목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집단면역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2항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28,270	3,180,636	3,320,800	0	0	-140,164	2,252,366	
국비	464,135	1,590,906	1,660,400			-69,494	1,126,771	
도비	139,240	476,750	498,120			-21,370	337,510	
시비	324,895	1,112,980	1,162,280			-49,300	788,08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164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307-01 의료 및 회복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경정(3,180,636,000원)-기정(3,320,800,000원) =	-140,164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12628(2025.06.20.)호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코로나19 백신 산출 예상 단가 변경으로 감액

- 백신 단가 화이자 65,200원, 모더나 56,300원(질병청 변경내시 산출 예상 단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매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2025. 03. ~ 06. :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 실시
 - 2025. 09. ~ 12. : '25-'26절기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백신 배정
예방접종 홍보 및 실시 , 접종비용 상환 심사 및 비용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43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45,420건
2024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36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34,657건
2025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32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23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60,890	974,103	-	1,686,787	
2024	928,270	772,084	-	156,186	
2025	3,320,800	41,946	-	3,278,85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김소영	전화	4158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약제비 지원 대상자 1,277명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 제2항 제7호, 제3항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7,600	51,000	46,000	0	0	5,000	-6,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7,600	51,000	46,000			5,000	-6,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6,000원*138명*6월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코로나 19 이후 보건소 진료 기능 회복으로 방문 환자 수 지속적 증가, 이에 따라 약제비 지원 대상자 수도 증가 추세
- 2025년 상반기 25,950,600원 집행되어 전체 예산의 약 56%를 소진.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예산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본예산 감액 편성(57,600천원→46,000천원)
- 전년도 대비 예산 삭감되어 기존과 유사한 수혜자 수 유지를 위해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5.01~1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추진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377명 / 4,588건
2024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423명 / 4,057건
2025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283명 / 2,38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400	47,242	-	3,158	
2024	57,600	57,597	-	3	
2025	46,000	30,226	-	15,77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신수정	담당자	보건8급 최희주	전화	415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북부보건센터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사업규모	북부권 5개 읍, 면 60세 이상 주민		
사업목적	치매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매관리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0,000	178,573	244,271	-65,698	0	0	-61,427	
국비	192,000	142,858	195,417	-52,559		0	-49,142	기금
도비	7,200	5,357	7,328	-1,971		0	-1,843	
시비	40,800	30,358	41,526	-11,168	0	0	-10,44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치매환자 쉼터 운영 인건비 - 경정(20,576,000원*2명)-기정(22,636,000원*2명)	= -4,120	감 10,300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인건비 - 경정(17,182,600원*3명)-기정(19,242,600원*3명)	= -6,180	
	201-01 사무관리비	◎치매검사용지 및 홍보물 제작 등: 경정(15,733,000원)-기정(5,433,000원)	= 10,300	증 10,3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2603(2025.8.14.)호 관련, 2025년 치매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2348(2025.8.7.)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관리방안'*에 따라 경기도 시군구별 인건비와 사업비 조정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괄 변경내시 통보
- * 예산 총액 및 사업비 감액에 따라 필수사업 운영 어려움과 사업중단 위기 등을 고려, 인건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업비로 조정 허용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예산액 103,000천원의 10%(10,300천원)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정으로, 불용예산액을 감안하여 인력 운영 및 보수 지급에는 차질 없음.
- 전환된 예산은 치매조기검진, 예방관리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비로 활용할 예정임.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를 위한 검사 용지, 안내 전단, 검진 독려용 홍보 물품 구입 및 신규 등록 환자를 위한 인지 강화 책자 구입 등 예산 증액 필요
-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지속 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 홍보
 - 2025. 2. ~ 3.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25. 1. ~ 12. : 북부권 치매관리사업 추진
 - 2025. 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인지선별검사: 1,73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067명 / 진단·감별검사: 180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99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61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2명, 지문등록 55명, 배회감지기 17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92회/622명), 고위험군(38회/374명), 정상군(28회/238명) - 치매예방교육: 3,078명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4	- 인지선별검사: 2,061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199명 / 진단·감별검사: 174명·8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55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7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1명, 지문등록 56명, 배회감지기 10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98회/661명), 고위험군(41회/403명), 정상군(60회/667명) - 치매예방교육: 3,249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2025	- 인지선별검사: 1,346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1,156명 / 진단·감별검사: 86명·75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17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4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28명, 지문등록 36명, 배회감지기 7건 -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49회/412명), 고위험군(12회/124명), 정상군(26회/323명) - 치매예방교육: 1,423명 /치매안심마을 운영: 4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268	206,347	-	3,921	
2024	240,000	235,256	-	4,744	
2025	178,573	73,012	-	105,56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치매관리팀장 최보라	담당자	간호8급 이보은	전화	4212
-----	--------	------------	-----	----------	----	------

품 · 면 · 동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통진읍



도로환경정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일원
사업규모		통진읍 일원 제설작업		
사업목적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으로 시민만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	20,000	10,00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20,000	10,000	0	0	10,000	1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도로환경정비	201-01 사무관리비	· 재해복구 장비 임차 : 1톤 트럭 120,000원 * 34시간 * 2대 8톤 트럭 180,000원 * 5시간 지게차 80,000원 * 12시간	= 8,160 = 900 = 960	

□ 예산요구 사유

- 제설 작업용 장비임차를 통한 신속한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 예방
- 이상기후(강설) 대응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및 기성금 지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이상기후로 인한 강설량 증가로 제설 작업 장비 운영시간 대폭 증가
 - 상반기(1~3월) 대설특보 소집: 10회(총 63시간 소요)
 - 예산부족으로 일부 작업시간에 대한 기성금 미지급 발생
- 추가 예산 미확보 시 11월 ~ 12월 제설작업 수행 불가로 시민 안전 우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12. : 제설장비(1톤트럭, 8톤트럭, 지게차) 협약 완료
 - 2025.03 : 제설장비 1차 기성금 지출
 - 2025.11 ~ 12. : 겨울철 제설작업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12.	대설특보 발효 제설작업
2024	- 2024.12.	대설특보 발효 제설작업
2025	- 2025.01.~03.	대설특보 발효 제설작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900	4,676	-	5,224	
2024	10,000	9,087	-	912	
2025	20,000	8,860	-	11,140	8.22.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통진읍	산업개발팀장 박철옥	담당자	시설8급 조세륜	전화	324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고촌읍



도로환경정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고촌읍 일원
사업규모		관내 도로변 제설작업 및 마을안길 예초·가지치기, 공동묘지 2개소 제초 작업		
사업목적		제초·제설작업을 통한 도로환경 정비로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 및 공동묘지 성묘객 이용편의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754	34,384	29,384	0	0	5,000	9,63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754	34,384	29,384			5,000	9,6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도로환경정비	401-01 시설비	· 도로변 환경정비 : 경정(20,000,000원)-기정(15,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쾌적한 도로환경(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실시
- 고촌읍 공동묘지(2개소) 내 무연고 묘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 기상특보 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 및 염수분사장치 운영비용

□ 예산증감 사유

-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작업물량 감소로 민원해소 한계에 따라 증액요청

구분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경공		건설기계운전자	
	노임단가	전년대비증가량	노임단가	전년대비증가량	노임단가	전년대비증가량	노임단가	전년대비증가량
2025	169,804	3%	221,506	3%	224,132	2%	273,971	2%
2024	165,545	5%	214,222	8%	219,533	8%	267,360	10%
2023	157,068		197,450		203,631		243,29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상반기 사업 계약 및 착수
 - 2025. 07. : 상반기 사업 준공
 - 2025. 08. : 하반기 사업 계약 및 착수
 - 2025. 11. : 하반기 사업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도로변 및 공동묘지 2개소 제초작업 · 동절기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 : 3,926,000천원(집행률 46.7%) · 동절기 재해복구 임부임 : 240,000천원(집행률 14.3%) · 도로변환경정비 : 18,573,500천원(집행률 95%)
2024	· 도로변 및 공동묘지 2개소 제초작업 · 동절기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 : 2,920,000천원(집행률 58.4%) · 도로변환경정비 : 14,000,000천원(집행률 93.3%)
2025	· 도로변 및 공동묘지 2개소 제초작업 · 동절기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 : 2,840,000천원(집행률 56.8%) · 염수분사장치 액상제설제 구매 : 2,482,000천원(집행률 82.7%) · 도로변환경정비 : 0천원(집행률 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862	39,531	-	15,331	
2024	24,754	22,135	-	2,619	
2025	29,348	6,507	-	22,84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고촌읍	산업개발팀장 최보문	담당자	시설8급 박종훈	전화	3283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고촌읍행정복지센터, 고촌복지회관
사업규모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및 고촌복지회관 청사 유지관리		
사업목적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 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51,859	620,164	612,364	0	10,000	-2,200	68,30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51,859	620,164	612,364		10,000	-2,200	68,30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	
청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냉난방기 필터 청소 : 경정(3,300,000원)-기정(5,500,000원) =	-2,200	

□ 예산요구 사유

-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냉난방기 필터청소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청사 유지관리 연간 용역 인건비 및 각종 비용 지출
- 2025.01.~2025.12. : 읍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 공사 등 수시 집행
- 2025.12. : 청사 유지관리 연간 용역 계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1,228천원(집행률 85.1%)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9,892천원(집행률 66.2%)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413,313천원(집행률 88.89%) · 시설비 : 19,100천원(집행률 99.9%) · 자산및물품취득비 : 8,068천원(집행률 99.9%)
2024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1,949천원(집행률 86.3%)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190,501천원(집행률 85.84%)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50,056천원(집행률 96.9%)
2025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6,029천원(집행률 49.84%)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123,996천원(집행률 48.43%)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164,065천원(집행률 70.1%) · 자산및물품취득비 : 54,008천원(집행률 94.9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4,313	546,980	-	77,333	
2024	551,859	502,506	-	49,353	
2025	622,364	381,117	-	241,24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고촌읍	부읍장 최성기	담당자	공업8급 김태우	전화	3254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양춘읍



도로환경정비

사업기간		2025. 11. ~ 2025. 12.	사업위치	양촌읍 일원
사업규모		양촌읍 마을안길 내 제설을 위한 인부임, 작업 장비 임차		
사업목적		도로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5,032	30,032	0	0	5,000	35,03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5,032	30,032			5,000	35,03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도로환경정비	201-01 사무관리비	. 재해복구 장비 임차 - 5톤 트럭 임차(제설제운반 등) 180,000원*3회 - 상·하차 장비(백호, 지게차 등) 480,000원*3회 - 1톤 화물차(살포기) 500,000원*6회	= 5,000 = 540 = 1460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강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시민 편의 및 안전 도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5. 12. : 강설시 제설 작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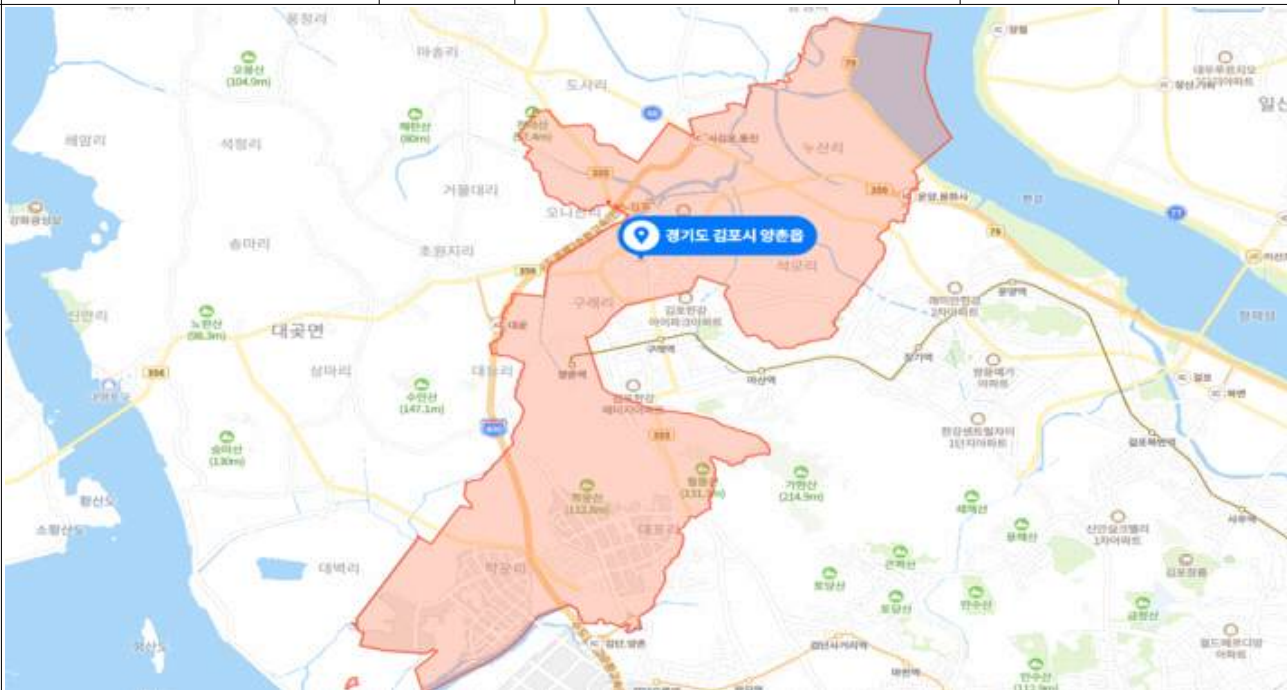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꽃길조성 및 마을안길 제초 작업 등 추진 - 꽃길조성을 위한 소모품(삽,괘이 등) 구입(1,700천원 집행 99%) -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 - 비법정도로변 환경 정비공사(연간단가) 추진
2024	- 마을안길 제초 잡업 등 추진 - 동절기 강설 시 제설작업 추진 - 비법정도로변 환경 정비공사(연간단가) 추진
2025	- 마을안길 제초 잡업 등 추진 - 동절기 강설 시 제설작업 추진 - 비법정도로변 환경 정비공사(연간단가) 추진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2,615	51,354	-	1,261	
2024	29,865	26,341	-	3,524	
2025	30,032	9,356	-	20,676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양촌읍	사업규모	제설 작업 인부임 및 장비 임차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
부기명 (세부사업)	도로환경정비	사업위치	양촌읍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양촌읍	산업개발팀장 이두영	담당자	시설8급 양두영	전화	334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대곶면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대곶면 올생로 83-23
사업규모	대곶문화복지센터 등 청사 유지관리		
사업목적	적정한 청사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8,788	245,436	235,876	0	6,560	3,000	96,64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8,788	245,436	235,876	0	6,560	3,000	96,64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 경정9,000,000원-기정6,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보수 공사 등 환경 정비

□ 예산증감 사유

- 우천 시마다 실내 누수 피해 발생함에 따라 방수공사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방수공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16,306천원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15,795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73,739천원
2024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31,540천원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30,677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61,226천원
2025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6,262천원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28,361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94,50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1,559	105,840	-	5,719	
2024	148,788	123,443	-	25,345	
2025	242,436	129,130	-	113,30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곶면	부면장 김태우	담당자	행정7급 황지희	전화	335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월곶면



고막1리 등 3개소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사업기간	2025. 9. ~	사업위치	월곶면 김포대학로 232-1, 애기봉로409번길 299, 문수산로 90-19
사업규모	무선 방송 수신기 3대, 방송수신기 335대		
사업목적	자연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과 마을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27,050	0	0	0	127,050	127,0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7,050				127,050	127,0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7,050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 고막1리 등 3개소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 무선방송송신기 3대 * 5,500,000원 = 16,500 - 무선방송수신기 335대 * 330,000원 = 110,55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 마을 방송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미작동 등 잦은 고장 발생으로 송·수신기 교체 필요 (고막1리, 조강2리, 성동1리 마을회관 소재 무선 방송 시설)
- 자연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 가능
- 마을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시정 전달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마을 수는 줄었으나 대상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설치 현장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2025. 10. : 관급자재 구매
 - 2025. 12. : 설치완료 및 결과 보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월곶면	사업규모	무선방송수신기 3대, 방송수신기 335대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7,050
부기명 (세부사업)	고막1리 등 3개소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김포대학로 232-1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월곶면	사업규모	무선방송수신기 3대, 방송수신기 335대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7,050
부기명 (세부사업)	고막1리 등 3개소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애기봉로409번길 29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월곶면	사업규모	무선방송수신기 3대, 방송수신기 335대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7,050
부기명 (세부사업)	고막1리 등 3개소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문수산로 90-19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월곶면	부면장 장숙대	담당자	행정9급 양연수	전화	3404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63
사업규모	월곶면 복합청사 청사 유지관리		
사업목적	월곶면 복합청사 효율적 운영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3,630	123,824	119,824	0	0	4,000	30,19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3,630	123,824	119,824			4,000	30,19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경정(4,000,000원*13월)-기정(4,000,000원*12월) =	4,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청사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2024년 11월 전기요금을 2025년 납부하여 2025년 예산 부족

□ 예산증감 사유

-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을 위하여 냉난방 가동을 최소화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까이배움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22시까지 운영함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전기요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12,436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76,792천원 - 시설비(청사 보수 사업) : 23,400천원
2024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23,602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69,812천원
2025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8,996천원 - 사무관리비(무인경비시스템, 비데 및 정수기 등 사용료) : 20,333천원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 등) : 52,19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5,084	112,629	-	12,455	
2024	93,630	93,415	-	215	
2025	119,824	81,525	-	38,29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월곶면	부면장 장숙대	담당자	행정7급 양희경	전화	340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하성면



배수로 정비 공사(석탄리 99번지 일원)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석탄리 99번지 일원
사업규모		배수로 설치 (L=175m)		
사업목적		통수단면적 증대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53,000	650,000	490,000		115,000	45,000	297,000	
국비								
도비								
시비	353,000	650,000	490,000		115,000	45,000	297,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 석탄리 99번지 일원 - PE다중벽관(D600) 175m - 각종 지장물 우회 및 용수로 하월 등	= 45,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속적인 개발, 성토로 인하여 배수 불가 지역으로 5mm 이상의 우천에도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구간인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설치를 통해 민원 해소 및 침수 피해 예방
- 배수로 미설치로 인하여 배수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설치를 통해 민원 해소 및 침수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당초 본예산에 석탄리 9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 예산으로 49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석탄리 9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 결과 각종 지장물 우회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당초 개략공사비 71,000천원에서 45,000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3.: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25. 09. ~ 2025. 10. : 입찰 및 계약
 - 2025. 11. ~ 2025.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석탄1리 외 4개소 배수로 정비 완료 · 마곡2리 외 5개소 마을도로 정비 완료 · 마곡3리 마을도로 확포장 완료
2024	· 양택리 454번지 외 2개소 배수로 설치 완료 · 석탄리 1041번지 외 3개소 도로 재포장 완료
2025	· 전류리 458번지 외 1개소 배수로 정비 추진 중 · 후평리 689-1번지 외 5개소 배수로 정비 추진 중 · 석탄리 774-3번지 외 1개소 도로 재포장 추진 중 · 봉성리 536번지 외 4개소 도로 재포장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12,000	315,205	-	296,795	
2024	353,000	340,859	-	12,141	
2025	605,000	115,363	-	489,637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하성면	사업규모	PE다중벽관 D600(L=175m)	3회추경 요구액 (천원)	45,000
부기명 (세부사업)	배수로 정비공사(석탄리 99번지 일원)	사업위치	석탄리 99번지 일원		
위치도 (석탄리99)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성면	산업개발팀장 장규선	담당자	시설8급 이주형	전화	3483
-----	-----	------------	-----	----------	----	------

하성 작은도서관 천장 보수

사업기간	2025. 10. ~ 11.	사업위치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68-13
사업규모	388㎡		
사업목적	건물 천장 보수를 통한 주민 편의성 증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000				21,000	21,000	
국비								
도비								
시비		21,000				21,000	21,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 하성 작은도서관 천장 보수 : 21,000,000원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옥상 누수로 인하여 천장에 크랙 발생하고 부자재 낙하로 인한 이용객 부상 우려로 지속적 민원 발생
- 천장 보수를 통한 누수 방지로 천장 부자재 낙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공사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0. : 공사착공
 - 2025.11.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하성면	사업규모	388㎡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1,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성 작은도서관 천장 보수	사업위치	하성면 애기봉로806번길 68-13		
위치도					
현장사진	천장 크랙 및 부자재 탈락 현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성면	부면장 조길현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345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풍무동



청사 LED전등 교체

사업기간	2025. 9.	사업위치	김포시 풍무로 74, 풍무동행정복지센터
사업규모	청사 내부 LED 전등 교체		
사업목적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보다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4,850	0	0	0	14,850	14,8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4,850				14,850	14,8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850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 청사 LED전등 교체 : 68,000원 * 160등	= 10,800	
		. 내선전공 노무비 : 260,000원 * 6인	= 1,560	
		. 특별인부 노무비 : 200,000원 * 5인	= 1,000	
		. 기타 잡자재 등 : 1,410,000원 * 1식	= 1,410	

□ 예산요구 사유

- 청사 내 사무실 LED전등 대부분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빛 밝기 감소 및 색 변화 발생
- 특히, 민원실 LED전등의 평균 조도가 210 ~ 260럭스 정도로 한국산업규격 사무실 조도기준 (300 ~ 600럭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민원실 및 컴퓨터실 등 강의실의 조도가 낮아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효율 저하 우려

□ 예산증감 사유

- 청사 내부 LED 전등의 노후화로 교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설계 및 계약체결
 - 2025. 10. ~ 11.: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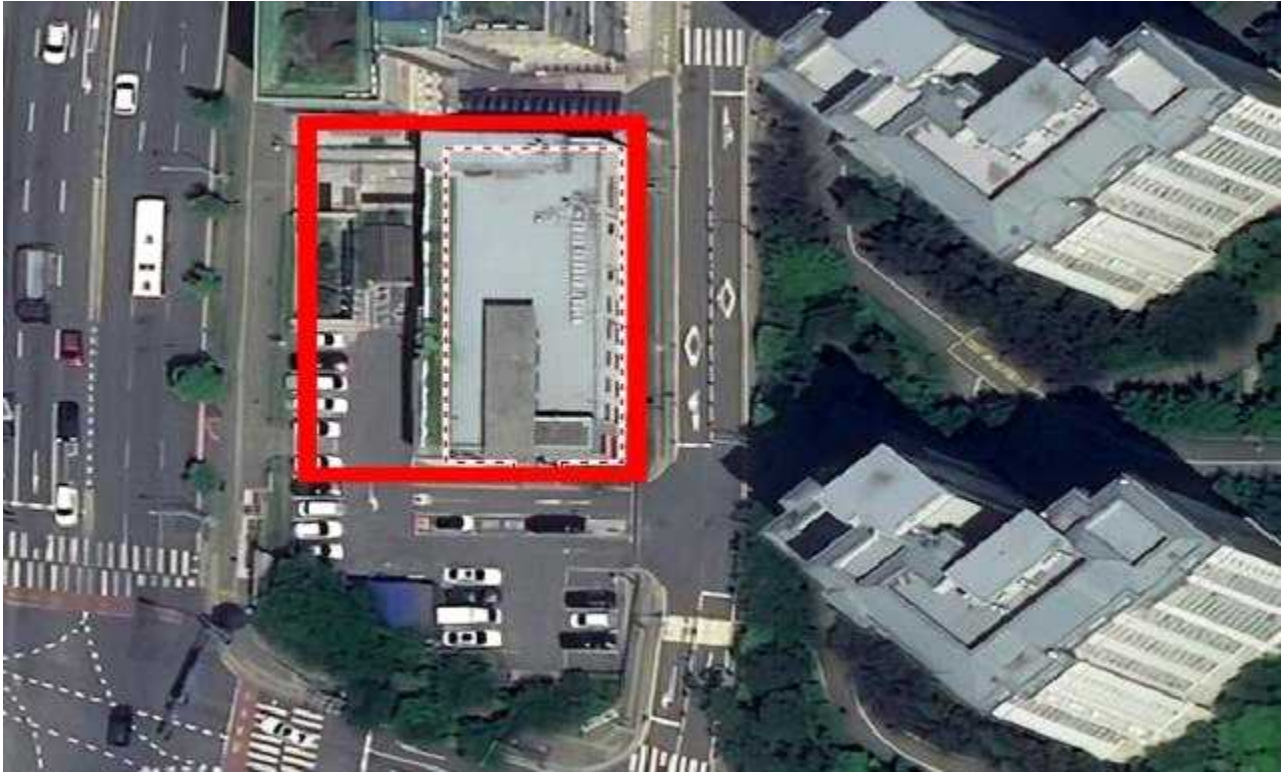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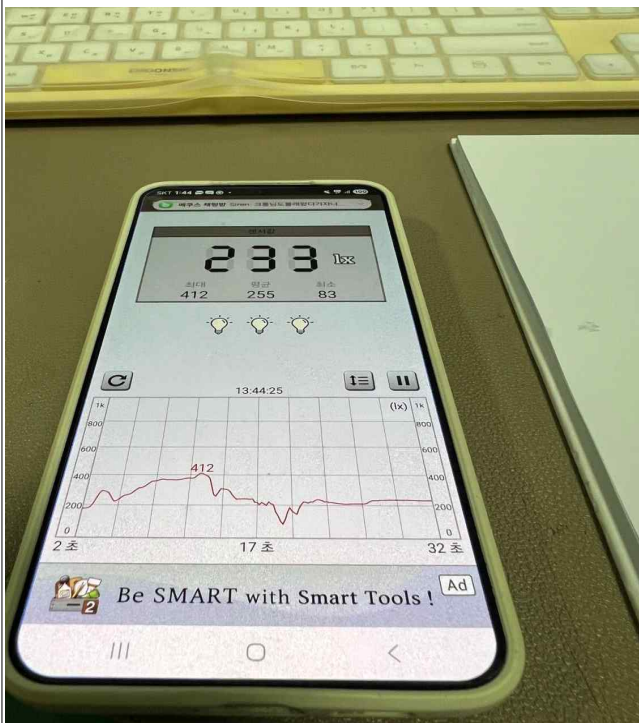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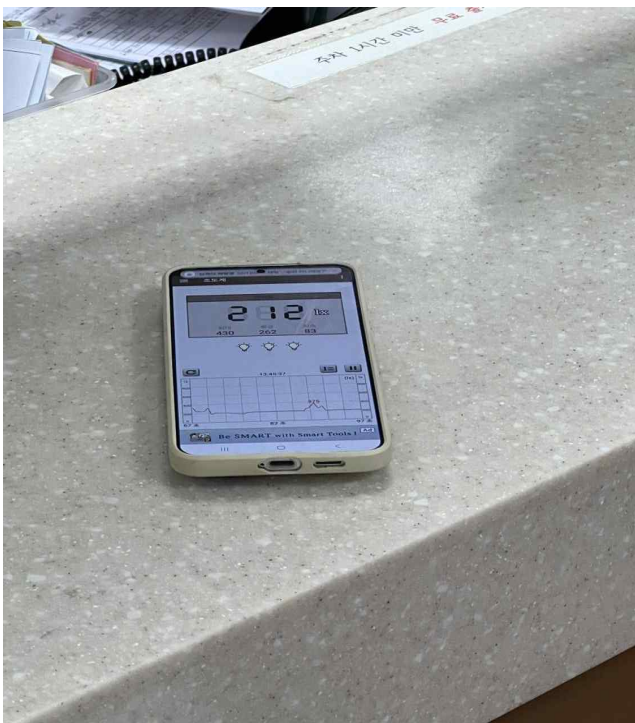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풍무동	사업규모	청사 내 LED전등 교체 160등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4,850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 LED전등 교체	사업위치	풍무로 74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풍무동	행정민원팀장 황선희	담당자	행정7급 김남훈	전화	3652
-----	-----	------------	-----	----------	----	------